

2001년 겨울호

언론중재

특 집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연구논문

-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1. 겨울

차 례

특 집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 4 ·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 배병일
- 20 ·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 이규진
- 36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한상희
- 50 ·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추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 황성기

기 고

58 · 언론소송의 실무 · 함석천

연구논문 I

72 ·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 염규호

연구논문 II

90 ·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 정진석

광주지방토론회

106 ·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주동황

해외언론계 시찰기

112 · 호주 및 뉴질랜드의 언론피해구제기구
현황과 활동 · 정학성

언론보도와 인격권

120 · 의혹 · 폭로 중개보도의 문제점 · 류한호

위원칼럼

126 · 나의 소중한 공동체 경험 · 신환철

해외동향

128

자 료

- 132 · 언론중재신청사례
- 144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53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8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160

위원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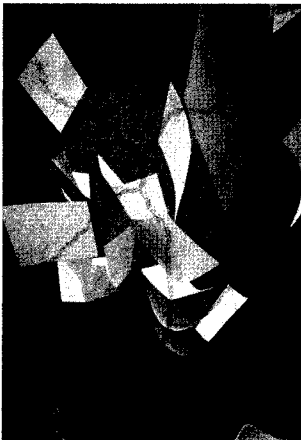
166

언론법제관련문헌

168

지상중계

170 · On-Line 중재상담실



계간/2001년 겨울호 · 제21권 · 제4호/통권81호
인쇄/2001년 12월 25일 · 발행/2001년 12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I. 서 론

최근 언론계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언론사간 상호 매체비평(mutual criticism : cross-criticism)의 확산이다. 그동안 언론보도에는 성역이 있고 이러한 성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외법권적인 언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지만, 언론사간 상호비평은 이러한 기존의 언론풍토를 부정하고 언론이 사회현상으로서의 언론을 보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매체비평의 후유증으로 언론사간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비평과 비판의 무풍지대였던 언론계에서 상호 매체비평을 시작하게 되자 비평의 방법과 수단의 미숙으로 인하여 상대방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기존의 언론풍토에 익숙해져 있는 언론계에서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비평에 대하여 조정, 언론중재 등 소송 외적인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보지 아니한 채 바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언론사간 상호 매체비평에 있어서 소송으로의 의존은 자칫 억제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켜 헌법상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내지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형사소송으로의 의존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론관계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의 의존은 엄청난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언론사의 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언론사간의 소송에서는 언론사가 직접 원·피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원·피고 중 일방은 언론사의 기자이고, 다른 일방은 언론사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언론사가 원·피고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언론사간의 매체비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계기로 소송에 이른 경우와 그 소송에 대한 한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배 병 일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 영남대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법학박사
- 국립 강릉대 법학과 교수 역임
- 미국 워싱턴 주립대 방문교수
- 현 영남대 법학과 교수
- 저술 : 『물권법 요해』, “언론과 명예 훼손책임”,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상호매체비평은
언론사간 다툼을 유발하고
소송에 이르는 사태를 초래

II. 언론사간의 매체비평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 신문과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방송은 그동안 비평과는 거리가 있었다. 신문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얽혀 일시적으로 다른 신문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면을 사용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비평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 후 일부 신문에서 TV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들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이 매체비평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논쟁에 뒤이어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이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방송의 방송에 대한 비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사 상호간의 매체비평은 수용자의 정보선택권과 수용능력을 넓혀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방법과 규범이 정착되지 아니한 사회풍토 속에서 살아왔고,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로서의 언론의 비판기능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풍토속에서 신문과 방송이 서로 이해당사자의 하나가 되어 논쟁을 하게 될 경우 자사이기주의에 빠지는 등 비평에 있어서의 진실성,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상호 비평을 할 경우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

은 없고 비판만 있는 매체비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석비평을 하지 못하고 인상비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수용자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기 힘들 뿐 아니라 미숙한 매체비평으로 인하여 '비평에 대한 비평'까지 나타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²⁾도 있다. 언론사간의 비평에는 지속적으로 상대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 인적자원 뿐 아니라 경제적·시간적으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영세한 언론사로서는 이러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갖추 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상호 매체비평은 언론사간에 다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소송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매체비평은 크게 신문 상호간의 비평과 방송 상호간의 비평, 신문과 방송의 비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신문과 방송의 비평은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과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신문의 신문에 대한 비평

19세기 초 미국신문은 공공성이 아닌 시장원리에 충실하여 상업주의로 흘러 19세기 후반에는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와 풀리처(Joseph Pulitzer)간의 선정주의적 황색신문전쟁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1920년대에 미국신문은 보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³⁾ 그러나 이는 매체비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1) 전희락, "비판없이 여야 전쟁터로 전락", 『신문과 방송』, 2001. 8.

2) 박영상, "신문윤리와 매체비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자료』, 2001. 11.

3) 장원호, 『미국신문의 위기와 미래』, 나남출판, 1998, p.15 ; 임근수, 『신문발달사』, 정음사, 1986, pp.316-321.

는 아니다. 우리 나라도 1935년 조선일보의 보성전문 신입생 초과모집문제에 대한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간의 폭로전,⁴⁾ 1960년대 후반이후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간의 갈등 등이 있지만,⁵⁾ 이는 매체비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에서의 매체비평은 일반적으로 1911년 월 어원이 신문업계의 추문을 폭로하고 1920년에 엠평 싱클레어의 언론문제점에 대한 기사화, 월터 리프만의 언론부패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⁶⁾ 현재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미디어 비평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신문의 신문에 대한 비평은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언론사에 대한 신문고시 문제와 세무조사 문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신문고시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제정 절차의 문제와 언론탄압, 정치적 음모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한 반면에 대한매일, 한겨레신문은 언론권력, 족벌언론의 문제를 비롯한 왜곡된 신문시장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음모, 강행, 탄압을 표제어로 사용한 반면에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은 당면, 절실 등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⁷⁾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로 가장 피해가 많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논지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 졌고, 한겨레신문, 대한매일은 언론개혁으로 규정하는 논조를 유지하였다.⁸⁾

이러한 사실보도를 둘러싸고 판이한 보도태도를 보인 것은 자사이기주의 형태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사별로 논조와 보도의 방향이 뚜렷이 대별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론사간의 상호비평의 불모지인 우리 나라에서 그 맹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문사 상호간의 매체비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쟁점을 두고 이에 대한 상대방 신문사의 보도방향이나 태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쟁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신문사에 대한 역사 및 연혁, 내부적 문제 등 쟁점을 비껴가거나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방법으로 비판함으로써 상호비평의 분위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

종래 우리 나라의 매체비평은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비평은 방송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이었고, 보도기사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문의 방송비평은 1990년대까지 방송계소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심이었다.⁹⁾

4) 정진석, 『한국 현대언론사론』, 전예원, 1992, pp.443-447.

5) 정진석, 전계서, pp.447-451.

6) 권혁남, “미국언론의 매체비평”, 『신문과 방송』, 2001, 5.

7) 조동서, “신문고시기사로 본 미디어 보도”, 『신문과 방송』, 2001, 5.

8) 김신동, “언론의 다양성 드러낸 계기”, 『신문과 방송』, 2001, 8.

9) 장하용, “방송보도에 대한 비평과 반성부족”, 『신문과 방송』, 2001, 8.

과거의 매체비평은 신문의 방송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이 대부분이었으며 보도기사에 대한 비판은 드물어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과 이의 폐해광고를 통한 권력의 방송장악, 방송 광고시장의 왜곡과 축소 등을 시정하기 위한 민영미디어 렵의 설립논의가 2000년 말부터 시작되자, 광고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신문사와 방송사간에 대한 상호비판이 가열되었다. 또한 2001년 2월 MBC의 'PD수첩'이 '황색질주 10년 스포츠신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스포츠 신문들이 MBC방송의 선정성을 문제삼아 비판을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미디어렐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호비판을 함으로써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후자의 경우는 선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MBC의 대응은 보고되지 않았다.¹⁰⁾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은 방송 보도기사의 신속성, 일회성 때문에 보도 내용의 변화추이를 관찰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논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나 비평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¹¹⁾ 그동안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판은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서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제설정을 하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을 나열하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는 비판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방송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이

필요한 실정이다.¹²⁾

3.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

종래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은 거의 볼 수 없었지만, 2001년 민영 미디어렐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신문사로부터 비판을 받은 MBC가 신문에 대하여 신문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매체비평이 본격화되어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KBS도 '시사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양을 늘려가고 있다. 신문고시 문제와 세무조사 문제에 대하여 KBS와 MBC는 신문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였지만,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은 신속성, 시청각의 동시성 등에서는 우월하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신문이 간과한 부분을 방송이 분석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신문의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의 장점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견해도 있다.¹³⁾

4. 방송의 방송에 대한 비평

방송의 방송에 대한 비평은 최근 언론개혁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1년 4월 MBC가 '미디어 비평', 2001년 5월 KBS가 '시사포커스'라는 비평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활성화되고

10) 최민희, "PD수첩'과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논란", 『신문과 방송』, 2001. 4.

11) 김기태, "논조의 일관성 감시와 비평", 『신문과 방송』, 2001. 5.

12) 장하용, "신문중심의 방송비평 문제", 『신문과 방송』, 2001. 7.

13) 정재철, "MBC '미디어 비평'과 KBS '시사 포커스'", 『신문과 방송』, 2001. 10.

있는데, 이는 방송의 그 방송 자체에 대한 비평과 다른 방송에 대한 비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옴부즈맨 형식의 비평에 의하고, 대부분 자기 방송의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이고 보도 기사에 대한 비평은 거의 없다. 방송의 다른 방송에 대한 비평은 그동안 전혀 없었으나 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일부 신문사들이 방송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방송사의 보도 기사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¹⁴⁾ 방송의 방송에 대한 비평은 보도기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대 방송사의 드라마에 대한 비판은 시청률을 고려하여 자사이기주의에 의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Ⅲ. 언론사간의 소송

언론사간의 상호 매체비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은 대부분 명예훼손 소송이고, 이 경우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매체비평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언론사가 원고가 되어 매체비평을 한 가해언론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언론사간의 소송이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는 언론사와 언론사가 민사소송상 원고와 피고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언론사 기자와 언론사간의 민사소송과 언론사가

언론사 기자에 대하여 하는 형사소송을 의미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독립한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각각 별개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소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¹⁵⁾ 다만 실제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형사소추가 되어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기록은 확정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사소송에 이용할 수가 있다. 종래 우리 나라의 법조풍토는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현상'이 있었다. 이는 소송기술로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된 근대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법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언론사간의 보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은 10건이라고 한다.¹⁶⁾ 언론중재위원회의 <국내언론관련판결집>을 통하여 확인한 건수는 4건이지만, 일간지에 대한 인터넷 검색¹⁷⁾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9건에 이른다. 9건 중 2건은 소송이 종료된 상태이고, 나

14) 장하용, "신문중심의 방송비평 문제", 『신문과 방송』, 2001, 7.

15) 박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p.462.

16) 중앙일보, 2001, 4, 27, 13면 참조.

17) 이 때문에 본 고에서의 신문발행일자 대부분 하루가 앞서 기재되어 있다.

언론사간 소송이란 언론사가 원·피고가 되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간 민사소송,
기자과 언론사간 형사소송까지 의미

머지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진행 중인 것¹⁸⁾이고, 그 중 일부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언론사간의 소송은 방송사와 신문사간의 소송으로 방송의 방송에 대한 소송, 방송의 신문에 대한 소송, 신문의 방송에 대한 소송, 신문의 신문에 대한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방송의 방송에 대한 소송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방송의 신문에 대한 소송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에는 신문의 방송에 대한 비평이 대부분이었지만, 비평의 수준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였다. 그러나 신문고시와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방송과 신문이 상호비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수인한도를 넘게되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일간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2건 모두 신문보도 기사를 문제삼은 것이지만, (1)은 외부인의 기고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1) 2001년 4월 18일 원고 MBC와 그 사장은 피고 월간조선과 그 편집장, 월간조선에 글을 쓴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월간조선에 국회의원 명의로 문화방송사장에 대한 공개편지형식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의 내용을 담아 원고의 공신력과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¹⁹⁾

(2) 2001년 4월 23일 원고 MBC와 그 시사토론 진행자는 피고 조선일보사와 그 논설주간, 논설위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원고의 100분토론이 공정성 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9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²⁰⁾

2. 신문의 방송에 대한 소송

종래 방송의 신문에 대한 비평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신문이 방송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송의 신문비평이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되는 수가 있다. 우리 나라 매체비평이나 모니터운동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주로 방송 등 전파매체에 집중되어왔고 신문매체 비평에는 소홀한 편이다.²¹⁾

(3) 2001년 3월 16일 동아일보는 MBC를 상대로 MBC가 뉴스에서 '동아일보 탄죽질기', '짚이재 재테크' 등의 보도를 통하여 일방적인 비방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청구를 신청하였다.²²⁾

18) 이 중 소취하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것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19) 동아일보, 2001. 4. 18.

20) 동아일보, 2001. 4. 23.

21) 김기태, "논조의 일관성 감시와 비평", 『신문과 방송』, 2001. 5.

22) 한겨레신문, 2001. 3. 16.

3. 신문의 신문에 대한 소송

신문이 다른 신문의 보도기사에 대한 비평으로 인하여 당해 비평의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화된 것은 많지 아니하고, (4)는 광고비 및 화보판매대금을 춘지라고 잘못 보도한 사건을 둘러싼 사례이고, (6)은 상대 언론사의 조직내분을 보도하자 이에 대응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한 사례이지만, 피고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고, 신문인지 여부는 문제된다. (10)은 (5)사건의 결과이다. (7)(8)(9)는 다른 신문의 연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도한 경우 이를 문제삼아 소송에 이른 경우이다.

(4) 서울민사지법 1992. 7. 29, 91가합3033
사실개요

원고 (주)연합통신은 피고 (주)매스컴 신문사가 '언론계 또 춘지 파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들이 취재보도활동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여 피고는 매스컴신문에 '정정보도문' 제하의 정정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판결요지

편집국 산하 부장이 주재기자에게 광고비 및 화보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구했으나 주재기자가 보도 사례비와 홍보활동비 등의 금원들이 춘지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자 더 이상 별다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편집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한 후 보도하였다. 취재보도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수수하는 금품 기타 향응을 지칭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춘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시의회에 의하여 정식으로 채택되고 발표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출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필요하면 확인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더 이상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이 보도를 하게 되어 피고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1999년 11월 17일 원고 중앙일보사는 한겨레신문사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탈세 혐의로 구속된 원고의 대표이사과 관련한 기사에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10억원씩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²³⁾

(6) 대전지법 2000. 2. 3, 99가합6757

사실개요

원고 (주)중도일보사는 "정보지 교차로 내분"이라는 제목하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발행인 명의를 둘러싼 다툼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 대전 교차로(주)는 이에 대응하여 "중도일보 보도행태 논란"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23) 조선일보, 1999. 11. 18.

신문이 다른 신문의 보도기사에 대한
비평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하여 원고 중도일보사는 피고 대전교차로와 그 대표이사에게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검사의 조사보고서와 소송기록을 토대로 하여 피고들의 분쟁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분쟁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믿고 작성된 편파적인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본래의 발행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보도에 있어서의 공공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2001. 4. 20. 조정이 성립되었다.²⁴⁾

(7) 2001년 1월 2일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족벌언론의 폐해를 지적한 한겨레 21의 보도내용이 동아일보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한겨레 21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중재가 결렬되었다.²⁵⁾

(8) 2001년 4월 6일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동 신문이 보도한 '심층 해부 언론권력' 시리즈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²⁶⁾

(9) 2001년 9월 26일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하였다.²⁷⁾

(10) 서울지법 2001. 4. 11. 99가합96928

사실개요

원고 (주)중앙일보는 피고 (주)대한매일신보사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관련된 세금문제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언론기관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는 하나, 기실 수많은 언론사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으로 그것이 하나의 통일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개개 언론사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여지고, 그 구성원인 개개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속성을 함께 띠고 있다. 통상 이러한 영

24) 대전고법 2001. 4. 26. 2000나1387.

25) 한겨레신문, 2001. 1. 2.

26) 중앙일보, 2001. 4. 27.

27) 한겨레신문, 2001. 9. 26.

리추구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우선되었을 때 언론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책임은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공적인 단체로 대상이 옮겨감에 따라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비판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도리이고, 또한 언론사 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 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인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평석

고전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소극적인 자유권이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신문·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기능과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²⁸⁾ 또한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의

미하였으나 신문·방송의 등장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개인의 자유도 의미한다. 나아가 신문과 방송의 자유는 언론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비판의 자유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언론사는 국가 또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에 대하여도 비판적 기능을 담당한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고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언론기관과 언론사의 관계에 대하여 언론기관은 전체로서의 집단이고, 언론사는 개개의 신문사·방송사를 의미한다. 언론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여론형성기관·공적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론사는 그 수입의 절반이상이 광고수입이기 때문에 신문 판매부수의 확장과 방송의 시청률 제고라는 상업화된 언론기업의 영리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기관은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성질을 지닌 기관이다.

법원은 “언론기관은 전체로 하나로 보아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는 하나, 기실 수많은 언론사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으로 그것이 하나의 통일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p.46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p.60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p.385.

언론사간 소송에서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 책임은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

다는 개개 언론사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여지고, 그 구성원인 개개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속성을 함께 띠고 있다”고 한다.

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자유경쟁원리에 따른 영리회사로서의 영리성 추구 즉 방송사의 경우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방송할 뿐 아니라 상대 언론사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비판을 가하는 경우, 신문사의 경우는 구독자의 증대를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이거나 선정적인 기사나 오보를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당해 언론사는 개인이나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가 있다.

언론사가 개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개인의 명예법익 보호와 가해자인 언론사의 보도자유와의 법익의 충돌이 있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보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

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²⁹⁾

또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 언론사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언론사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언론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 언론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³⁰⁾ 가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피해 언론사의 명예보호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의 조정 여부가 역시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공적 인물의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³¹⁾고 한다. 따라서 가해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피해자가 공적 단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보다는 그 법적 책임이 완화

29) 대판 1998. 7. 14. 96다17257 참조.

30) 대판 1999. 10. 22. 98다6381.

31)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되고 이에 따라 원고인 공적 단체가 명예훼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로써 하여야 한다³²⁾고 하면 공적 단체의 명예훼손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좁아지게 된다.

더욱이 그 공적 단체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³³⁾고 하면 가해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언론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하는 명예훼손의 책임은 반비례관계에 있고, 언론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면 될수록 명예훼손책임은 좁게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해 언론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로서의 비판의 자유는 피해 언론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로서의 비판의 자유와 비례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해 언론사는 자기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피해 언

론사로부터의 비판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이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원도 “통상 이러한 영리추구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우선되었을 때 언론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책임은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공적인 단체로 대상이 옮겨감에 따라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그 상대방이 같은 직역에 해당하는 언론사인 경우에는 어떤가?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비판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이러한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언론사는 그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언론사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논설경향 즉 논조에 영향을 미친다. 신문·방송의 객관적인 사건보도 이외에 모든 기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논조는 수시로 표출된다. 이러한 논조는 언론사의 고유한 색깔

32)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 여름, p.32.

33) 현재 1999. 6. 24. 97헌마265.

가해 언론사가 자신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피해 언론사로부터의
비판도 폭넓게 인정해야

이고 이념인 동시에 철학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있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사는 이러한 논조에 근거하여 상대방 언론사에 대하여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기사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대방 언론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한 비판을 폭넓게 수인하여야 한다. 법원도 “언론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분별하여 취사,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도리이고, 또한 언론사사이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 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이라 한다. 언론사나 국민은 다같이 사인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와는 다르다.³⁴⁾ 이 권리는 언론사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을 당한 국민이 당해 언론사에 대하여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국민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어떤 언론사가 공급하는 보도기사

뿐 아니라 당해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로부터 받는 비판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의 남용은 자칫 언론의 편집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시키고 이를 계기로 언론사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강자가 언론사의 편집권에 개입하여 보도내용의 독자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³⁵⁾ 이러한 국민의 액세스권은 언론사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대하여 자사와 관련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사가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사에 의한 비판과 함께 접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액세스권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되고 나아가 언론부패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비판의 자유에는 수인한도가 있고 이 수인한도내에서는 위법성이 없지만 이를 일탈한 경우 즉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 보도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도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인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34) 성낙인, 전계서, p.388.

35) 성낙인, 전계서, p.390.

IV. 언론사간의 소송에서의 한계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는 신문과 방송의 자유, 취재 및 보도의 자유뿐 아니라 비판의 자유 및 반비판의 자유도 포함한다. 언론사간의 상호매체비평은 이러한 비판의 자유 및 반비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비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비평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 언론중재, 정정보도, 반론청구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손해전보와는 달리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상대 언론사에 의한 보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가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전략소송(strategic lawsuit)³⁶⁾의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첫째 많은 자본력과 인력을 가진 대기업인 언론사가 상대 언론사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둘째 언론사가 상대 언론사 소속의 기자를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셋째 보도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도기사 자체가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남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인

으로 소송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 언론사간의 소송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약자인 시민의 입장에서서는 거대한 신문사를 상대로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만, 거대한 언론기업인 신문사, 방송사로서는 상대방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지면과 방송이 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서는 소송비용의 마련이 부담이 되지만, 기업인 언론사로서는 소송비용의 마련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간의 소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

1.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고, 언론사 및 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언론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을 부담하게 된다.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고의 책임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어야 하고(형법 제 309조 제 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형법 제 309조 제 2항)된다. 다만 형사책임은 기자만 책임을 부담하고, 언론사는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형벌에 대한 부담은 없다.

언론사의 기자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36) 미국에서 대기업 등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억제하기 위해 그 의견을 가진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가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지면과 방송이 있으므로
일반 시민이 제기하는 소송과 구별되어야

경우 해당 기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³⁷⁾이나 법정출석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 등은 물론 형사소송의 결과 형벌의 두려움 등 정신적 경제적 소모는 엄청나다. 또한 기자 개인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이나 소송의 결과로서의 손해배상액의 경제적 손실,³⁸⁾ 법정출석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 등은 직장인으로서의 기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의 경우 언론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을 물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기자가 변호사비용이나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 소송의 결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자 개인으로서 그로 인한 고통이 덜하지만, 손해배상액의 경우 언론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언론사 내부적으로 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도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 대한 제재 등을 고려하면 기자 개인을 피고로 하는 것이 민·형사상 실익이 있는 반면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변제능력 등만을 고려하면 기자 개인이 기업으로 되어 있는 언론사보다는 민사상 실익이 없다.

명예훼손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자칫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 될 수 있다.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책임을 민사책임으로 그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경영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간의 소송은 자제되어야 하고 소송의 남발은 결국 국민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알 권리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

2. 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이란 언론사의 비평으로 인하여 다른 언론사가 명예훼손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비평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비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법 등에 일반적인 구성요건 규정이 없고, 단지 형법 등에만 있다면 그 형사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형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명예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명예를 형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평행위가 비평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비판의 정도가 현저하게

37)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직장인으로서의 부담되는 액이다.

38) 최근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사취재 및 보도에 있어 심각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비판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비판행위의 태양, 비판행위의 공공성 및 진실성,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형사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비판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인한도의 기준은 사회통념인데, 이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개방된 구성요건으로 개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언론자유에의 규제영역에서의 기본적 요청인 판단기준의 명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사실과 의견

사실은 어떤 자에 대하여 현실의 사실 또는 행위를 서술한 표현으로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논평은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말한다.³⁹⁾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

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의견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⁴⁰⁾ 미국의 경우 Gertz판결⁴¹⁾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허위의 의견(false idea)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의견이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본의 경우 의견표명이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법성이 없다⁴²⁾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⁴³⁾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언론사간의 상호매체비평의 경우에 있어서 순수한 의견의 표명에는 명예훼손책임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은 명문규정상 무료로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정간법 제16조 제3항, 제20조 제3항, 방송법 제91조 제3항 및 제8항 참조), 판결의 게재와 취소광고도 가해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39) 일본 동경고재 1996,10,2.

40) 대판 1998. 3. 24. 97도2956.

41)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42) 일본 최고재 1997. 9. 9.

43) 대판 2000. 7. 28. 99다6203.

소송만능주의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언론사간 소송의 남용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서 들 수 있는 것으로 ①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문·잡지의 광고 선전비용, ②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경우 비디오촬영비, ③명예회복을 위해 임시직이나 특정한 종업원을 전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대책자료의 작성하고 우송한 비용 등이 있으나, 일본 판례는 ③만 인정하였다.⁴⁴⁾ 일본 판례는 대책자료의 작성 배부는 심각한 경쟁시장을 배경으로 한 판매촉진활동의 편의나 매상 감소방지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활동이나 기업방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지출액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하면서 과실상계(28%감액)하였다. 최근 법원은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대응광고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⁴⁵⁾

언론사간의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5. 정당방위

선행 비판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여 후행 비판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가. 일본의 판례이지만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타인이 한 행동과 대비하여 방법, 내용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성을 결한다”⁴⁶⁾고 한다. 즉 상대방의 비판이나 비난이 선행하고 그 중에 자신에 대한 명예나 자기가 속한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반론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동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언론사간의 상호 매체비평에 있어서 간혹 격렬한 비평이 나오더라도 이를 정당방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V. 결 론

언론사간의 매체비평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하여야 하고, 그 비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먼저 조정이나 언론중재에 의한 반론보도 등을 시도해보아야 하고, 부득이 소송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소송만능주의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언론사간의 소송의 남용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또한 부득이 소송에 의할 경우 종래 손해배상액이 적고, 소송절차의 복잡화,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위자료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고 위자료의 만족적 기능을 고려할 때 손해전보제도가 제재의 효과가 있고, 피해자의 보호에도 합리적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44) 일본 동경지재 1996. 2. 28.

45) 대판 1996. 4. 12. 93다40614, 40621.

46) 일본 최고재 1963. 4. 16.

특 집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 방영금지가처분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

이 규 진

헌법재판소 연구관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제2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8기
- ☐ 현재 서울고등법원 소속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I. 서

TV 방송회사 중의 하나인 갑 방송은, 을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당회장 병에 대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그 방영 전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및 병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의 판결을 선고하자 위 법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위 사건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인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를 가처분에 의하여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의 법리에 관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사건의 내용

1. 사실의 개요

(1) 갑 방송은 1999. 4. 15.경부터 을 교회와 그 대표자인 당회장 병에 대한 이단성 문제, 당회장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는데, 을과 병은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 4.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병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관련부분의 방영을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2) 이에 갑 방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같은 해 12. 경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던 바, 2000. 4. 20. 제1심 판결을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방송사는 주장

일부 변경하되 병과 여자신도들 사이의 성추문 관련부분은 방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같은 날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00. 5. 3. 2000헌바36호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갑 방송은 2000. 5. 8.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1. 11.말 현재 계속 중이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가처분에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심판대상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¹⁾ 청구인의 위 주장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에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된다고 본 해석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이 사건 법률조항, 즉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본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의 목적】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3. 청구인(갑 방송)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갑 방송)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만약 방영금지가처분이 이에 포함되어 TV를 통한 방영 전에 법원이 그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면, ①이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에 법원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방영내용을 사전 억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방송, 방영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②방영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기본이 되는 당사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상 처벌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의 허용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이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

1) 헌재 1995. 5. 25. 91헌바20, 판례집 7-1, p.615, p.626;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p.243, p.251 참조.

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개별적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방영금지청구권 등 사법상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한다 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가처분제도의 특성상 다소의 불명확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된다.

(2) 가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①사전 억제 내지 검열 금지의 원칙은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립된 이론일 뿐,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피해를 수용한 다음 사후구제조치를 강구하라는 의미의 원칙이 아니고, 가처분제도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사후 방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사전 억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②또한, 방영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비교할 때 위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III. 언론의 자유와 사전 제한

1. 사안의 쟁점

본건은 언론, 출판 등 표현행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의 충돌에 있어서의 두 법익 사이의 조화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정한 표현행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처분에 의한 사전 제한이 가능한가의 문제인 바, 그 쟁점은,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①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②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1) 언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여론 형성에 참여하며, 자신

서울고법, 방영금지가처분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신청 기각

의 의견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수하는 한편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자유권 내지 주관적 공권일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여론 형성 그리고 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고 동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보장 내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고 할 것이며,²⁾ 본건의 경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의 자유'는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판시하였으며,³⁾ 또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⁴⁾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고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는 판단을 한 바도 있다.⁵⁾

2) 인격권

인격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⁶⁾ 위 헌법조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중

2) 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p.300, p.306; 김철수, 제13전정신판『헌법학개론』, 박영사, pp.617-618; 허영, 신판『한국헌법론』, 박영사, p.523; 박용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헌법문제와 재판(하)』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 p.19 등 참조.

3)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p.176, p.188;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p.739, pp.758-759.

4)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p.768, p.775.

5) 헌재 1993. 5. 13. 91헌마17, 판례집 5-1, p.275, p.284.

6) 인격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p.306, p.310;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p.149, p.155;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p.518, p.527;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p.193, p.204;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6; 김철수, pp.363-364; 허영, p.317 등 참조), 이는 독일, 일본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김철수, 전개서, p.363 참조).

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로서 사람의 명예, 이름, 초상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⁷⁾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보호, 사적 비밀에 대한 보호, 생활상의 보호 등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 독립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⁸⁾

3) 두 법익의 충돌

원칙적으로, 알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 명예권 등과 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기본권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익형량의 원리에 따라 보다 큰 법익을 위하여 작은 법익의 희생이 인정되고 있는바, 명예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형법 제310조)가 바로 그것이다.⁹⁾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판의 자유 … 를 가진다(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헌법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제21조 제4항에서 명예 보호와의 관계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¹⁰⁾

그런데,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적 이해에 관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보도, 논평의 과정에서 그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와 같이 인격권 등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바로 여기서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라고 하는 서로

7) 허영, 전게서, p.313.

8) 김철수, 전게서, p.370, p.375.

9) 김철수, 전게서, p.385 참조.

10)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p.768, p.775 참조.

가처분에 의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해예방청구권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다른 가치의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비록,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인격권이 위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¹¹⁾ 이와 같은 법익 충돌 해결방법 중의 하나로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권의 행사가 논의되는 것이다.¹²⁾

우리 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기본적인 보호수단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3조의 신용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1조)을 구하는 것이 있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절차로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및 추후보도청구권(제20조)과 방송법 제91조의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제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원상회복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그 침해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조치와 진행 중인 침해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방해예방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의 허용 문제는 바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연결되어, 그 허용이 검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

1) 각국의 실태

우선,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그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해예방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각 나라는 그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위 청구권이 관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온 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위와 같은 방해예방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11) 현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p.518, p.524 참조

12) 언론의 자유와 개인 법익의 충돌 해결을 위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법리로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침해 회피의 원칙”, 충돌 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대립하는 이익 쌍방이 병존할 수 있는 타협의 방도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조화적 병존의 원칙”, 그러한 병존의 가능성도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대립되는 양자의 법익간에 그 우열을 가려 하위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법익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익 형량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pp.30-31 참조)

(1) 미국¹³⁾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연방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제한으로서의 금지명령(injunction)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이념하에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명예훼손 이외에 중대한 국가이익(national security),¹⁴⁾ 음란물(obscenity),¹⁵⁾ 사생활(the right to privacy)¹⁶⁾ 등에 관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명령(injunction)이 이루어지는 예가 있다.¹⁷⁾

연방대법원은 Near v. Minnesota(283 U.S. 697(1930)) 사건에서 신문에 대한 사전금지명령을 허용한 주법(Minnesota Gag Law)은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허용한 것으로서 연방수정헌

법 제1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고, Bantam Books, Inc v. Sullivan(372 U.S. 58(1963))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제한도 무효로 강하게 추정된다("Any system of prior restraints of expression comes to this Court bearing a heavy presumption against its constitutional validity.")고 판시하였다.

다만, 위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군사기밀에 대한 위협적 표현, 음란 표현, 폭력과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표현 등에는 금지명령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범위는 아주 좁고 실제로 법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전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해된다.¹⁸⁾

한편, 미국에서는 언론의 개인적 법익 침해

13) 공직자인 원고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하면 언론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사건, 그 이후의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1971)) 사건과 Rosenbloom 을 뒤집은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사건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및 원칙 등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는 Louis Edward Ingelhart, *Press and Speech Freedoms in America*, 1619-1995, Greenwood Press, pp.244-290; Kathleen M. Sullivan & Gerald Gunther, *First Amendment Law*, New York Foundation Press, pp.73-84;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pp.34-48; 이구현, 『미국언론법』, 커뮤니케이션북스, pp.163-165 등 참조.

14) 정부가 대통령의 외교·국방에 관한 고유 권한에 의거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비사(秘史)의 게재 금지를 구하여 항소심이 허용한 사전금지명령에 대하여,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403 U.S. 713(1971)) 사건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부가 사전금지로 인한 국가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The United States, which brought these actions to enjoin publication in the New York Times and in the Washington Post of certain classified material, has not met the "heavy burden of showing justification for the enforcement of such a [prior] restraint.")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15)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1957))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외설적 표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Paris Adult Theatre I v. Slaton (413 U.S. 49(1973)) 사건에서는 음란물의 전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6) 연방지방법원은 Galella v. Onassis (353 F. Supp. 196(S.D.N.Y. 1972)) 사건에서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취재활동(접근 및 사진촬영)은 금지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언론중재위원회, pp.19-23).

17) 염규호, "미국의 언론법과 사법제도", 『언론중재』, 1994 봄, 언론중재위원회, p.54; 염규호, "미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언론중재』, 1994 여름, p.45;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언론중재』, 1998 여름, pp. 12-13 등 참조.

18) 표성수, 전제서, p.150.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의 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이념하에 허용되지 않아

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으로 간접적 규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¹⁹⁾

(2) 일본

일본에서의 명예의 보호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에 있어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13조에 그 실정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바, 위 행복추구권은 인격적 가치에 관한 중요한 선언이며, 명예는 인격적 가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보호된다고 본다.

한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절차로서 손해배상(일본 민법 제710조)과 사죄광고 등 명예를 회복하는 처분(같은 법 제723조)²⁰⁾ 이외에 금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어 왔는데, 긍정설은 대부분 금지처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성으로 인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부정설은 금지처분이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¹⁾

하급심에서 입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최고재판소는 1986. 6. 11. 소위 ‘북방 저널(북방자-나루) 사건’에서 긍정설의 입장을 택하였는 바(최고재판소, 소화 61. 6. 11. 민집 40. 4. 872), 즉, ①잡지, 기타 출판물의 인쇄, 제본, 판매, 반포 등의 가치분에 의한 사전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²²⁾에서 말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②명예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③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한 출판물의 인쇄, 제본, 판매, 반포 등의 사전금지는, 위 출판물이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한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④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가치분에 의하여 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또는 채무자의 심심을 거칠 것을 요하지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표현내용이

19) 배금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언론중재』, 1999 가을, p.34; 김성호, “언론의 개인적 법익침해와 공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pp.22-24 참조.

20) 위 법 조항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일본의 관례는, 그 광고의 내용이 단지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거나 진사(陳謝)하는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인 한 헌법 제19조(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最大判 昭和 31. 7. 4. 民集 10. 7. 785).

21) 표성수, 전제서, p.189, pp.286-301.

22) 일본국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제21조【집회·결사·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한 채권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변론 또는 채무자의 심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³⁾

(3) 독일

독일에서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성문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학설은 성명권에 관한 독일 민법 제12조 및 소유권에 관한 같은 법 제1004조가 규정하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부작위)청구권을 유추하여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널리 인정하고 있다.²⁴⁾

23) 위 요지 부분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4)에 관하여

(중략)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내용 등의 표현물을 대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대상이 된 일정한 표현물에 관하여 망라적, 일반적으로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고 나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그 특질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략) 가치분에 의한 사전금지, 표현물 내용의 망라적, 일반적 심사에 기한 사전규제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와는 달리, 개별적인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금지청구권 등의 사법상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여 발하여지는 것이어서, 위 판시에서 말하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札幌地方裁判所가 피상고인의 신청에 기하여 상고인 발행의 「어느 권력주의자의 유희」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월간잡지 「北方ジャーナル」소화 54년 4월호의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치분명령을 발한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하 생략)

2.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논지는, 본건 가치분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하에서 판단한다.

(중략)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10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동법 제723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중략) 출판물 반포 등의 사전금지는, 이와 같은 사전 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그 대상이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부터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전시(前示)와 같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인의 명예권에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여 헌법상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당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한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열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으로서의 금지 필요성도 긍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설시에 관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략)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그것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또한 채권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변론 또는 채무자의 심심(審尋)을 거치지 않고 금지의 가치분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의 전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4) 박용상,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도암 김교창 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 『기업과 법』 1997, pp.945-946 ; 竹田 稔, “人格權侵害と差止請求”,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p.294 참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성문법상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인정하고 있어

(4)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은 나누어져 있지만,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권²⁵⁾을 긍정하고 있다.²⁶⁾

(5) 영국

영국에서는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해악을 끼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공표를 계속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지명령(차지명령, injunction)을 인정하고 있는 바,²⁷⁾ libel(어느 정도 계속적 성격을 갖는 수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통상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의미한다)과 slander(일반적 수단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통상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심리종결까지의 잠정적 조치로 재판관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just and convenient) 판단한 경우에 발하는 중간금지명령(중간차지명령, interlocutory injunction),²⁸⁾ libel의 소에 있어서 그 계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종국적 금지명령(perpetual injunction) 등이 있다.²⁹⁾

2)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검열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같은 법조 제2항)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현재 채권자가 겪고 있는 생활관계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그 해결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사실적 실현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실무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인 부작위의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2항³⁰⁾에 근거를 두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구하는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와 동일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그 유형으로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금지

25) M. G... G... (1984. 4. 3.) 사건에서,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M. G... G... 부부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책의 출판 및 판매, 반포의 금지를 명한 바 있다. (『세계언론판례총람』, 1998, 한국언론연구원, p.594)

26) 竹田 稔, 전계 논문, p.294 참조.

27) 박용상, 전계 논문, 946 :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p.149; 황도수, 전계 논문, p.13.

28) Duchess of Argyll v. Duke of Argyll and Others (1964)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 형평재판부(Chancery Division)는 "결혼생활의 비밀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간금지명령의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세계언론판례총람』 1998, 한국언론연구원, pp.589-590)

29) 竹田 稔, 전계 논문, 294-295; 이근웅, "출판물에 관한 가처분", 재판자료 제46집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p.366 참조.

30) 민사소송법 제7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19조【가처분방법】①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 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처분,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에 착안점을 두어 채무자가 여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수인의무를 지움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해금지의 가처분, 채무자가 이루려는 법률상 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려는 절차정지의 가처분 등이 있다.³¹⁾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은 바로 금지 또는 단순한 부작위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일정한 표현행위에 의하여 이미 인격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이상의 침해적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가처분과 아직 표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됨을 이유로 미리 그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한 가처분이 있을 수 있다.³²⁾

(2) 검열 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TV 방송 역시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이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

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사전억제금지의 원리가 적용됨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³³⁾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따로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검열은, 개인이 사상이나 의견 등을 발표하기 이전에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

31) 『주석 강제집행법 (IV)』, 한국사법행정학회, pp.413-414, pp.458-479; 남기정, 『실무 보전소송 (하)』, 육법사, p.316 참조.

32) 원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는 불법행위설과 인격권설이 있는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불법행위법하에서 위 불법행위설은 그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고, 인격권설이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바, 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공1996상, 1486)도 인격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용상, 전계 논문, p.951;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p.451;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재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관, p.270; 김성호, 전계 논문, pp.110-111 참조.

33) 김철수, 전계서, p.608 참조.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

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³⁴⁾

그러므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해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사법절차에 의한 금지 조치는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언론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언론의 자유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에 따른 제한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언론의 자유가 갖는 헌법

상의 의의와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제한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바,³⁵⁾ 여기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³⁶⁾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인격권 등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

34) 헌재 1992. 6. 26. 90헌바26, 판례집 4, p.362, pp.370-371;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p.739, pp.759-760;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p.212, pp.222-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p.395, pp.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p.118, pp.125-126 참조.

35) 허영, 전거서, p.538 참조.

36)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p.245, p.260; 헌재 1997. 3. 27. 95헌가17, 판례집 9-1, p.219, p.234.

보도의 청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되어 위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인격권의 보호라는 위 가처분의 목적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를 함께 검토하여, 과연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체적 검토

(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인격권에 기하여 행사되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위 2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민·형사 책임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인격권의 성격상 일단 침해가 되면 용이하게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각 절차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금지,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언론, 즉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보호수단으로서도 필요·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가처분소송의 담당 주체인 우리 법원의 실무 또한,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고,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³⁷⁾ 또한, 주간지 및 저작물의 발행으로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후보자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경우, 후보자는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부분 및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단행본의 발행,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의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및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³⁸⁾

이러한 각 판시 내용은 모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행사되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에 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3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공1996상, 148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공1997하, 3574 등 참조.

38) 서울지법 1997. 10. 10.자 97카합2923 결정 : 확정,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하집 1997-2, p.114 참조.

**사전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하에서만 인정**

적정성을 긍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 역시 일반 가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바, 특히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전금지청구권의 인정기준, 즉 요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및 일본의 학설은, ① 권리침해의 위법성이 고도인 경우에만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고도의 위법성설”, ② 표현의 자유가 명예, 프라이버시 기타 사회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쌍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비교형량설”, ③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반하며,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현실의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금지청구권이 허용된다는 “개별적 요건 설정설”, ④ 위 각 입장을 종합한 절충설 등으로 파악된다.³⁹⁾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심사절차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⁴⁰⁾ 이에 대하여는 허가나 검열 이외의 가처분과 같은 사전제한에 있어서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하여 사후제한과는 다른 엄격한 법리에 의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의 견해도 있다.⁴¹⁾

인격권과 관련된 법원의 실무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판례,⁴²⁾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39) 박용상, 전계 논문, p.950 ; 이근웅, 전계 논문, pp.372-375; 이진웅, 전계 논문, pp.270-273 참조.

40) 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p.300, p.306;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p.212, pp.223-224;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p.395, 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p.118, pp.125-127.

41) 황도수, 전계 논문, pp.7-9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청암 정경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p.184-189 ; 주 46 참조.

4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공1988.11.15. (836), 139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공1998하. 2108 등.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⁴³⁾ 등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의 충돌시 그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조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각 판단과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처분 허용의 요건을 살펴본다면, ①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가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갖고, 그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것, ②그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침해위험의 명백성) 또는 이미 침해가 있었고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에 해당할 것, ③언론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공익적 가치와 명예 등 인격권을 보호하여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것, ④그리고, 보전의 필

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장래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그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고,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적 구제수단에 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을 것⁴⁴⁾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해자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요구함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있어서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또한, 언론의 자유의 가치를 고려할 때 담보제공에 의한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⁵⁾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각 판시내용과 법원이 가처분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가치를 형량하여 그 조화를 꾀하는 한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 사전금지청구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실무상의 운용,⁴⁶⁾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이외의 다른 간접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그리고 위 가처분의 목적의 정당성 및 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금지 가처분의 허용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다소 제

4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공1999상, 330.

44)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기타 필요한 이유”만으로는 사전제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언론중재』, 1998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p.15)

45) 박용상, 전게서, pp.179-181; 이근웅, 전게 논문, p.378; 표성수, 전게서, p.415; 이건웅, 전게 논문, pp.273-277 참조.

46)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두 법익의 교량과정을 거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법원의 하급심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중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검열 금지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참작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판단한 예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의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한 예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황도수, “언론관계 판결 경향”, 『언론중재』 1999 겨울, pp.10-11), 후자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허용 여부 판단을 위한 충돌 법익간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의 가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실무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달리 하여 일관되지 못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금지가처분의 허용여부는 언론자유와 보호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교량 등 엄격한 요건하에
판단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의 법정화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아

한된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언론의 자유의본질적 내용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크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IV.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이는 인격권 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시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⁴⁷⁾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이익과 관련된 표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안보사항의 보도에 대하여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가처분에 의

한 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⁴⁸⁾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기밀, 사회의 안녕 질서 등을 이유로 하는 행정소송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집행정지 등의 규정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처분이, 그 요건의 일반성, 추상성 및 완화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적법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심사기준을 법률로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상 언론의 자유의 보호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이익에 대한 비교교량 및 강화된 보전의 필요성 심사 등 엄격한 요건하에 가처분의 허용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준의 법정화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의 가처분이 일반 가처분에 비하여 실무상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가처분의 허용에 있어서 법원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사전제한의 헌법적 문제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고, 언론 또한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과 기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 보도의 기준에 대한 자율규제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47) 『주석 강제집행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p.460, p.463;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법원행정처, p.520 참조.
48) 국가기밀과 언론의 자유와의 갈등 사례로는, 박철연,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 pp.185-205 참조.

특 집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

I. 온라인에서의 일탈과 책임

사이버 세계는 주로 언어적 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하여 미시적으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거시적으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기까지 한다.¹⁾ 하지만 이 세계가 해방의 공간 혹은 탈주권(脫主權)의 공간으로까지 고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러한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명예, 혹은 인격의 발현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상황 또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off-line에서는 알지 못하던 다양한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사소통의 구조가 가지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의 문제이다.²⁾

사이버적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중간적인 매개자의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ISP라 불리는 일련의 사업자들이 의사소통의 -물리적 혹은 기술적-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한 상 회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 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인터넷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을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특히 게시판은 전자화된 가두연단(electronic soapboxe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Jensen, E. C., "An electronic soapbox : Computer Bulletin Boards and the First Amendment",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39, 1987, p.220). 즉, 일정 주제에 대해 사회 전체에 포럼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다(Weber, J. S., "Defining cyberlibel : A First Amendment limit for libel suits against individuals arising from computer bulletin board speech", Case Western Law Review, 46, 1995, p.239).
- 2) 대체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①제3자가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제공한 콘텐츠를 제3자가 지정한 수용자 혹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며 그 콘텐츠의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편집,수정의 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 매개자 혹은 저장자(simple conduit 혹은 storage), ② 스스로 일정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 그리고 ③ 자신의 시스템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제3자가 이를 이용, 콘텐츠를 게시하고 열람하거나 전송하도록 하는 자 즉 소위 hosting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것이다. 여기서 ISP라 함은 하이퍼미디어 모델(이에 관하여는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pp.45-48 참조)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③의 유형을 주로 지칭한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있어 정보통신사업자(ISP)의
책임문제는 출판자와 배포자의 이분법적
구분론을 중심으로 논의

들은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언어범죄 혹은 언어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ISP는 그 범죄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한 일종의 공범 내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나온다. 온라인에 의한 의사소통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인프라를 통하여 법적 일탈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인프라의 소유자/관리·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린다면, 그 자체가 인프라의 구축을 억지하는 효과를 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사이버 세계의 형성은 퇴보하거나 온라인이용비용증가 등의 장애에 봉착하게 된다. 역으로 ISP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면 사이버 세계의 확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무질서로 인한 T. Hobbes식의 자연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창출되고 이에 혐오를 느끼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사이버 세계로부터 탈퇴하는 현상 혹은 레비아단과 같은 절대권력의 출현이라는 또 다른 역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혹은 ISP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ISP는 그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권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3자적 침해라는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분쟁들이 법원으로 집중됨으로써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법개입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딜레마에 주의하면서, 사이

버 공간상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구성함에 있어 ISP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제와 판례의 현황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II. 출판자인가, 배포자인가?³⁾

1. 미국 : 시장모델에 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모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있어 ISP의 책임문제는 일단은 출판자와 배포자의 2분법적 구분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사업자가 “출판자(Publisher)면 책임지고 배포자(Distributor)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사소통구조에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책임차별화의 기준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선도적인 입장은 미국에서 정리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6년에 기존의 통신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통신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만들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 제공되거나 타인에 대한 불건전한 자료 혹은 명예훼손이 담긴 내용이 게재되면 일정 요건 하에 ISP나 BBP, Sysop 등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된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1996년에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언어범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으면서 역시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일정 요건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3) 이에 관하여서는, Raymond Ku, "Open Internet Access & Freedom of Speech: A First Amendment Catch-22", http://strl.stanford.edu/working_papers/00_ku_1 참조.

손질하였다.⁴⁾

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선행은 소위 Cubby사건과 Stratton Oakmont 사건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다. 우선 1991년에 뉴욕남부지구연방법원이 내린 Cubby v. CompuServe⁵⁾의 판결은 인터넷 사업자를 메시지의 배포자로서 파악한 대표적인 판결로서 자주 거론된다. 이 사건은, CompuServe Inc.가 개설한 BBS인 "Journalism Forum"에 벤처사업자인 Cubby의 사업내용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익명으로 뜨자 Cubby가 CompuServe In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⁶⁾ 이 당시 CompuServe사는 이 BBS의 운영이나 편집 또는 그 내부적 통제 등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BBS상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표현이 게시되어 있음을 CompuServe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방법원은

CompuServe사가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시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BBS와 그에 게시되는 모든 표현물들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CompuServe사를 서점과 같이 동 메시지의 단순한 배포자로 보아 하등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⁷⁾

하지만 뉴욕주의 제1심법원은 1995년의 Stratton Oakmont v. Prodigy 사건⁸⁾에서 인터넷 사업체인 Prodigy에 메시지 공급자-즉,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 즉, Prodigy Services Company가 운영하는 'Money Talk'라는 게시판에 중개회사인 Stratton Oakmont와 동 회사의 사장인 Daniel Porush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익명으로 게시되자 Stratton Oakmont이 Prodigy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⁹⁾ 뉴욕법원은 다음 두

4)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나, 영국은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ISP, BBP, Sysop 등에게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자기들이 공급자(Publisher)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하도록 부담지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http://my.netian.com/~lawpch/content/isak.html>에 게재된 아이작 림, "인터넷 명예훼손의 법적 해결책" 참조).

5) Cubby, Inc., et al., v. CompuServe, Inc., et al., 776 F.Supp.135(S.D.N.Y. 1991)

6) CompuServe는 'Journalism Forum'이라는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는 Don Fitzpatrick Associates(DFA)에 의해 "Rumorville, USA"라는 이름의 팸플릿으로 출판되고 있었다. 그런데 동 게시판에 Cubby의 사업내용을 비난하는 글이 올랐던 것이다. 즉, Cubby가 시도 중인 "Skuttlebut"의 판매사업이 "신종의 사기(new start-up scam)"라는 내용의 메시지인데, 동 메시지의 내용은 그대로 "Rumorville, USA"에 수록·배포되었고, 이에 Cubby는 CompuServ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Herbeck, D. A., "Cubby or Stratton Oakmont? : Defamatory Speech on Computer Bulletin Boards", in Susan J. Drucker and Gary Gumpert, *Real Law @ Virtual Space*, Hampton Press, Inc., 1999, pp.315-316 참조).

7)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 1조를 원용하면서 CompuServe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는 바, 특히 다음의 판시내용이 주목된다. : "CompuServe는 출판물에 대하여 편집상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단지 도서관이나 서점, 신문판매점 등과 유사한 위치에 있을 뿐이다." Cubby, Inc. v. Compuserve, 776 F. Supp. 135(1991).

8) Stratton Oakmont, Inc., et al., v. Prodigy Services Company, et al., 1995 N.Y.Misc., 1995 (LEXIS 229, 1995)

9) 1994년 10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Prodigy Services Company의 'Money Talk' 게시판에 익명의 메시지가 띄워졌는데, 그 내용은 중개회사인 Stratton Oakmont이 the Solomon Page Group이라는 인력회사와 함께 주식인수의 사기를 행했다는 비방이었다. "THIS IS FRAUD, FRAUD, FRAUD, AND CRIMINAL!!!!!"이라고 뱉어지는 동 메시지는 2주 가량 동 게시판에 게재되었고, 이에 Stratton Oakmont 측에서 Prodig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다.(사실관계의 내용은 특히 Frankel, A., "On-line, on the hook", *American Lawyer*, 1995, October, p.58에 잘 정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ISP가 메시지의 배포자인가,
공급자인가의 판단기준은 게시내용에 대한
편집권의 유무에 달려 있어

가지 점을 논거로 들어 Prodigy를 게시된 메시지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첫째, Prodigy는 그에 개설되는 BBS에 대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검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게시 메시지 중 음란한 것과 인종적으로 모욕하는 표현물을 사전 검열하는 등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 뉴욕주 지방법원은 주목하였다. 따라서 비방 메시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Prodigy의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 이 점이 일관되게 선전되어 왔다는 사실도 게시 내용에 대해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할 근거로 작용한다고 뉴욕법원은 판시하였다. 즉, Prodigy는 회원관리를 내세워 왔으므로 회원에 의해 게시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배포자 이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결국 양 판결은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된 메시지의 배포자인 경우도 있고 공급자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여기서 ISP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사업자에게 게시 내용의 편집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린다.¹¹⁾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윤리 혹은 공공도덕의 실천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소통되는 메시지들을 규율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메카니즘이 이 두 판결에 의하여 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ISP의 입장에서는 CompuServe사처럼 자신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장치-감시하고 교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Prodigy사처럼 음란이나 인종모욕적인 표현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ISP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서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에 대한 민간 수준에서의 교정 혹은 자율규제의 가능성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이에 통신품위유지법(Computer Decency Act, 1996)은 이러한 딜레마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앞서 설명한 Cubby 사건을 재확인하며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조항(Good Samaritan Clauses)”을 설치, ISP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여기서는 쌍방향의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일단 출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¹²⁾ 그가 음란·외설적, 선정적, 폭력적 정보나 타인 학대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의로 행한 자발적 행위는 그것을 이유

10) 이에 대하여 Prodigy측에서는 BBS상의 정보의 양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모든 BBS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표현물을 삭제하는 등의 통제를 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절차적,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11) 그 외에도 하급심 판결로서 스팸광고에 대한 ISP의 통제권을 인정한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s Inc., 962 F. Supp. 1015(1997); Cyber Promotions Inc. v. American Online, Inc., 948 F. Supp. 436(1996) 등 참조.

12) 47 U.S.C. §230(c)(1). (출판자 또는 표현자의 정의) 쌍방향적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혹은 이용자는 다른 정보통신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출판자 혹은 표현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¹³⁾ 즉, 사이버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P가 선의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행하고 있을 경우에 바로 그 사실만으로 위의 Prodigy사건에서처럼 편집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ISP는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되는 불합리를 이 제230조 제c항 제1호로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ISP가 제2호상의 불건전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부담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언하자면, Prodigy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율규제→이용계약에 의한 편집권 확보→출판자로서의 지위 인정→ 명예훼손책임의 부담→자율규제 포기”라고 하는 악순환을 끊고, “출판자로서의 지위 부인→ 명예훼손책임 면제→이용계약 등에 의한 편집권 확보→자율규제”의 수순으로 나아가고자 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Zeran v. AOL* 사건¹⁴⁾에서 선의의 ISP는 비록 이러한 불법적 정보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삭제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배포자 내지는 통로(conduit)로서의 책임까지도 면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

고 AOL이 게시한(posting) 글이 명예훼손적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최소한 피고는 배포자로서의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 및 제4순회항소법원은 피고의 미국통신법 제230조상의 면책조항을 원용하여, 이 규정에서 ISP를 출판자나 표현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출판자로서의 엄격한 책임을 면제할 뿐 아니라 동시에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배포자로서의 책임이란, 출판자로서의 책임과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책임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하에 배포자에게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법률에서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그 자체 배포자로서의 책임까지도 면제하는 셈이 된다고 하였다.¹⁵⁾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의미심장한 판단을 내린다. 즉, *Cubby*사건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출판자-배포자라고 하는 두 개념의 의미를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책임여하라는 문제로 축소·변환시키고 있

13) 47 U.S.C. §230(c)(2) (민사책임) 쌍방향적 컴퓨터서비스의 제공자 혹은 이용자는 다음 각목을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당해 소재가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제공자 혹은 이용자가 음란, 외설, 선정, 추잡하거나, 명백히 폭력적 혹은 학대적이거나 기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재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접근이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 (B) 정보콘텐츠제공자 등이 제1호에 규정한 소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

14) *Zeran v. American Online, Inc.* 958 F. Supp. 1124(1997): 이 판결은 연방제4순회항소법원에 항소되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997 U.S.App., LEXIS 31791(4th Cir. 1997)

15) D.C.연방지방법원의 *Blumental v. Drudge and America Online, Inc.*, 9992 F.Supp.44 (D.D.C.1998)판결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은 AOL의 게시관을 이용하여 온라인뉴스를 제공하던 M. Drudge가 백악관직원인 S. Blumental은 아내학대자라고 비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AOL을 공동불법행위로 고소한 사안이다. 여기서 법원은 비록 AOL과 Blumental간의 계약에 의하여 AOL이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법 제230조상의 면책조항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미국 판례에 의하면 ISP는 편집권이 없기 때문에 배포자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어

는 것이다. Cubby사건에서는 CompuServe사는 편집권이 없기 때문에 출판자가 아니라 배포자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Zeran사건에서는 배포자라는 개념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있어서만큼은 출판자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출판자(이는 CDA 제230조의 출판자를 의미한다) 개념의 하위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배포자 역시 제230조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시내용은, 배포자란 출판자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단지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출판자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는 반면, 배포자는 그러한 엄격책임이 아니라 최소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negligence)에 한정되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¹⁶⁾

2. 영국과 EU

영국의 경우에는 1996년 개정된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1996)¹⁷⁾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 제1조는 출판자의 책임이라는 제호하에 (1)항에서 (a)관련된 진술의

저작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publisher)가 아니고, (b)그 출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고, (c)명예훼손적 진술이 발행되도록 하였거나(caused) 그에 기여한 사실을 몰랐거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 (c)호에서는, 그 진술이 기록된 전자매체를 처리하거나 그 복제품을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판매하는 자 또는 그 진술이 저장, 복사 또는 배포되거나 기타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그리고 (d)호에서는 그 진술의 작성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진술을 포함하는 생방송(live programme)을 방영하는 자를, (e)호에서는, 자신이 효율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그 진술이 송수신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운용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를 각각 당해 진술의 저작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즉, ISP가 전자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단순한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그 내용의 작성이나 반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 이유로서 그러한 행동(즉, 여기

16) 이 판결은, 소위 피해자가 ISP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함을 고지하고 그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P가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ISP는 그 표현에 대한 편집권(삭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행사한 셈이 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출판자가 되고 따라서 제230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제230조상의 “선의에 의하여”라는 구성요건상의 문제로 넘어가, ISP가 과연 명예훼손에 대한 악의의 의도(malice)가 있었는가의 판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성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C. H. Kennedy, An Introduction to U.S. Telecommunications Law, 2nd ed., Boston: Artech House, 2001, p.144는 이 판결이 오로지 면책의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17) 출처: <http://www.swarb.co.uk/acts/1996DefamationAct.html>

18) 또한 제3항은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어떠한 자가 저작자, 편집자, 또는 발행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는 묵인 내지는 방치)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상의 면책조항은 우선 ISP의 입장에서는 대량의 정보가 소통되는 정보통신공간의 특성상 그 많은 정보를 감시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혹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지게 되는 손해배상의 부담이 역으로 소비자-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완전한 면책의 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ISP가 면책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진술이 송수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부지(不知)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로써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P의 기술적·경제적 한계와 인터넷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조정하는 일종의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¹⁹⁾

Laurence Godfrey 사건²⁰⁾은 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원고인 Godfrey는 피고 Demon Internet에서 운영되는 뉴스그룹 (soc.culture.thai)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에게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기술적

으로 삭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경우 명예훼손법 제1조 제1항상의 면책대상이 되는 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삭제요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같은 항의 면책요건(선의의 방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EU의 권고안은 또 다른 예를 이룬다. “역내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법률문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권고안”²¹⁾ 제2장 제4절은 정보소통을 매개하는 자(intermediaries)가 매개하거나 일시 저장하는 자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그 정보를 생산한 자와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중개자의 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 요건은 ①당해정보가 그 서비스의 이용자(recipients)에 의하여 제공되었을 것, ②그 정보가 서비스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저장될 것으로 하고, 이는 운영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가 수행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그때그때 판단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제12조(Mere Conduit)는 서비스제공자가 단순한 통로로서만 행위하는 경우를 규

19) 자세한 것은 리리안 에드워즈, 콘텐츠스 라이아빌리티, 사이버로-연구會編, 사이버스페이스法, 日本評論社, 2000, 168-176면 참조. 독일의 경우에도 영국과 유사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1997년의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은 ISP가 정보를 자신이 제공한 때, 그리고 제3자가 제공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콘텐츠를 알고 있고 이해를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때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20) Case No: 1998-G-N0 30(1999,3,26): 이해완, 전개논문, pp.259-261에서 전재함.

2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certai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of 18.11.1998 Com(1998) 586 Final, in: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eleccomm/com586en.pdf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ISP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적인 진술이 송수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정하고 있다. 제1항은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매개기능(intermediary)을 수행하는 자 즉, 단순한 통로(conduit)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세가지를 든다: (a)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전송을 촉발(initiate)하지 않았을 것(이용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송수신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b)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되는 정보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송수신을 촉발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면책된다); (c)서비스제공자가 송수신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을 것.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에 그칠 때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제13조는 일시적 저장 즉, caching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정보가 최초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장소와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사이를 중개하는 기술적, 자동적 과정에 불과한 만큼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ISP가 Hosting에 임할 때에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제12조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ISP가 웹사이트나 뉴스그룹 등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이 생산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조항이 적용되어 행위태양별로 다른 책임을 지게 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①ISP가 이용자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현실적 인지: actual knowledge)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②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③불법적인 활동에 관한 인식이 있었거나 그러한 활동이 있다고 볼만한 사건이나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즉, ①과 ②의 경우),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면책된다.²²⁾ 다만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통제나 권한 아래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5조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감시(screen or monitor)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단지 법원이나 법집행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감시의무가 발생하게 될 뿐이다.

3. 정 리

명예훼손책임 등 일련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ISP에게 일정한 면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이념을 지향하고 어떠한 면책사유를 법제화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념²³⁾하에서 사이버공간의 건전성은 네티즌과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ISP들간의 자율적 규율에 의

22) 그리고 이러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통고절차 등 분쟁처리절차나 윤리강령과 같은 자율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3)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미국 특유의 법리와 더불어 자가지배라고 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에서부터 연유한다. 따라서 이 논의를 곧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그 이념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통신품위법은 ISP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법행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상응한 면책조항을 둔다. 즉, ISP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선의로 하는 감시, 통제행위를 촉진하는 한편 그러한 감시·통제행위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으로 인식되어 ISP가 출판자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를 법규정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ISP에 자율규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책임은 감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피해자보호 장치의 결여이다. 익명성이 지배적인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한 자는 그 가해자의 실명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제230조의 해석에 대하여는 아직 미국내에서도 명확한 법리가 구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방법원의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인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 공동체적 통제의 이념에서 있는 유럽 쪽의 대응은 거의 일반적인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ISP는 권고안 제14조에 의하여 최소한 불법적 행위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3자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ISP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책임으로 인하여 ISP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다. 따라서 이 권고

안에 의하면, ISP가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혹은 그러한 정황이 있음을 인식하기 위하여 특별한 감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오로지 법원이나 법집행기관의 명령이 있거나 피해자의 신고·요청 혹은 제3자통보 등에 의하여 그 사실 혹은 정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렇게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한 행동을 취하여야 하며(제14조 제1항 (c)),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 법제의 대조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라는 정책목표간의 조정방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ISP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장적 통제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에는 국가-법-에 의한 후견적 감시 및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를 면하기 위한 콘텐츠감시비용 등 ISP에 가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영업비용을 경감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법에 의한 피해자구제 및 사이버공간의 공동체적 통제에 의한 질서유지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III. 우리 법제에서의 ISP의 책임

1. 하급법원의 태도 - 소위 '박지윤' 사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사법부의 입장이나 학술적 담론이 정리하여 소개될 만큼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그

미국은 ISP에 자율규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감경하는 반면 유럽은 법에 의한 후견적 감시 및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저 유사한 사안으로, 신문에 실린 독자투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간혹 제기될 뿐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의 게시물을 삭제한 한국통신 하이텔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거부한 대법원판결²⁴⁾은 이 부분에 관한 선도적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ISP가 매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즉 ISP가 제3자 표현물의 매개자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ISP의 편집권(삭제권)의 남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용계약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제3자적 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과는 일단 거리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하급법원의 판단이지만, 공개게시판에 모 가수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자 그의 매니저가 하이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²⁵⁾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나름의 선례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면서 ISP도 일정한 조건하에 제3자 표현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됨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²⁶⁾

항소법원은 ①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의 이용자보호조치강구의무, ②같은 조 제2항의 이용자민원의 즉시 처리의무, ③같은 법 제53조 제1항(및 시행령 제16조)의 불온통신조항, 그리고 하이텔 이용계약에 있어서의 ④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18조 제2항의 민원처리조항, ⑤ 제21조의 게시물삭제권("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항소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회사인 하이텔은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명예훼손적]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²⁷⁾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판단은 배포자와 출판자의 2분법적 구별론에 입각하여 후자에게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술한 EU의 예에 접근한 것이다. 즉, 하이텔이 개시

24) 대법원 판결 1998.2.13 선고 97다37210. 이 판결은 하이텔의 가입약관상에 "일정한 경우 통신계재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한 조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노조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판을 폐쇄한 하이텔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보기나름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출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25)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 1999.8.18 선고 99가소83281.

26) 서울지방법원(제4민사부) 판결 2001. 4. 27 선고 99나74113

27) 하이텔은 이러한 이용자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표현자(가해자)에 대하여 경고메일만 보냈을 뿐이다.

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는 단순한 배포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제3자 콘텐츠를 저장,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약관상으로 저작권삭제권 등 일련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전자게시판 관리의무”를 지는 편집자 내지는 출판자로서의 지위에 들어서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EU의 그것과는 달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즉 제3자 콘텐츠가 명예훼손적 표현이며 그것이 현재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게시판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던 경우와,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일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며 EU는 전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의 판례는 이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2. 미해결의 문제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판례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즉, 이 판결이 다루고 있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 그 중 중요

한 것만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1) 법적 책임의 근거와 성격

이 판결에서 말하는 “전자게시판 관리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판결이 거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보호조치의 무나 불온통신조항은 행정법상의 질서유지에 상당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곧장 ISP가 개별적인 이용자 혹은 비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다.²⁸⁾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사적 계약의 특성상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비이용자(비가입자)에 대하여도 ISP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를 지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특히 약관상에는 이용자와 제3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저작권삭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하이텔에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게 되면 일단은 부작용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ISP의 법적 책임은 명예훼손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거나 또는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출판자의 법적 책임과 다른 행위양태를 가진다. ISP는, 제3자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였을

28) 예컨대, 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소위 ISP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법으로부터 직접 전자게시판 관리의무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전화사업자 역시 전화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져야 한다는 확대해석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 판결이 근거로 든 전기통신사업법은 그 자체로서는 ISP의 법적 책임을 도출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한 사업유형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최근 판례는 배포자와 출판사의
이분법적 구별론에 입각하여 후자에게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유럽의 예에 접근

뿐.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부작위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3자 표현물에 대한 삭제·접근제한조치권의 불행사는 “전자게시판의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만이 남는다. 즉, ISP는 명예훼손적 제3자 표현물의 잠재적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구체적 의무를 지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법제가 다른 영미의 경우는 차치하고서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²⁹⁾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이로부터 법적 책임을 도출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위험책임에 준하는 부작위책임을 문제가 제대로 판례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완숙하게 도입되어 있지는 않아, 판결에서처럼 “전자게시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확고한 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2) 면책사유와 책임의 정도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알 수 있었던”의 의미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지 않다. 판결은 분명 단순한 경고메일의 발송

정도로는 신속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조치는 EU에서와 같이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행동을 취하였을 때”를 의미할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예컨대,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로서의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론이나 공적 포럼(public forum)³⁰⁾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불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었던”이라는 요건 역시 고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명예훼손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음은 어떠한 표현이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사실 양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바, ISP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의 판단이 대립하는 경우 ISP가 나름의 적정절차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고 그 게시물을 방치하였으나, 나중에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는지 아니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³¹⁾

29) 김상용,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p.144 이하 참조.

30) 판결문상으로는 이미 피고회사측에서 공적 포럼론을 제기하였음을 암시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31) 여기서 판례는 제3자 즉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비중있게 다룬다. 하지만,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적 기관이기는 하나, 그 구성이나 기능이 일종의 자문 혹은 권고기관으로서의 성격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그의 판단에 어떠한 법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ISP에게 제3자표현에 대한 삭제권고를 하고 불응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폐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미국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1963) 참조.

3) 정책판단의 문제

이 판결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SP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념적 요청들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ISP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곧장 ISP의 영업비용 및 이용자에 대한 그의 감시·통제권력과 직결되며, 이는 각각 정보통신산업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 창출이라는 요청에 장애요인이 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그 법적 책임의 근거로서 ISP가 편집·감독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용하게 되면 ISP는 영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편집·감독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다시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자율규제와 국가개입, 경제와 질서 및 개인적 기본권과 권리가 각각 나름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ISP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ISP의 법적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ISP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윤리확립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ISP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ISP가 출판자의 지위에서 배포자 또는 전화통신사업자와 같은 단순매개자로 역할변이를 하여 무책임하게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그 중간적 지점을 모색할 것인지를 암묵적으로라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

IV. 결론 -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며

실제 ISP의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시행일 2001.7.1)는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법적 책임의 근거에 관한 논란의 상당부분을 해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또한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명예훼손적인 제3자 표현물이 게시되어 있음을 다른 경로를 통해-즉 자체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거나 일반적인 네티즌이나 제3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던 IS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나 삭제 혹은 반박문 게재의 요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는 이 경우 제44조는 ISP에게 일반적 면책을 인정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위의 판결의 취지처럼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가 불명하다는 데에 있다. 즉, 위의 판결에 충실할 경우 악의의 ISP는 이 조항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역으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ISP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도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ISP의 법적 책임 문제는 정책적 고려와
법적 고려가 함께 아우러지는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제44조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해진다. 또는 제 44조가 ISP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해석에 의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없는 한 ISP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근거의 문제는 남아 있게 되는 것이며, 이로부터 수많은 시행착오가 도출될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사이버공간의 윤리라고 하는 질서요청,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기본권보호와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도 있는 타인의 권리·명예권, 사생활권, 저작권 등-보호의 문제가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상충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착한 사마리안 조항과 EU의 권고안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ISP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목표와 행정적 목표, 헌법요청과 민법이론이 각각 독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우열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ISP의 법적 책임은 법도그마에 충실할 뿐인 우리 법원의 법판단에 의하여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책판단-네 가지의 요청 중 무엇을 무엇에 대하여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아직은 채 형성되지 못한 사이버윤리를 감안할 때 EU의 태도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또한 관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ISP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정책적 고려와 법적 고려가 함께 아우러지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특 집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황 성 기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 ☐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박사
-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매체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외 다수
- ☐ 현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I.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TV방송에서는 ‘현장고발’ 내지 ‘고발프로그램’의 형태로 TV취재진이 경찰의 탈법·불법행위 단속현장이나 영장집행현장에 동행 취재하여 이를 방영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TV취재진이 경찰의 탈법·불법행위 단속현장이나 영장집행현장에 동행 취재할 때, 사실상 취재진들은 ‘취재의 효율성’을 위해서 취재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취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취재대상이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장이나 영장집행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취재하는 것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즉 비록 취재대상이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당해 불법행위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여 당해 불법행위를 취재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무한정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혹은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법감정에 의하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그와 같은 언론기관의 취재행위를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동행취재에는 엄연히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간의 충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렇게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등 형사사법기관(예컨대 경찰이나 검찰)의 공무수행시 취재 기자들이 동행해서 취재하는 것의 법적 책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수행시 동행하여 취재하는 것이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혹은 초상권)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경찰의 불법행위 단속현장이나 영장집행시 동행 취재·
 보도하는 행위에는 언론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II. 언론자유와 한계로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반적으로 소위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상징되는 자유권·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¹⁾은 우리 헌법 제17조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우리 헌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또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기관이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의해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는 항상 서로 조화되지는 않는다. 즉 언론매체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언론매체규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제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기관이나 출판 등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의한 개인 사생활의 보도나 영리적 이용은 이들 언론매체가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요소이자 규제근거로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

4항²⁾ 및 제37조 제2항³⁾에 의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보호와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는 부적(負的) 관계를 떨 수밖에는 없다. 즉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경우에는 이들 언론매체가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이들 매스미디어가 향유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무단으로 침해 내지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충돌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그 유형이 다종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유형들을 분석하고, 각 유형들마다 언론기관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간의 충돌을 개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유형화 내지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화와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 관습·통념·제도에 따라서 변용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Prosser가

1)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을 최초로 정립했다고 평가되는 논문인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1890)은 개인의 사상, 감정, 정서, 외모, 언행, 개인관계 등과 같은 인격권(the right to one's personality)적 요소의 보호를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을 전통적인 보통법(common law)의 해석을 통해 금전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여 언론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공표로부터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통법상의 권리로 파악한 것이지, 헌법상의 권리로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2)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분류한 프라이버시 침해유형과 그에 대한 보호법리가 구체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Prosser는 불법행위론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그는 기존의 미국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내용을 각기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불법행위로 분류하면서, 이들 각각은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아닌 각각 다른 법익을 둘러싼 별개의 원리로서 파악되고 또한 별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네 가지 유형이란 ①사생활에 대한 침입(Intrusion upon the plaintiff's seclusion or solitude, or into his private affairs), ②사생활의 부당한 공표(Public disclosure of embarrassing private facts about the plaintiff), ③오해를 낳는 공표(Publicity which places the plaintiff in a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④사생활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for the defendant's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ame or likeness)을 말한다.⁴⁾

위와 같은 Prosser의 기준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기관의 침해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를 구체화 내지 유형화함으로써, 법리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상호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⁵⁾

아무튼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수행시 동행하여 취재하는 것이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혹은 초상권)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Prosser의 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Ⅲ. 분석대상판례의 내용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수행시 동행하여 취재하는 것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혹은 초상권)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례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관행상 TV취재진이 경찰의 탈법 불법행위 단속현장이나 영장집행현장에 동행취재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장면을 피의자의 동의없이 취재·촬영한 경우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올해 초 나와서 주목된다. 바로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4) 보다 자세한 것은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1960) 참조할 것.

5) 이러한 유형화에 따라 우리 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정리 소개한 것으로는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pp.116-141 참조.

서울고법은 취재당시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도 개인의 사적 장소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판시

원고는 모 대학 음대 교수로서 1999년 1월 4일 자신의 음악연습실에서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이 과정을 취재 보도한 서울방송 및 취재기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4672).

2) 판결의 주요내용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과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사생활 및 초상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취재기자 A가 1999. 1. 2. 22:00경 연습실 앞 복도에서 이동식 6mm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교습을 마치고 위 연습실에서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및 원고를 원고의 동의없이 촬영하여 위 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사실,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 취재기자 A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카메라기자 등과 함께 연습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 취재기자 A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취재를 하고, 연습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 원고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연습실에 남아 연습실의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방송에

나갈 보도내용을 반복 촬영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고 취재기자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취재는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취재장소가 현행범 체포장소였으며, 취재대상인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신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취재기자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통념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취재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도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

(2)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는 증거가 있거나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서울방송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 보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진실과 합치한다고 봄으로써 결국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판결의 의미

위의 판결은 취재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가 비록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재행위가 개인의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당해 불법행위자가 취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취재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의 충돌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즉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취재행위'의 위법 여부이고, 그 취재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재대상이 된 행위의 위법성이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취재가 이루어진 '대상행위의 불법성'이 당해 행위에 대한 '취재의 불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전형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취재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그러한 취재가 상대방의 동의에 근거한 것인지가

당해 취재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 연방대법원

Wilson v. Layne, No. 98-83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경찰관이 영장집행과정에서 언론인을 동행하여 취재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의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예컨대 1999년 5월 24일 선고한 Wilson v. Layne(No. 98-83)사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피고를 비롯한 연방경찰들은 원고의 아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신문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동행시켰다. 하지만 체포영장에는 이들 기자들의 '동행(ride-along)'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경찰관들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원고는 있었지만 체포대상이 된 원고의 아들은 없었다. 기자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취재하고 촬영도 하였다. 하지만 신문사는 이 과정들을 촬영한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영장집행과정에 기자들을 동행시켜 취재 촬영케 한 것은 자신의 수정헌법 제4조상의 기본권⁶⁾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6)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수색, 체포 및 압수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및 압수의 영장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장소와 피체포자 또는 압수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할 수 없다".

취재대상 행위의 불법성이 취재의 불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지 못해

2) 판결의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영장집행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거지에 언론이나 기타 제3자를 동행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영장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주거지 소유자가 갖는 수정헌법 제4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4조는 주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privacy of the home)에 관하여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주거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찰에게 원고의 주거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기자들을 동행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경찰에게 있다는 점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집행과 관련된 경찰의 행동은 '허용된 침입(authorized intrusion)'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장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영장집행에 있어서 경찰을 보조한 것도 아닌 기자들의 존재는, '허용된 침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아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동행기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들, 예컨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도하기 위한 것, 법집행기관들의 활

동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 경찰력의 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 그리고 용의자와 경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동행취재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3) 판결의 의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는 사실관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피고가 취재기자 및 서울방송사였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가 취재기자가 아닌 연방경찰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장집행의 목적과 무관한 언론인들의 동행취재는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IV. 경찰공무수행시의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이 누리는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특히 보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⁷⁾ 하지만 이러한 취재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이러한 취재의 자유의 한계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판례도 바로 이러한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7)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p.475 ; 김철수, 『[제13전정신판]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p.624 ; 허영, 『[신판]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p.530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p.392.

자유간의 긴장관계를 보여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Wilson v. Layne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사실, Prosser교수의 분류에 따를 때, 언론기관에 의한 '사생활의 침입(Intrusion)'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침입(Intrusion)'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사생활의 침입(Intrusion)'과 같은 유형의 침해는 다른 유형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와는 달리, 언론기관에 의한 출판이나 방송의 단계에서가 아닌 정보수집 내지 취재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는 언론기관에 의한 공표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취재를 위해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그러한 취재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별도의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점이 바로 다른 유형의 프라이버시침해와 달리 그 자체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음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보호와의 상호조화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사생활의 침입(Intrusion)'과 같은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발달된 법리인 공적 인물이론이나 공공의 이익이론들도 적용

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둘째, '사생활의 침입(Intrusion)'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건은 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점이다.⁹⁾ 사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는 요소는 대로(大路), 공원, 해변, 백화점 내의 통로, 식당 등의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소에서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관찰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촬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타인의 접근이 통제된 장소, 예컨대 병실, 앰블런스, 호텔객실, 개인 사무실, 탈의실 등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입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바로 이러한 요건 및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개인의 사적 장소에 대한 취재행위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반면에, 그 취재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의 법리를 적용해서 그 위법성을 부인하였다. 즉 '취재행위'와 취재의 결과로 얻은 내용의 '보도행위'를 각각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라고 하는 별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판단하였던 것이다. 미국 연방대

8) 방석호, 앞의 책, p.131.

9) John D. Zelezny,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s, and the Modern Med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7, p.178.

취재를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그러한 취재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별도의 법리로 접근

법원의 판결도 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신문사는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경찰들이 원고의 동의없이 취재기자들을 동행 취재케 한 것이 과연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취재대상이 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할지라도 취재가 이루어진 장소가 '개인의 사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Wilson v. Layne* 판결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도 영장집행의 고유한 목적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언론기관의 주거침해행위를 주거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침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등 형사사법기관(예컨대 경찰이나 검찰)의 공무수행시 취재기자들이 동행해서 취재하는 것의 법적 책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수행시 동행하여 취재하는 것이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 혹은 초상권)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례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분석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은 언론기관이 향유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그 중에서도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취재행위'와 '공표행위'를 구분하여 배상책임을 판단함으로써, 법리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언론기관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상호 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김철수, 『[제13전정신판]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허 영, 『[신판]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John D. Zelezny,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s, and the Modern Med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7.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383, 1960

언론소송의 실무

함 석 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목 차

- I. 서론
- II. 언론 소송의 개관
 - 1. 소장 접수 단계
 - 2. 재판의 진행 단계
 - 3. 사건의 종결 단계
- III. 심리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항들
 - 1. 관할
 - 2. 명예의 개념
 - 3. 당사자
 - 4. 사실 인정과 심리 절차의 진행 단계
- IV. 위법성 조각 사유
 - 1. 총론
 - 2. 입증 책임
 - 3. 요건의 분설
 - 4.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 V. 사건의 종결
 - 1. 판결
 - 2. 기타 방법에 의한 사건 종결
- VI. 결론

지난 여름호부터 나누어 게재해 온 이 논문은 언론재판 담당부인 서울지법 민사25부 판사로 근무했던 필자가 2000년 9월 <전문법과 전문분야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번호에 나머지 부분을 최종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특히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의 산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1) 손해액 산정

V. 사건의 종결

언론 사건에서도 다른 일반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분쟁의 가장 원칙적인 종결 형태는 판결에 의한 것이다. 그밖에 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1. 판결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손해액 산정 문제에 관

(1) 재산상 손해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와 같이 언론보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그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의료, 환경, 제조물 책임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의 입증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해 증명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²¹²⁾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는 “비방 광고들

212) 이은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p.17. 참조.

한편, 일본에서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손해 입증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있고, 판례로 인정된 재산적 손해는 거의가 변호사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竹田 稔, 위 책, p.169 이하 참조.

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²¹³⁾

한편, 연비 향상 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방송 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연 절감 장치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 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었고,²¹⁴⁾ 그밖에 하급심 중에는 영업 방해에 따른 손해(사고 클럽 광고 선전비, 직원 급여, 유니폼에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었다.²¹⁵⁾

(2) 정신적 손해

(가) 민법 제751조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여기에 과거의 잘못과 앞으로의 사정을 위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²¹⁶⁾

한편,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에는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성격이 있음을 판시하기도 하였다.²¹⁷⁾

그동안의 실무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언론 사건에서 손해액의 증점은 위자료에 있고, 이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다른 분야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국은 그 나라마다의 사정과 법률 문화와 제도상의 차이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배심 제도와 징벌적 배상에서 유래하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는 이미 유명한 사실이 되어 버렸고(비록 후에 관사의 재조정으로 감액되기는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미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한다.²¹⁸⁾

한편, 언론 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 1,000만원 이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비판²¹⁹⁾이 있어 왔는데, 그 후 위자료의 액수는 점차 늘어나 현재는 1억원 이상의 배상을 명한 사례도 꽤 있

2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공1996상, 1486].

21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공1999, 2292]. 이 사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이은영, 위 글을 참조하기 바람.

215) 부산고등법원 1998. 2. 26. 선고 97나3873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5집, p.289).

216)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2권 1호(통권 42호)(1992. 3.), p.53. 이하 참조.

21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공1985, 23].

218) 이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자료로는 허반,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 수단 - 손해배상·원상 회복·금지 청구 -”, 『민사판례연구』X(1999), 민사판례연구회, p.665 이하 참조.

219)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한다. 竹田 稔, 위 책, p.171 이하 참조. 한편, 위 책, p.153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일본 판례와 위자료 액수 및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었다.²²⁰⁾

위와 같은 위자료의 고액화 현상은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던 과거의 전통 이론에만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자료의 고액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언론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여 구제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에는 언론 기관들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규모의 후발 언론사들이 기존 시장에 진입하거나 언론사 상호간에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보도를 하는 중에 법이 허용한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리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언론 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 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 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익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²¹⁾

결국 언론 사건의 위자료 산정에는 어느 정도 언론사들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만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²²²⁾

(나)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항들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설시가 있는 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²²³⁾

그동안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발행 부수, 독자층의 구성, 기사의 크기 및 보도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횡

220) 법인에 대한 무형의 손해이기는 했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은 3억 원을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한 언론 기관이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억원의 배상을 하라고 명한 하급심 판결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1억2천만원(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검사에 대하여 1억원(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유명 앵커 우먼에 대하여 1억원(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84277(본소), 97495(반소) 판결) 등 참조.

221) 이은영, 위 글, p.12 참조.

222) 언론 사건에서의 위자료의 고액화 필요성과 그동안의 판결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한 글로는 허만, 위 글, pp.689-690 참조.

2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999상, 330]. 이 부분 설시는 상당성 판단 부분에 관한 설시였으나, 위자료 산정 사유로서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인용하였다.

수, 보도의 진실성, 비방의 정도,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이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설치되고 있다.

법인에 대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인에 대한 위자료 인정과 관련하여 학설로는 법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가 전제되는 위자료의 인정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법인도 명예를 가지는 이상 그 침해시 위자료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자료라는 표현보다는 '무형의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²⁴⁾

2)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1) 개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불법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따라

서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²²⁵⁾

(2) 실무

(가) 사죄 광고의 위헌 결정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오던 것이 '사죄 광고'였다. 사죄 광고는 통상 신문, 잡지 등에 게재 장소와 함께 활자의 크기를 지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었다.²²⁶⁾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1. 4. 1. 선고 89헌마160호 결정²²⁷⁾에서 양심의 자유에 반함을 주된 이유로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러 그 이후로는 사죄 광고를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²²⁸⁾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형태

그렇다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가. 이는 이론적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의 사례

22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공1998하, 1712]도 법인의 손해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무형의 손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위자료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하급심 중에는 법인에 대하여 위자료라고 표현한 사례들도 있었다. 일본에서도 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무형의 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한다(竹田 稔, 위 책, p.153 이하의 판례를 참조 바람).

225)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41.

226) 이러한 사죄 광고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던 방식으로,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 논의가 있었으나, 日本最高裁判所 昭和 31. 7. 4.(大法廷 民集10卷7 785쪽)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단지 사태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27)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권(1991), 149쪽.

228) 한편, 위 위헌 결정 이후 형사 판결 요지 및 민사 판결 요지의 게재와 함께 그동안의 사실 경위를 알리는 피고 명의의 광고의 게재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내용의 광고를 명하는 것 역시 피고가 양심상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1992. 12. 15. 선고 91가합38193 판결. 그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4. 1. 11. 선고 93나6210 판결.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116 이하.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43 주172 참조.

와 외국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사례를 통하여 축적되어 가는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사죄 광고에 대신할 수 있는 민사상 원상 회복 처분으로, ①가해자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의 신문, 잡지에의 게재, ②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를 들고 있다.²²⁹⁾

그러나, 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형식의 원상 회복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3) 정정보도문

(가) 개념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 혹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정보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개념상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개념을 일응 위와 같이 정의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는 정정보도문 가운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요지까지 아울러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나) 정정보도문의 분석

①정정보도문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일간 신문, 방송의 사례를 중심으

로 본다)

[①피고 주식회사 모 일보사는 ②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③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모 일보(위 피고 발행 신문임)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④1회 게재하라.]²³⁰⁾

[①원고는 ②이 판결이 확정된 후 ③최초로 방송하는 21:00 '모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모 회사 직원들의 비리 보도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²³¹⁾

원칙으로는 출판물 등의 발행인과 방송 사업자만이 정정보도문의 게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인이 관여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잡지 등의 출판물의 경우 법인과 대표인 개인이 동시에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자가 모두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기사 작성권 외에 발행권이 없는 기자들,²³²⁾ 퇴직한 경우²³³⁾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명예 회복을 구하는 경우 판례

229)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p.443-444 참조.

230) 이 주문은 비교적 최근의 나온 사례로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에서 인용한 것이다(다만 이 판결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

231)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참조(항소심 진행 중. 다만, 위 판결에서는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도록 명하였다).

23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3집, p.219).

233)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선고 96가합72242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6집, p.127).

의 태도는 대체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재하도록 명한다. 하지만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²³⁴⁾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²³⁵⁾ 라고 하여 판결 확정 이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위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여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판결 확정 후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문제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²³⁶⁾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정정보도'에 관한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우선 가집행 선고 요건인 재산상 청구권이란,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 예를 들면 물권, 채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에 기한 청구 등을 말하고, 친족, 상속 관계에 기한 신분권이나 기타 비재산상의 청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²³⁷⁾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이 재산상 청구권이

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언론 사건의 정정보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법 제95조가 규정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1조에서 준용), 특허법 제131조(실용신안법 제46조에서 준용), 상표법 제69조, 의장법 제66조가 규정한 '업무상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명하는 '해명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²³⁸⁾

우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재산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²³⁹⁾

그러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는 재산상 청구권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정정보도문은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달리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²⁴⁰⁾ 즉, 정정보도는 피고가 그 책임 아래 행할 것이 요구되는 부대체적 작위 의무(不代替的 作爲義務)인 것이다. 또한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전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23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 12. 선고 93가합3572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22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 26. 선고 94가합5021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4집, p.199).

235)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2집, p.261).

236) 위 서부지원 사건과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한 사안이었다. (다만 위 고등법원 판결은 저작 인격권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237) 이재성 외 3인 공저, 『주석 민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p.449 참조.

238) 저작권법 제95조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지적 재산권법 분야의 '업무상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역시 유사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239) 일본 판례는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소는 소송법상 재산권상의 소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最高裁判所 昭和33.8.8. 民集12卷1921쪽(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p.444-445, 주 176에서재인용) 참조.

240) 다른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한 경우라도, 우선 다른 매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광고비 상당액을 피고 언론사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정정보도문을 명하는 외에 달리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면 채무 명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기 때문에 그 요건과 개념 자체에 재산상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판결은 성질상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도 매체를 통하여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는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판결을 보면, 보도가 된 피고의 당해 매체에 대하여서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하였고, 그밖에 다른 매체에 광고하라는 주문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²⁴¹⁾

그리고 제목, 본문의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게재할 면과 위치, 방송할 시간대와 위치도 특정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원래 보도 위치나 게재 면 등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활자 크기의 경우 원래의 보도와 같은 크기 활자라고 지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청구 취지를 참고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정정보도를 명하면 된다. 다만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188조)의 원칙상 법원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게재 위치, 방송 시간대 등을 청구한 것보다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²⁴²⁾

주의할 것은 잡지는 지면이 많기 때문에 신문이나 일반 방송과는 달리 목차란(차례란)에

도 정정보도문의 목차를 넣도록 명해야 할 것이다.²⁴³⁾

정정보도문은 보통 1회를 명하나, 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다만 위에서 예로 든 방송에 관한 주문에서는 문면상 1회 방송하라는 취지가 분명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횟수를 줄여 인용할 수는 있으나, 횟수를 늘일 수는 없다.²⁴⁴⁾

② 정정보도문의 내용

(정정보도문)

모 일보는 1999. 7. 31.자 신문에 '검찰의 감청 의혹' 또는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 (중략) ... 휴대폰 통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중략)...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였다거나 감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피고 신문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판례에 나타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전 보도에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과,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241) 다른 언론 매체에의 정정보도문 게재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는 위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선고 96가합72242 판결 참조. 한편, 사회 광고에 관한 사례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245 이하) 참조.

242) 이성룡, 위 글, p.83;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45 등 참조.

243) 이에 관한 사례로는 위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선고 96가합72242 판결 등 참조.

244) 최근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63138 판결(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 보도는 한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이 있었다.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²⁴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사죄 광고가 위헌이 된 점과 반론보도청구와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 본안은 함께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이 정정보도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간접 강제

(만약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쯔한 돈을 지급하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 의무라 할 것인데,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해 놓은 방법이 간접 강제이고(위 법 제693조), 위 형태로 선고된다.

이러한 간접 강제 주문을 본안 판결에 함께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정정보도에 관한 채무명의를 성립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간접 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명의를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 채무를 위

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 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 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 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간접 강제에 관한 주문을 붙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간접 강제는 실제로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에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에만 간접 강제 주문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²⁴⁶⁾

(라) 한편, 민법 제764조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독자적으로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하여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죄 광고에 관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 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 범위 내에서 명예 회복 처분을 금전 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고 실시한 바 있어²⁴⁷⁾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배합하여

245) 사죄광고의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한 판결이라고 보여지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제2집, p.215)에서는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간단한 내용을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246) 정정보도와 간접 강제를 아울러 명한 사례는, 위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선고 98가합18280 판결 참조.

다만, 반론보도청구의 소에서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즉, ‘이 판결 송달 후’ 일정 시점에 반론보도청구할 것을 명하고도) 바로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명할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여러 논란을 거친 뒤에 현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및 위 규정을 준용하는 방송법 제91조에 따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다. 반론보도청구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위와 같은 이전의 논란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 문제”, 『사법논집』제28집 (1997.12.), 법원행정처, p.123 이하 참조.

24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공1988,1020].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마) 인지와 소송 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1998. 10. 8. 대법원 규칙 제1568호)’ 제14조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라는 의미는 통상의 광고 게재 요금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²⁴⁸⁾

소송 비용을 명할 때에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용 자구 수정, 자수 축소, 위치 조정과 같이 근소한 변화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 승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횡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3) 금지 청구

(1) 필요성과 문제점

명예 기타 인격권들은 한번 침해되고 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는 그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과거 침해 행위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침해가 계속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역시 금지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언론보도나 출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금지 청구를 전반적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사전 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²⁴⁹⁾ 위 두 요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언론 사건의 금지 청구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방해 예방 청구(침해 행위의 사전 억제), 방해 정지·배제 청구(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의 정지와 제거)가 있다.²⁵⁰⁾ 긴급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는 주로 출판물의 배포 금지 가처분²⁵¹⁾ 등의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나 출판 전에 그 정보나 문구 등을 알아내기 어렵고 그 입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민사 본안 소송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²⁵²⁾

(2) 인정 근거

금지 청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거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금지 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의, 과실 등 불법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금

248) 주 237에서 인용한 最高裁判所 昭和33.8.8.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249)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p.450-451 참조.

250)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50; 竹田 稔, 위 책, p.192 참조.

251) 시사성 있는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박용상, 위 책, p.176 이하 참조.

252) 참고할만한 독일 사례를 보면, 유괴범이 100만 마르크를 요구하며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어린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던 상황에서, 함부르크 지방법원(LG Hamburg)은 1977. 10. 19. 함부르크 소재 다수의 언론사에 대하여 4세 어린이의 유괴 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보도 금지 기간으로 정한 1977. 10. 24.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박용상, 위 책, p.179 참조.

그밖에 영미법계, 독일, 프랑스에서의 금지 청구에 관하여 간명하게 설명해 놓은 글로는 竹田 稔, 위 책, pp.192-193 참조.

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바와 같이 금지 청구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인데, 사후 구제 수단인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²⁵³⁾

그리고 인격권을 물권의 경우와 같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로 보아 물권과 마찬가지로 금지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²⁵⁴⁾ 이 견해에 따르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는 않고, 다만 구체적인 요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요건은 이 문제를 논하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²⁵⁵⁾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 법리에 지나치게 얽매어 인격권, 특히 명예에 관한 권리를 물권에 유사한 대세권으로만 파악할 경우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 요건과 관련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즉, 사후 구제 수단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에는 언론 기관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데, 표현 행위의 사전 억제라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 청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과실마저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별 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접할 때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이익 형량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사례

(가) 부작위 청구에 관한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²⁵⁶⁾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된다. (중략) 우리나라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그 동안의 피고의 광고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행할 위법한 광고로부터 그 명예·신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광고의 증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였다.

(나) 기타 사전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모 잡지사 및 그 발행인 등이 제1 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원고에 대하여 그 사상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

253)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51.

254) 이 견해는 日本最高裁判所 昭和61.6.11.(民集40卷4중 877쪽) ‘北方ジャーナル(북방저널)’ 사건에 실시된 견해이고, 우리의 학설 역시 이 견해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451(이를 인격권설이라 부르고 있다.); 지홍원, 위 글, p.220 등 참조.

255) 위 ‘북방저널’ 사건에서는, ①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②그것이 전혀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③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피할 길이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밖에 견해에 대하여는 한위수, 위 글(사법논집), pp.451-453 참조.

256) [공1996상, 1486].

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고 나면 그 사후 구제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피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래 침해행위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사전 예방적 구제의 수단으로 장래 침해행위의 정지·금지라는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①피고 회사와 피고 갑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말소하기 전에는 이 사건 각 주간지의 발행·판매·배포 금지를 구할 권리와 위 각 기사에 관한 광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 기타 인쇄물의 편집·발행·판매·배포 및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②피고 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인쇄·제본·발행·판매·배포와 위 제2 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책(단행본) 기타 인쇄물의 편집·발행·판매·배포 및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광고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²⁵⁷⁾

(4) 간접 강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작위 청구에 간접 강제를 인정할 필요성과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작위 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 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 절차(협의의 소송 절차)에서 먼저 채무 명의를 성립한 후에 채

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 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채무 명의를 성립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간접 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 명의를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 채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 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 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 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 채무에 관한 소송 절차의 변론 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 명의를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 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판결 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민사소송법 제694조에 의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이 판결의 배상 명령 부분에 대하여 상소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693조 제2항에 의한 즉시 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5) 여론

257)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720 판결.

최근 명예훼손의 보도가 있었을 경우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혹은 영구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완전 삭제를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서버의 파일 자료나 지난 기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필름 자료 등에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부분을 삭제, 배포하지 말라고 청구해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²⁵⁸⁾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청구도 인용되어야 마땅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위자료와 더불어 정정보도 등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까지 받은 경우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삭제나 아니나에 관한 일도양단(一刀兩斷)적인 해결 방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버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기사란에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라는 형태의 주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²⁵⁹⁾

2. 기타 방법에 의한 사건 종결

개관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언론사건의 분쟁 당사자들은 다른 분쟁에서보다도 폭넓은 대화와 구제 수단을 거친 후에 소송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재판상 조정이나 화해, 재판 외에서의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²⁶⁰⁾ 앞으로 통계에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소송 절차는 공개되기 때문에 판결로 인하여 다시 한번 보도내용

이 반복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까지도 알려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 전담부가 생긴 이래 언론 사건에 능통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져 가고 있고, 또한 최근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가면서 비교적 판결 결과가 예상 가능해졌다는 점도 언론 사건에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나 기자 등이 화해를 시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기 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갖은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사건에서 원고는 보도가 있었던 사실과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다음 단계의 입증 즉, 보도의 진실성 및 공익성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은 모두 언론사인 피고들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가 계속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라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사실 관계의 정립이 어려운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VI. 결 론

이상 언론 사건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었

258) 각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모 신문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는 기사를 마이크로 필름에 보관하지 않고 인터넷 서버에만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259) 다만, 정정보도문을 동시에 게재하라는 주문은 법적 성질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가질 것이다.

260)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아니하나 본인이 느낀 바로는 언론 사건 중 상당 부분이 재판상 화해나 조정, 재판 외에서의 분쟁 해결로 인한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의 형식으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화해나 조정 등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 재판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그동안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언론 사건을 처음 대하시는 법관들과 그 밖에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김증한 외, 『주석 채권각칙 IV』,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再全訂版, 박영사, 1990.
-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조선일보사, 1997.
- 윤재홍, 『TV 뉴스 - 취재에서 보도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이시윤, 『민사소송법』(新訂3版), 박영사, 1998.
- 이재성 외 3인 공저, 『주석 민사소송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 제3집,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 제7집.
- 김상용,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법의 비교 고찰 1,2,3”, 『사법행정』 322(1987. 10.), 324(1987. 12.), 326호(1988. 2.).
- 김재형, “인격권 일반 - 언론 기타 표현 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X, 민사판례연구회, 1999.
- 김종서,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년 여름호.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사법논집』 제22집, 1991.
-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12권 1호(42호), 1992년 봄호.
- 양경승, “반론보도청구권의 제 문제”, 『사법논집』 제28집, 1997.
-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민사판례연구』 X, 민사판례연구회, 1999.
- 엄규호,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 『언론중재』 10권 4호(통권 37호), 1990년 가을호.
-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재판자료』 제66집, 법원행정처, 1999.
- ,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재판자료』 제77집 하권 (헌법 문제와 재판), 법원도서관, 1997. 6.
- 이광범,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그 구제 방법 - 대법원 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 1997.
-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2권 1호(통권 42호), 1992년 봄호.
- 이성룡, “언론과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방법과 손해배상 소송의 실무의 개관”, 『인권과 정의』 271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년 3월호.
- 이은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도서관, 1997. 12.
- 최종길, “인격권의 사법상의 보호 - 독일의 학설 판례의 발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9권 1호, 1965.

- 한기택,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 권리자 및 정정보도의 한계 -”, 『대법원판례해설』 27호, 1997. 9.
-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 문제”, 『사법논집』 제24집(1993), 법원행정처.
- _____, “집단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8 여름호.
- 황성기,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 매체 규제 제도의 개선 방향”, 『법과 사회』, 1999년 16,17권 합본호).
- _____, “전자 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년 봄호.
- 허 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 수단 - 손해배상·원상 회복·금지 청구 -”, 『민사판례연구』 X, 민사판례연구회, 1999.

2. 외국 문헌

Dwight L. Teeter, Jr./Don R. LeDuc/Bill Loving, *Law of Mass Communications Freedom and Control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Ninth Ed.),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8.

Eric Barendt/Laurence Lustgarten/Kenneth Norrie/Hugh Stephenson, *Libel and the Media-The Chilling Effect*, Clarendon Press · Oxford, 1997.

T. Barton Carter · Marc A. Franklin · Jay B. Wright, *The First Amendment and the Fourth Estate* (The Law of Mass Media, 7th Ed.), The Foundation Press, Inc., 1997.

五十嵐 清, 『人格權論』, 一粒社, 1989.

竹田 稔, 『名譽・プライバシー侵害に關する民事訴訟の研究』, 酒井書店 1983.

岡村久道 외 1, 『인터넷의法律實務』, 新日本法規 1999

平野 晋, “사이버스페이스法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裁判管轄權(1)~(9)”, 國際商事法務25卷8號~26卷12號.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 기사사전열람을 통한 미국 언론의 명예훼손소송 대책-

I. 서론

미국의 언론인이나 언론사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해 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십중팔구는 명예훼손소송이라고 답할 것이다.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가장 오래된 소송 사유이며 아직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빈번한 위험이 되고 있다. 명예훼손은 전문 언론인들에게 분명 직업상에서 오는 위험 요소라고 하겠다. 명예훼손소송의 70%가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3분의 2가 신문사와 관련된 것이다."¹⁾

물론 최근 10년 동안에 걸쳐 미국 연방대법원의 *Cohen v. Cowles Media co.*²⁾ 판결을 비롯해 언론소송 판결의 경향이 기사의 내용보다는 기사 취재 방법의 법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뉴스 취재과정의 법적 문제점이 기사 내용의 진실, 허위 여부보다 더욱 소송의 주요 관심사로 1990년대에 부각된 것이다.³⁾ 그러나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인의 다수는 여전히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다.⁴⁾ 예컨대 1998년에 제기된 언론사를 상대로 한 490건의 소송을

염규호

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크롱카이트 신문방송대학 언론법 교수

- ☐ 미 남일리노이 대학(Ph. D.),
예일대 법대(M.S.L.)
- ☐ 미 신문학회(AEJMC) 및 국제언론
학회(ICA) 언론법회장 역임
- ☐ "The '60 Minutes' Controversy :
What Lawyers Are Telling Television
Newsrooms" 외 다수
- ☐ 현 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크롱카이트 신문방송대학
언론법 주임 교수

1) kyu ho youm, "libel: The Plaintiff's case", in *Communication and the law*(W. Wat Hopkins ed., 2002 ed, in press).

2) 501 U.S 663 (1991)

3) See Jane E. Kirtley, "It's the Process, Stupid : Newsgathering Is the New Target", *Columbia Journalism Review*, September/October 2000, pp.47-48.

4) Sandra S. Baron, "Libel : Old concerns renewed", *Columbia Journalism Review*, September/October 2000, p.55.

조사한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LDRC)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송 사건 가운데 거의 67%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기사 취재와 관계된 것은 비록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4.9%에 불과하였다.⁵⁾ 결국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들이 언론인의 주요 고민이며 관심거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미국 언론 변호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의 방지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매우 높은 경제적·시간적인 투자를 강요한다. Gallaudet 대학교 언론법 교수 Paul Siegel은 "명예훼손소송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심원의 손해배상 평결이 더 이상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비록 피고 언론사가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해도 - 적어도 항소심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러하다 - 필요한 소송비용과 이미 보도된 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사를 아예 보도하지 않으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명예훼손소송 등으로 인한 미국 언론의 위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이른바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리고 출판사에게 통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1987년 Lois G. Forer 판사는 '방어 저널리

즘'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변호사가 심사하는 것으로 언론사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송에 의한 비용을 줄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⁷⁾

"preventative counseling"이라고도 하는 방어 저널리즘은 한마디로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한 기사로 인한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가 극단의 경우에는 아예 그 기사를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변호사들이 언론사의 기사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어 저널리즘이 미국 언론사의 현실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명예훼손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한 방안으로 이용되었다. 즉 1920년대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명예훼손 검열 전문 변호사를 앞다투어 이용했다.⁹⁾

변호사들에 의한 기사사전검열이 언론사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단편적인 상황에 대한 기술만이 있을 뿐이지만 기자의 시각과 구분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 저널리즘의 유용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30년대 초에 보스턴과 워싱턴에 있는 각 두 개의 신문사가 '엄격한' 사전 명예훼손방지 체제를 도입한 후 명예훼손소송사건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다.¹⁰⁾ 보다 최근의 예로는 뉴욕 Daily News를 들 수 있다. 1995년 Eve Burton 변호사를 기자실 상근 책임자로 고용했을 때 Daily News신문은 20여 건이 넘는 명예훼손사건에 휘말려 있었다. Burton 변호

5) Id.

6) Paul Siegel, *Communication Law in America* 83 (2002).

7) Lois G. Forer, *A Chilling Effect: The Mounting Threat of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Actions to the First Amendment* 31 (1987).

8) Rodeny A. Smolla, *Law of Defamation* §13:5, at 13-4(2d ed. 2001).

9) Norman L. Rosenberg, *Protecting the Best Men* 225 (1986).

10) Id.

사의 임무는 기자들과 함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사 편집과정에 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¹¹⁾ 그 결과, 1년도 안되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비용이 거의 전무할 정도가 되었다.¹²⁾ 변호사들에 의한 기사사전열람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면에서는 보다 많은 미국의 언론사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점점 생활화하는 동기가 되었다.

미국의 TV방송 보도국장을 상대로 실시한 1998년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사전열람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한 보도국장의 87%가 1년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기사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1998년 통계는 변호사 상담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보도국장의 19%는 매년 평균 20회 이상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이래 7% 증가한 수치이다.”¹³⁾

변호사의 적극적인 기사편집 참여를 골자로 하는 기사사전열람이 미국의 언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실 명예훼손소송으로(특히 공인에 의한) 자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의 언론사들도 소위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하나로 변호사에 의한 기사내용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언론변호사인 David Price는 “기사사전열람은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아마도 가장 경시되는 부분”이라고 최근 주장했다.¹⁴⁾ 명예훼손법이나 언론법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기사사전열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¹⁵⁾

본 논문에서는 미국 언론사들이 이용하는 변호사 기사사전열람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저널리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사전에 어떻게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위험을 줄이거나 제어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변호사 등의 편집관여의 한계 설정과 기사열람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은 어떠한 지도 알아본다. 한편 기사사전열람에 있어 취재과정의 법률적인 문제, 즉 위장취재나 정보청구권 등에 관한 사안에 있어 변호사의 관여도 중요성을 가지나 본 논문의 주요 논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법적 한도 내에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언론 변호사들의 기사 검토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데 있다. 참고로 부기한다면 Copley Press 언론사의 수석변호사인 Harold W. Fuson의 표현대로 기사사전열람에 대한 글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에 대해서 언론변호사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지만 사전에 기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그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흔히 회

- 11) Geanne Rosenberg, “A Newsroom Lawyer’s Life : Passion and Prevention”, *Columbia Journalism Review*, September/October 2000, p.43.
- 12) *Id.*(quoting Arthur Browne).
- 13) Paul D. Driscoll et al., “legal Concerns in TV Newsrooms: A National Survey of local Television News Director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Baltimore, Md., August 1998), p.11.
- 14) David Price, *Defamation : law, procedure and procedure* 377(2001)
- 15) See *id.* at 377-88; Simon Gallant & Jennifer Epworth, *Media Law: A Practical Guide to Managing Publication Risks* 317-63(2001).

의 등의 발표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설로써만 논할 뿐이다. 방법론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쓴다면 결국 기사취급의 주의 기준을 다루게 되어 본의 아니게 (재판과정에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미 언론변호사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¹⁶⁾

II. 변호사의 기사사전열람 : 목적과 배경 그리고 변호사와 기자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사전열람의 가치는 분명하다.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쌍방, 특히 언론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반적인 고객상담과 같이 기사사전열람은 수학공식이나 예술이다. 아마도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실험하는 것이 쉽다”고 한 Robert D. Sack 등 미국 언론법 변호사들의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⁷⁾ 한편 이 말의 숨은 의미는 기사열람을 직접 담당하는 미국의 변호사들조차도 대부분 방어저널리즘이 진정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물론 이 같은 의문은 주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기

사를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은 모든 상황에 통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신문사나 방송사가 처한 여건이나 보도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에 따라서 다양한 기사열람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저명한 미국 언론변호사 Bruce W. Sanford의 말은 당연하다.¹⁸⁾

변호사 기사열람의 목적은 그 방법의 다양함과 별도로 “사전열람 대상 기사가 소송의 불씨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수용자에게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⁹⁾ 이 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충고이지 검열이 아니다”라는 운영의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인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지, 변호사의 권한이 아니다. 즉 변호사가 취재 기자나 기사 작성자 그리고 편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기사열람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다. 기사화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소송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변호사의 기사열람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²⁰⁾ 그렇지만 언론사로 하여금 기사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을 알려주고 소송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 줌으로써 편집장이나 발행인이 기사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16) E-mail to the author from Harold W. Fuson, Jr. (July 3, 2001).

17) Robert D. Sack et al., “Libel and Invasion of Privacy: counseling in the newsroo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forum of the America Bar Association’s Forum Committee on Communications law, Los Angeles, Calif., March 1983), p.7

18)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3.2, at 50 (2d ed. 2001)

19) Sack et al., *Supra* note 17, at 7.

20) *Id.* at 8.

있도록 하는 데 기사검토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²¹⁾

기사사전열람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누구일까? 어떠한 자격과 능력(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이 요구되고 있는가? 단순한 법률적 지식은 필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기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언론사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려면 소송의 위험성이 있는 기사라는 결론적인 선언이나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그 책임은 변호사와 무관하다는 태도는 아무 소용도 없다. 소송위험에 대한 “확실한 분석”에는 그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결국 분명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별 상관없이 기사 게재를 찬성해서도 안되며, 언론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기사의 축소 혹은 게재 불가를 조언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언론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법률용어를 사용하여 기사열람에 임해서도 안된다.²²⁾ 기사사전열람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변호사라면 “기사 게재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고객 언론사에게 사실대로 조언하고, 보도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경우, 특히 언론사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충고해야할 상황에서도 꺾끗이 침착하게 자기 입장을 견지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Price 변호사는 밝히고 있다.²³⁾

변호사의 개인적인 품격과는 별도로 기사사전열람에 있어 변호사의 법적 그리고 법률외적인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비록 기사사전열람이 “창조적인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법이라는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기사사전열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사의 명예훼손 유무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훼손의 적법성도 인지해서 알려줘야 한다.²⁴⁾

법률적인 지식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인물이 기사에 적·간접적으로 언급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소한 비난에도 습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인물인지를 파악하여 기사사전열람에 활용해야한다. 이는 기사게재에 관련한 소송의 위험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사 사전열람 과정에서 변호사만이 모든 것을 맡아 하는 것은 아니며, 편집자와 기자 등이 필연적으로 함께 관여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언론사의 구조와 운영 특히 뉴스 취재와 편집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에 필수적이다. Copley Press 회사의 수석 법률고문 Harold Fuson 씨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뉴스 보도나 편집에 관한 기본 교과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 것을 권한다. 비록 변호사와 편집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거의 모든 저널리즘 전공 대학생들은 언론법을 수강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뉴스 취재와 편집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²⁵⁾

변호사의 뉴스 보도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에 맞물려 신문편집자나 방송의 보도국장 등

21) *Id.*

22) Price, *Supra* note 14, at 378-79.

23) *Id.* at 379.

24) *Id.*

25) Harold W. Fuson, Jr., “Reflections on the Lesser Art of Pre-Publication Review”, in *First Amendment and Libel* 196(1983).

언론인들은 변호사에게 언론사의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 즉 보도 마감시간은 언제인지, 기사편집, 헤드라인 등의 편집, 기사선택과 위치 그리고 기자와 편집자의 책임과 업무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보도부 직원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기사사전열람에 도움이 된다.²⁶⁾

뉴스편집자와 함께 일하는 편집실 직원은 어느 면에서는 기사사전열람의 핵심에 있다고 하겠다. 명예훼손법을 완전히 숙지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할 정도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²⁷⁾ 즉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 가를 알아야한다. 변호사가 직접 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은 기사사전열람에는 제한되어있다. 기사사전열람은 해당 기사가 이미 편집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기사사전열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1989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기 전에 변호사가 모든 기사를 열람하는 경우는 드물다. 언론보협회의 요구를 받고 기사를 열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2개의 월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쇼가 이에 해당한다.²⁸⁾ 다른 뉴스미디어의 경우, 특별한 칼럼이나 특별기획물, 탐사보도는 거의 모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 “그러나 과반수의 뉴스언론사, 특히 일간 신문사에서는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부탁

받은 기사에 한해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을 뿐이다.”²⁹⁾ 기사열람은 대부분 기사가 작성된 후나 편집이 끝난 경우에 행해진다. 취재 문제나 중대한 기사나 탐사보도 혹은 소송위험을 받고 있는 기사에는 종종 보다 일찍 사전검토가 진행된다. 그리고 TV방송의 경우 기사내용의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매우 막대하므로 신문기사보다 전 단계에서 기사열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별 탐색보도 기획물과 관련되면 방송국의 변호사들은 “사전에 제반 취재 기본원칙을 정하고 뉴스취재 방법에 조언을 주고 아예 취재를 나가기 전에 사전 취재계획을 승인하거나 복잡한 기사의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기를 요구하고 있다.”³⁰⁾

언론사의 상근 변호사가 기사사전열람을 전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다. 주요 일간신문이나 주간지 그리고 TV네트워크에 국한되고 있다.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Wall Street Journal, Time, Newsweek, U.S News & World Report, New Yorker Magazine, Miami Herald, CBS, ABC, NBC, CNN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현실이 그 이유라고 하겠다. 대부분 필요에 따라 변호사에게 기사열람을 요구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 언론사의 상근 변호사와 계약제 외부변호사의 기사열람에 대한 접근은 상이하다. 상근 내부 변호사는 보도국과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고 수시로 보도기자실이나 방송뉴스스튜디오와 편집실에 가서 상황에 따라 조언을 해주기도

26) Sanford, *supra* note 18, § 3.3.1, at 52.

27) *Id.* § 3.3.3, at 58.

28) Susan P. Shapiro, “Libel Lawyers as risk Counselors : Pre-Publication and Pre-broadcast Review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news”, 11 *Law & Policy* 288 (1989).

29) *Id.*

30) *Id.* at 288-89

한다. 그러나 외부 변호사의 경우 컴퓨터로 연락을 하거나 주당 한 두 번 언론사에 들를 뿐이다. 사안이 복잡한 기사에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³¹⁾

III. 변호사의 기사사전열람 : 기사 내용에 있어 법적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할 것인가?

언론사마다 각기 다양한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자나 시청자에게 어떠한 기사를 전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상황, 모든 언론매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사사전열람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나 시간 그리고 언론 경영자의 철학과 언론 자유의 원리, 책임에 대한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NBC News사장이었던 Michael Gartner는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 경영에 값비싼 투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취재비나 신문용지와 같이 통상적인 뉴스보도상의 지출이라고 본다. 그것은 뉴스취재 운영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³²⁾

Gartner에 의하면 언론사내에 상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외부계약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 보다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기자나

편집인이 법적인 지침이 필요할 때마다 경영자는 어느 정도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³³⁾

미국 변호사의 기사사전열람과정에 언론사의 실무책임자는 주로 기자가 쓴 기사를 직접 다루고 고치며 사실 확인도 하는 편집(editing)을 맡은 자이다. 특히 일간 신문사의 경우 사내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는가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기사를 모두 읽어볼 수는 없다. 결국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기사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문의 연락을 취할 책임은 편집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³⁴⁾ 그렇다면 언제 편집자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언론사의 책임있는 편집인이라면 경험과 육감에 의해서 잠재적인 문제의 기사를 알아보며 그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지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호사의 개입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그의 법률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접 편집장과 기사를 함께 읽고 분석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가르쳐줄 수도 있다.³⁵⁾ 기자가 아닌 편집자가 주로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은 변호사의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 것도 있지만 편집자의 위치상 기자보다 기사에 어느 정도의 주의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

31) *Id.* at 289.

32) Neil Hickey, “The Lawyers: How They Can help us, How They can Hurt us”, *Columbia Journalism Review*, September/October 2000, p.42.(quoting Michael Gartner)

33) *Id.*

34) Sanford, *supra* note 18, §3.5.1, at 62.

35) Fuson, Jr., *supra* note 25, at 185

기 때문이다.³⁶⁾

편집자로부터 기사열람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 외에 편집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연락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Fuson변호사의 4가지 지적을 언급해 보자.

첫째, 언론인들은 항상 마감시간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 아니 기다릴 수 있다고 편집자가 말하더라도 즉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이용해라. 편집자는 기사를 3번 읽도록 훈련받고 있다. 변호사도 그래야 한다. 사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할 뉴스기사는 거의 없다.”³⁷⁾ 둘째, 변호사는 편집자가 기사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면 “항상 왜 기사를 보냈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라. 비록 이유가 분명한 것 같지만 편집자는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흔히 편집자는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기사의 일부, 가끔은 한 문장만 물어보고 싶어한다. … 그러나 언제나 기사 전체를 읽어야 한다.”³⁸⁾ 한마디로 편집자로부터 오는 “불완전한 정보”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Fuson변호사가 언급한 시간적 제약과 정보의 불완전성은 변호사와 편집자간의 객관적인 기사열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한 것이다. 한편 후술하는 나머지 두 가지 점은 미국 변호사의 기사 사전심의가 반드시 법적인 문제에 대해 편집자, 기자 혹은 발행인이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님을 예리하게 밝

히고 있다. 즉 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아니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있을 가능성을 변호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Fuson의 세 번째 지적은 편집자와 기자와의 역학관계에 변호사의 권위,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편집자들이 어떤 특정 기사를 게재하고 싶지 않을 때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게재불가”라고 말하고 싶은 편집자는 없다.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나쁜 소식을 떠맡기고 싶어 법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 기사에 변호사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편집자가 게재를 하고 싶지 않은 기사에 대한 이유를 결코 찾을 수 없을 때 변호사에게 그 기사를 보내기도 한다. 혹시나 법적인 이유를 주기를 희망하면서 편집자는 ‘변호사가 No 라고 말했다’며 고집부리는 기자에게 단언적으로 큰소리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다.”³⁹⁾ Fuson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탁받은 기사의 분석내용을 직접 기자에게 전하라고 충고한다.

세 번째의 상황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의 경우는 편집자로서 기사를 내고 싶으나 신문 발행인이나 방송국 사장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편집자로서는 “하지만 변호사들이 그 기사가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우에 Fuson은 편집자들에게 “이보시오. 나는 단지 그 기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뿐이었오… 그 기사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오.”라고 언급하라고 조언한다.⁴⁰⁾

사전열람 대상 기사를 받고 난 다음 기사의

36) Sanford, *supra* note 18, 3.5.1, at 62

37) Fuson, Jr., *supra* note 25, at 185

38) *Id.* at 186.

39) *Id.*

40) *Id.*

법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집중적인 기사의 정독에서 시작된다. 우선 나름대로 변호사는 언제까지 기사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내리겠다는 시간을 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편집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언론 기사의 신속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관계자에게 중요한 요건이다. 기사를 받은 변호사의 첫 번째 일은 우선 기사를 정독, 숙독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읽어야 한다고 Fuson 변호사는 전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많은 것을 옆두에 두어야 한다. 기사의 문제점을 기억해 뒤야 하겠지만 그것을 기사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그 기사를 다시 한 번 읽는다면 이번에는 처음에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대부분 골치거리가 아님을 알게된다. 그 후 여전히 마음에 걸리면 바로 이것들을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⁴¹⁾ 기사를 읽고 문제된 부분을 표시하는 과정을 편집자와 함께 할 것인가 혹은 변호사 혼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 Fuson은 “편집자가 없는 곳에서 변호사 혼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일단 읽고 기사에 표시하면서 재독한 후에는 편집자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기사를 검토하라고 Fuson 변호사는 전한다.⁴²⁾

기사를 검토하면서 변호사는 편집자에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답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변호사가 유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이 왜 누락되었는지, 특정의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는지, 누가 이 사실을 전해줬

는지, 녹음은 했지, 인터뷰할 당시에 당사자 외에 동석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유도 질문을 통해 변호사는 편집자의 반응 혹은 설명을 들으면서 기사가 어떠한 취재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⁴³⁾

기사사전열람에 있어서 미국의 언론변호사들은 4단계 질문을 각 기사에 관련지어 봄으로써 법률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적인가?, 2)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잠재적인 원고는 누구인가?, 3) 해당 기사가 보호받을 정당성이 있는가?, 4)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가?”⁴⁴⁾

이 4단계 방법은 보다 세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기사가 명예를 정말로 해칠 수 있는 표현인가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갈 기사의 실제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을 점검한 다음에 그 기사에 허위 사실의 언명(statement of fact)과 진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인가 혹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언명인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의견이나 사실의 언명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타의 명예훼손적이면서도 밝힐 수 있는 사실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느냐”도 미리 알아야 한다.⁴⁵⁾ 그리고 문제의 기사속의 언명이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면 “그 설명이나 암시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⁴⁶⁾

미국의 언론법에서 특히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관련법에서 원고의 지위나 신분의 영

41) *Id.* at 187.

42) *Id.*

43) *Id.* at 187-88

44) Sanford, *supra* note 18, §3.7, at 94.2.

45) *Id.* §3.7.1, at 94.2.

46) *Id.* §3.7.1, at 94.3.

향은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잠재적인 원고의 공인, 사인 여부는 소송의 승패 그리고 주의의무 기준 등에 절대적인 관련을 갖는다. 공인이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그리고 사인인 경우에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과실(negligence)을 손해배상의 증거요구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⁴⁷⁾ 그리고 원고의 신분 에 따른 언론사의 주의기준(standard of care)에 관련해서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actual injury)를 예비적으로 추정해야 한다.⁴⁸⁾

기사가 보호받을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권적인(privileged)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 상에서 이미 확립된(주법이나 연방헌법상) 여러 가지 면책여건과 “현질적 악의” 등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기사 심사를 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 소송사유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독립적인 청구원인으로써 제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⁴⁹⁾ 명예훼손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비해 프라이버시법은 각 주법이 상이하므로 어느 주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뉴스미디어의 융합은 기사사전검열을 하는 변호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1. 기사의 명예훼손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사사전검열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심의대상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물론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한다. 이는 미국헌법상 명예훼손적인 기사에 대해 추정적인 허위는 결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⁵⁰⁾ 그러나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적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고 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Oliver Wendell Holmes Jr.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은 바로 이 점을 명쾌히 지적하고 있다.

“단어란 투명하고 변하지 않는 수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고의 피부이며 사용되는 여건과 시간에 따라서 그 색깔과 내용이 매우 크게 변한다.”⁵¹⁾

그렇다고 해도 몇몇 단어들은 사회적·법적으로 (판례 등을 통해서) ‘적신평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적인 표현이므로 기사열람 변호사는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정직성이나 성생활에 대한 비난 그리고 고약한 징벌,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 등은 경계 대상이다. 이러한 위험단어를 기사에서 보게되면 변호사는 편집자나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 질문을 해야 한다. “(1)이 표현이 진정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를 정당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⁵²⁾ “적신평 단어”가 아니라

47)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fault standards of “actual malice” and negligence in U.S. defamation law, see kyu ho youn, “The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and Foreign Libel law : U.S. Courts Refuse to Enforce English Libel Judgments”, 4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137-38(2000).

48) Sanford, *supra* note 18, §3.7.2, at 94.3

49) Sack et al., *supra* note 17, at 18.

50) Youn, *supra* note 1.

51) *Towner v. Eisner*, 245 U.S. 418, 425 (1918)

52) Sack et al., *supra* note 17, at 38.

고 해도 그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의를 요한다. 즉 “문서는 시사하고 있다(documents indicate)”라는 내용의 표현이라면 그 문서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처럼 나타나고 있다(it appears)”도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변호사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⁵³⁾

단어 자체의 명예훼손적인 성격을 떠나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어 예기치 않은 법적 소송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이 있다. 문제 기사의 표적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원인은 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있다. 결국 이에 대한 기사열람 변호사의 역할은 “편집자로 하여금 그러한 상세한 정보가 정말 기사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거하도록 강하게 조언”하는 것이다.⁵⁴⁾

뉴스기사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은 어느 면에서는 해당 기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면 많은 이름을 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사를 접하는 뉴스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명예훼손법을 염두에 두면서 기사열람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경계할 사항이다. “범죄나 문제가 있는 사업거래에 관한 기사에서는 성명을 적게 적시할수록 좋다. 적어도 명예훼손법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이 있다면 항상 특정 이름이 기사에 포함되어야할 정도로 중요한지를 편집자에게 물어보라”고 Fuson변호

사는 충고한다.⁵⁵⁾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심의에 있어서 과장된 기사 내용, 잘못된 헤드라인이나 첫 문장(lead)은 특히 각별한 신경을 요한다. 이것은 사진을 설명하는 커트라인(cutline)도 마찬가지이다. 제한된 공간에 맞게 헤드라인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인 골치를 일으키는 단어 놀이를 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편집자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 직접 해당 기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⁵⁶⁾

사진 설명과는 별도로 사진을 잘못 게재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특히 피촬영자에 대한 허위의 인상을 전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유가 된다. 현재 미국 제2순회 연방고등법원의 판사이며 과거 저명한 언론변호사였던 Robert D. Sack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언론 변호사는 고객과 함께 게재되는 사진의 취사선택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고객은 그 사진을 이용할 권리와 함께 촬영자나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한편 기사취재 중에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의 파일이나 혹은 제3자로부터 구입, 획득한 사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⁵⁷⁾

2. 잠재적인 명예훼손소송의 원고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할 것인가?

기사사전열람에서 기사 내용의 명예훼손

53) *Id.* at 39.

54) Fuson, *supra* note 25, at 190.

55) *Id.* at 191.

56) *Id.*

57) Sack et al., *supra* note 17, at 43.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알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다. 물론 최대한 기사를 통해 잠재적인 원고의 소송제기 가능성을 줄이거나 그 잠재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변호사는 고려할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원고의 개인적인 여건과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요소에 포함하기도 한다. 즉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의 배경에 대한 지식은 소송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상징적인 정보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를 판단하는 경우, 잠재적인 원고의 이름이 반드시 기사에 언급될 필요성을 요하지 않는 미국 명예훼손법의 기본원칙을 엄두에 두고 기사사전열람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기사의 문맥을 통해서 독자가 원고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기사에 언급된 인물에 대한 주변 정보와 관련된 문맥을 어떻게 분석 심의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한편 집단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그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명예훼손소송의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소집단의 명예훼손에 보다 주의 깊은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은 비록 1964년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⁵⁸⁾ 판결을 통해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주법에 의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주의 법이 적용될 것인가는 원고의 거주 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언론 변호사들은 잠재적인 원고의 거주지를 가능하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점차 세계화되는 미국 언론의 추세에 비추어 미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와 관련된 기사에 변호사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U.S. News & World Report*지의 고문변호사인 C. Thomas Dienes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가 우리 잡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⁹⁾ 이 같은 우려는 미국 언론사를 상대로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장된 것은 아니다.⁶⁰⁾

한편 인터넷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의 사전심의 역할은 더욱 복잡다기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예로 Yahoo! 회사가 프랑스에서 소송에 연루되어 프랑스법원으로부터 프랑스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현재 미 연방지방법원에 그 판결에 대한 집행 중지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⁶¹⁾ 비록 명예훼손이 직접 문제된 경우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인터넷 통신에 대한 외국 법의 직접적인 제약의 한 사례라고 하겠다.

잠재적인 원고의 신원 확인과 더불어 원고의 신분이 공인인지 사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취재·보도 행위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사열람을 하는 변호사는 원고의 신분에 대한 평가가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변

58) 376 U.S. 254 (1964).

59) C. Thomas Dienes, “Libel Reform : An Appraisal”, 23 *Journal of Law Reform* 1 (1989)

60) See Kyu Ho Youm, “Suing American Media in Foreign Courts : Doing an End-Run Around U.S. Libel Law”, 16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237 (1994).

61) See *Yahoo! Inc. v. La Ligue Contre Le Racisme*, 29 *Media L. Rep.* (BNA) 2008 (N.D. Calif 2001)

호사는 기사의 주제 인물의 배경 외에 일반 세인의 이목의 대상이 얼마동안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공적인 분쟁에 해당 인물이 자발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⁶²⁾

기사의 내용과는 별개로 잠재적인 원고의 개인적인 인물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의 위험성의 정도와 배상책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익하다. Sack 등이 제시하는 4가지 시각으로 변호사는 그 원고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예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한다. 드문 경우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실추된 경우라면 명예훼손법의 보호가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libel-proof)”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으며 각 주마다 그러한 보호할만한 명예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예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⁶³⁾

둘째, 언론사와 잠재적인 원고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과거에 언론사로 부터 호의적인 기사내용의 대상이었다면 그 언론사와의 관계를 가능하면 해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사소한 오류로 인한 소송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잠재적인 원고와 언론사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여건이 주어지면 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높

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⁶⁴⁾

셋째, 잠재적인 원고가 어느 정도 취재과정에 관여했는가를 변호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자에게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입장이 잘 전달되었다고 만족할 수도 있다. 반면 답변이나 반박의 기회를 제외받고 기사의 모든 내용을 완강히 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사의 사실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⁶⁵⁾

넷째, 원고가 특별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소송의 위협을 받았다면 그 기사의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관계적인 적절한 주의 이상을 하거나 인권을 위해 기사내용을 변경하라는 의미는 아니다.”⁶⁶⁾

잠재적인 원고를 파악하는 범위가 오직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인물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인물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해야하는 책임을 변호사는 지니고 있다.⁶⁷⁾ 여기에 예기치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3.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떠한

방어책을 세우고 보도하도록 할 것인가?

기사사전열람을 하는 변호사의 종국적인 목

62) Sack et al., *supra* note 17, at 25.

63) See Kyu Ho Youm, “The ‘Libel-Proof’ Doctrine as a libel defense”, 12 *Newspaper Research Journal* 46-63 (Winter 1991).

64) Sack et al., *supra* note 17, at 26

65) *Id.* at 26-27

66) *Id.* at 27.

67) *Id.*

적은 소송의 사유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기사를 접하면 변호사는 사안이 언론자유와 범주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즉 문제의 기사가 명예훼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보도과정과 물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법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면책되는 것은 기사가 진실(truth)이거나, 공정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 혹은 공평한 논평(fair comment and criticism)에 해당되거나 미 연방헌법상에서 요구하는 과실기준(‘현실적 악의’나 주의태만(negligence))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같은 입법원칙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기사 열람업무는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언급된 사실의 취재원(source)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어떤 법적 방어를 펼치는가와 관계없이 미국 변호사들은 “증거에 입각한 심의(evidentiary review)”를 중심으로 기사사전열람을 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적인 요인을 발견하면 기사내용의 허위성과 취재보도와 관련된 과실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Fuson 변호사는 기사사전열람과 관련하여 취재보도상 과실에서 생기는 기사의 오류를 방지하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자의 정보는 신뢰할만한가, 정보원이 신뢰할만한 경력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정보가 확인된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정보내용의 증명이 어렵다면 여타 정보는 증명이 되는가, 혹은 일관성이 결여된 의심스러운 정보인가, 비밀관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등이다.⁶⁸⁾

기록문서에 의한 보도 문제에 대해 Fuson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서에 담고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 관련 문서를 직접 확인했는가, 문서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가,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메모를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했는가 혹은 단지 기억력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했는가, 문서의 복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후에 그 문서의 내용 입증이 문제되었을 때 문서가 안전한 장소에 있으며 접근이 용이한가, 그 문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서의 내용에 근거한 기사인가, 정보원은 그 문서를 직접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제3자가 언급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것인가”⁶⁹⁾

또한 뉴스정보원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혹은 개인적인 의도의 유무를 Fu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증거에 입각한 기사열람이 대부분 정보의 출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있음에 비취볼 때,⁷⁰⁾ 명예훼손소송의 위험을 확인함에 있어 정보 출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기사 내용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정보 출처가 얼마나 되는가? (2) 그 출처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 제공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가? 전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기자의 표적인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가? (3) 만일 소송에 연루된다면 그 정보원들이 변론에 나설 수 있는가?”⁷¹⁾

미국 변호사들은 뉴스 정보원의 익명성에 따른 명예훼손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특히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소식통에 의하면(sources said...)” 혹은 “익명을 전제로 한(on condition of anonymity)” 등의 출처 인용

68) Harold W. Fuson, Jr., *Telling It All : A Legal Guide to the Exercise of Free Speech* 26 (1995).

69) *Id.*

70) Shapiro, *supra* note 28, at 292.

71) Sack et al., *supra* note 17, at 31.

에 대해 변호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자 혹은 편집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정보원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의 익명을 정보원에게 약속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어야 한다. Fuson 변호사의 불필요한 익명 보도경향에 대한 따끔한 지적은 분명 미국 기자들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는 그의 충고를 상세히 옮겨본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인용기사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익명 약속을 하지 않았다. 기자가 그냥 ‘소식통’이라는 인용 출처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기자가 너무 게을러서 정보원의 이름을 표기할 수가 없거나 혹은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보원과의 관계가 발전되리라고 하는 기자의 막연한 생각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우리는 (기자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 (1)정보원을 밝히거나 인용 출처를 아예 없앨 것, 아니면 (2)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정보원에게 다시 가서 만일 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정보원의 신원을 밝혀도 좋다는 동의를 구한다.”⁷²⁾

익명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원의 신원을 익명처리할 것을 약속하여 밝히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그 정보원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⁷³⁾ 결국 기사를 심의하는 변호사는 익명 정보원을 이용하지 않고 기사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면, Fuson의 해결방안은 기사게재 불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정보원의 신원을 결코 밝혀서는

안되고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기사에 진요하며 다른 출처를 통해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그 기사가 소송에 연루된다면 법적 방어가 용이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상적인 취재와 편집이 이루어진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을 표기하여 인용한 경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⁷⁴⁾

뉴스 보도 과정에서 취재 정보원의 신뢰성 등에 변호사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기자의 취재 능력이나 객관적인 태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과실 기준’ 평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다. 기자에 관해서는 언론사의 정규 직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여부, 정규 기자라면 경력은 어느 정도이며 프리랜서인 경우 과거에 기고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기사를 취재, 준비하는 자세가 “주의 깊고 철저하다”고 평가받는 기자인가 또는 취재 대상이 된 인물이나 회사 단체 등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⁷⁵⁾

IV. 결론 및 요약

미국 변호사들의 기사사전열람이 일종의 기사검열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사사전열람에 직접 관여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언론사에 미치는

72) Fuson, *supra* note 25, at 188-89

73) Smolla, *supra* note 8, 12:66, at 12-57(citations omitted).

74) Fuson, *supra* note 25, at 189.

75) Sack et, al., *supra* note 17, at 32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비록 변호사의 조언이 기사내용을 다소 무미 건조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할지라도 변호사의 기사사전열람은 기사의 허점을 줄이고, 기사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증거에 입각하여 자극적이지 않은 기사내용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⁷⁶⁾ 기사사전열람이 언론에게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변호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기사 심의를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검열관인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파수병적 조언자인가라는 끊이지 않는 갈등이 변호사의 역할을 반증하는 것이다. 언론사의 모든 기사의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나머지 기사를 가능하면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사사전열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방 상담”이라고 하는 기사사전열람은 미국 언론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사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언론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를 갖고서 “법적인 충고와 언론에 입각한 판단사이에서의 불명확한 선”을 명심하는 것이다.⁷⁷⁾

Sullivan판결이후 미국 언론의 자유는 기자나 편집인에 의한 “자기검열”(self-censorship)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에 의한 검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Texas 법과대학 David A.

Andersn 교수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⁷⁸⁾ 왜냐하면 기사 심의를 하는 변호사의 충고나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기사의 게재나 방송 여부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은 경우에 따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의 이상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를 고용한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이것은 반드시 언론 정보의 자유와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같은 변호사의 역할 갈등에 있어서, 기자의 기사게재에 대한 요구와 언론사 고용주의 이익이 상충될 때 변호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상황은 미국 언론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Anderson교수는 지적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기사사전열람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기자와의 관계가 대치가 아니라 상호 협조의 동반자적인 것이어야 한다.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 존경을 바탕으로 한 분위기 속에서 이성적 냉철함으로 기사사전열람에 임해 올바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 등 언론인들이 능동적인 열린 마음을 갖고 기사열람의 필요성과 언론자유 한계에 대한 현실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 언론변호사들에게 있어 기사사전열람에 대한 일률적인 공식은 없다. 기자의 성격과 언론사가 추구하는 보도의 철학 그리고 명예훼손의 위협에 대한 제반대책에 크게 영

76) Shapiro, *supra* note 28, at 298.

77) Joseph A. Russomanno & Kyu Ho Youm, “The 60 Minutes Controversy : What Lawyres Are Telling the News Media”, 18 *Communications and the law* 66 (september 1996) (Citation omitted).

78) David A. Anderson, “Libel and Press self Censorship”, 53 *Texas Law Review* 438 (1975). For a Discussion of the U.K. experience with pre-publication or pre-broadcasting review and its impact on the news media of Great Britain, see Eric Barendt et, al., *Libel and the Media : The Chilling Effect* 68-7 (1997)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반 원론적인 규칙(rule)을 경험에 의해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기사를 심의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사항은 우선 기사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어나 문단의 전달 그리고 인용내용, 불확실한 사실의 주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암시적인 의미가 명예훼손적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당사자가 누구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사에 직접 이름이 이나 단체명, 회사명이 적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언급된 경우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명예훼손 주장의 근거가 잠정적인 원고와 개별적으로 관련이 되었는지도 주도면밀히 심사해야된다. 복합적이고 집단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각개격파식의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변호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자는 드물다. 위험소재를 발견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고 해도 결국 기사를 안전하게 다듬게 하는 것이다. 기사를 재작성케 하거나 기사문의 구성을 재조정할 수도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를 아예 기사에서 삭제하고 다른 정보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정보원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집중적인 증거심사가 필수불가결하다.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응답의 기회”를 기자가 주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 변호사들은

모든 비판적 기사에 대한 반박을 본인이나 관계 인물들로부터 구해서 기사에 반영할 것을 기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원칙적인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비판 대상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진실임을 알 수도 있다.

미국 변호사들은 문제기사의 심의에서 기자들의 취재과정이 문제되어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에 대비하여 “절차적인 보도(procedural reporting)”를 기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다.⁷⁹⁾ 이 보도방법은 뉴스 기사에 취재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보도내용을 기자가 인지케 된 방법을 공개하고 취재 중에 의문을 품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기자가 취했는지를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의견을 기사에 인용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의견임을 기사 속에서 명확히 하고 “...의 의견에 의하면” 같은 단서를 꼭 첨가할 것을 미국 변호사들은 기자들에게 지시한다. 결국 기자의 주장이 아님을 가능하면 분명히 하고 인용 출처를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사화하고 있다.

물론 취재 대상자에게 논평을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으나 거절했다면 이를 ‘주의 깊게’ 기사에 기록해 둘 것도 미국 변호사들은 충고하고 있다.⁸⁰⁾ 또한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법적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지만, 뉴스 가치가 매우 크고 공적인 관심(matters of public concern)이라면 분쟁의

79) Shapiro, *supra* note 28, at 297.

80) *Id.* at 297-98

관여 당사자들 쌍방의 입장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사실대로 보도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 언론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중립보도특권(neutral reportage doctrine)'에 근거를 둔 것이다.⁸¹⁾

결론적으로 변호사 기사사전열람을 통한 미국의 '방어 저널리즘'은 분명 미국의 독특한 명예훼손법의 운영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의 요건과 절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진실인가 허위의 명예훼손인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문제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관건이 되는 미국법의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 변호사들의 '방어저널리즘'이 주로 뉴스취재 과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것이 이른바 미국 법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다는 오히려 미국 변호사에 의한 '책임언론'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언론의 책임의 구현은 변호사에 의해 정의된, 또는 변호사가 이해하고 있는 명예훼손법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것이 변호사 기사사전열람의 요체라고 하겠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가치를 알고 있는 '훌륭한' 변호사라면 언론 자유의 방해자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방어 저널리즘'의 핵심은 기자 등 언론인의 역할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기자야말로 결국 기사 게재와 방송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안일하게 변호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는 언론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

81) See *Edwards v. National Audubon Society*, 556 F.2d 113 (2d Cir.), cert. denied, 434 U.S. 1002 (1977). For detailed analyses of the "neutral reportage doctrine" as a libel defense in U.S. law, see Kyu Ho Youm, "Ten Years of 'neutral reportage' Doctrine: US Approach to Defamatory Republication", 9 *Journal of Media Law & Practice* 23 (1998); Joseph A. Russomanno & Kyu Ho Youm, "'Neutral Reportage' and Its Second Decade: A Marketplace Perspective", 3 *Communication Law & Policy* 439 (1998).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I. 장지연 유품 속의 '신문지조례'

우리 나라 최초의 언론관계 법률은 1907년 7월 24일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한 '신문지법'이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신문지법'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광무 신문지법'으로 알려져 있고, 학술용어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광무신문지법은 처음 공포될 당시에는 전문이 38조였는데 이듬해인 1908년 4월 20일에 개정하여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되었다. 내용 가운데는 제작을 규제하는 갖가지 금지사항이 나열되어 있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 압수,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된 악법이었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제'를 채택하여 발행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발행이 허가된 신문이라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신문발행이 어렵도록 2중 3중의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무신문지법이 제정, 공포된 것보다 8년 전인 1899년 초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언론법인 '신문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은 채 폐기한 일이 있었다. 신문지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독립신문이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전해오지 않는다. 1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이 법은 제정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 런던대 박사
- ☐ 관훈클럽 사무국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 방송위원회 위원 역임
- ☐ 저서 : 『한국언론사 연구』, 『한국 언론사』, 『한국언론관계 법령 전집』 등 다수
- ☐ 현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문지조례'의 완전한 원문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위암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왔던 서한들과 여러 필사 원고 등의 유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생이 손수 쓴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조례'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신문지조례는 법 제정을 시도했던 당시의 상황을 연구하고, 그 이후의 언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위암 선생이 친필로 필사해 두었던 대한제국 시기 최초로 제정되었던 '신문지조례'의 전문을 소개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던 경과와 그 후에 공포되었던 광무 '신문지법'과 어떤 유사점 또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문지조례 제정의 배경

1. 새로운 일간지의 등장과 열강국의 이권요구

신문지조례의 제정이 처음 제기되던 1898년은 한국 신문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해였다. 이 해에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일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데, 그것도 같은 해에 4개의 일간지가 동시에 나왔던 것이다. 『매일신문』(1898. 4. 9), 『태국신문』(8. 10), 『황성신문』(9. 5)이 같은 해에 새로 창간된 일간지이고, 그때까지는 격일간이던 『독립신문』도 7월 1일부터 일간으로 발행되었다. 일인들이 1895년 2월 17일에 창간했던 『한성신보』도 발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일간지가 같은 때에 나타났던 언론사상 획기적인 변화는 1898년 한 해에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그 전년부터

터 새로운 신문이 나타나는 한편으로는 사라지기도 하는 변화의 연속선상의 중간 년도에 위치한 해로서 그 다음 해에도 신문이 창간되거나 소멸하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계속되었다. 한 해 전인 1897년에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기독교 신문 『조선크리스도인회보』(1897. 2. 2-감리교), 『그리스도신문』(1897. 4. 1-장로교) 2종이 창간되었고, 1899년 1월 22에는 『시사총보』가 창간되었으며, 4월에는 『매일신문』이 폐간되는 대신에 『상무총보』(1899. 4. 14)가 창간되었다. 『시사총보』는 장지연이 주필이었는데, 신문지조례가 제정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장지연은 이 조례의 제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조례를 필사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 발행되던 다른 신문도 모두 이 조례에 관심을 기울였음은 신문의 논설이나 보도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장지연이 필사하여 간직하였다가 이번에 발견된 신문지조례에는 군데군데 붉은 표시를 하여 그가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각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문지조례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1898년은 언론사상 특히 주목할만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일간지의 창간과 함께 또 하나 특기할 현상은 '신문사친목회'라는 언론단체가 처음으로 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숫자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언론단체가 결성된 것이지만 장차 생겨날 많은 언론단체의 효시가 바로 신문사친목회이다.

정치정세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은 우리 나라의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드높아 지고 있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신문들이 이와 같은 정치변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

다. 신문은 열강국들의 이권탈취를 폭로하고 국권수호를 외치면서 무능한 정부를 질책하였다. 열강국들은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던 이권탈취를 신문이 폭로하여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상황에 처하자 대한제국 정부에 신문을 규제하라는 강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조차지 요구를 제일 먼저 보도한 신문은 독립신문이었다. 독립신문은 1898년 2월 19일자 '잡보'란에 러시아가 부산과 목포의 땅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했다. 독립신문은 이어서 2월 22일, 3월 1일, 3월 3일, 3월 5일자에 연달아 정부의 이 문제 처리 상황을 보도했다.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난 뒤인 5월 16일자 『매일신문』과 『한성신보』가 러시아와 프랑스의 새로운 이권요구를 보도하자, 이번에는 외교문제로 일대 파문이 일어났다. 문제가 된 기사는 매일신문 제1면 논설란에 실렸고 한성신보는 같은 날짜 2면 잡보란에 실린 것으로 러시아가 목포와 진남포의 조계지 근방 사방으로 10리를 사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며¹⁾ 프랑스는 평양의 석탄광 하나를 채굴하여 경의선 철도 부설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²⁾

러시아와 프랑스의 요구를 신문이 폭로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협성회 등이 무능한 정부 대신들을 규탄하자 은밀히 이권을 따내려했던 러시아와 프랑스 공사는 그 날짜로 외부에 항의문을 보냈다. 그러나 외세에 저항하는 신문의 논조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두 나라 공사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외부에 항의하면서

신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2. 신문기사에 대한 항의와 신문 규제 입법 논의

러시아공사 마튜닌(N. Matyunin: 馬丟寧)은 5월 16일 매일신문과 한성신보를 첨부한 공문을 외부에 보냈다. 한국의 외부대신이 외교문서가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또 다시 중요한 공문을 누설하였다고 힐책하면서 신문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³⁾

마튜닌은 4월 4일에 새로 부임한 러시아 공사였는데 신문을 규제할 법을 제정하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같은 날 프랑스 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도 항의 공문을 외부에 보내왔다. 외교문서는 타인이나 신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인데 한성신보와 매일신문에 이를 알려준 것은 잘못이며, 정부보조로 설립된 배재학당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외교문서의 기밀을 탐지하여 퍼뜨리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⁴⁾

그 후로도 러시아와 프랑스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서 신문의 기사를 문제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신문을 규제할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⁵⁾

특히 러시아는 매일신문, 독립신문, 데국신문이 보도한 자국관련 기사를 문제삼아 9월까지 여러 차례 항의문을 보내왔고 정부에서는

1) 『구한국외교문서』, 제17권(俄案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559 ; 제19권(法案 1), p.387.

2) 이배용,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 한국연구원, 1984, pp.200-202.

3) 『구한국외교문서』, 제17권, 俄案 1, 「로촉 공문내용이 신문에 누설된 데 대한 항의」, pp.570-571.

4) 『구한국외교문서』, 19권, 法案, 1, 「平壤礦事의 신문발표에 대한 항의」, pp.392-393.

5) 이에 관해서는 『구한국외교문서』, 제 17권, 俄案 1(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p.559-674와 같은 문서 제 19권 法案 1, pp.392-415에 공문의 원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해명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내는 회신을 보내는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신문 기사를 문제삼아 무례한 외교압력을 가해오자 외부대신 서리 유기환(兪箕煥)은 농상공부대신 이도재(李道宰)에게 신문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⁶⁾

유기환은 5월 30일자 조회(제5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문은 인민의 문견(聞見)을 개확(開擴)해야 전국에 이익케 하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이 다만 소문에 의지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외교문서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문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고 은밀(愼密)한 문자를 몰래 베껴 널리 전파(潛寫流轉)하면 잘못된 내용과 사실이 뒤섞일 우려도 있다. 그런데 한성신보와 매일신문이 외교공문을 보도하여 문제가 생겼으며, 또한 매일신문은 러시아 장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항의가 들어왔으니 이를 신문사에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의 허가는 농상공부 소관이니 농상공부가 신문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기환은 신문의 장정(章程)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있을 터인데 농상공부가 신문에 대한 금지조항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사항은 금지시킨[不容不設禁] 다음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문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강력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공문이었다.

이에 대해 농상공부는 6월 3일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농상공부가 두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던 때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규제를 가할 정관(定款)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만 내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내온 신문 4건을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므로 앞으로는 신밀(愼密)한 문자를 잠사유전(潛寫流傳)하는 폐단이 없게 할 뜻으로 두 신문의 사원을 불러 제척(提飭)하였다는 것이다.⁷⁾

III. 신문지조례의 제정

1. 고종의 신문지조례 제정 조치

러시아와 프랑스가 신문 기사를 문제삼아 여러 차례에 걸친 항의를 한 직후인 10월 7일, 이번에는 주한일본공사 가토(加藤增雄)가 주한 외교 사절단의 수반(首班)공사 자격으로 외교문서를 신문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조회를 외부대신 앞으로 보내왔다. 신문이 외교문서를 보도하면 외교교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회를 보냈는데도 그 같은 폐단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심히 유감이다. 귀 정부에서 이 기회에 엄중한 방법을 만들어 앞으로는 교섭중인 외교문서를 일절 신문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요구였다.⁸⁾

그러나 외부가 신문허가 관서인 농상공부에 문의한 결과 신문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으므로 외부는 궁여지책으로 이튿날인 10월 8일 한성판윤에게 신문에 대한 규제를 요청해 보았다. 그러나 한성판윤도 신문규제는 한성부의 권리가 아니라는 회답을 보내왔을 뿐이다.⁹⁾

결국 신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법률도

6) 서울대 규장각 도서, 『농상공부 거래문』

7) 서울대 규장각 도서, 『농상공부 거래문』

8) 일안 4, 「외교문서의 교섭 중 신문게제사건의 엄금요망」, pp.149-150.

9)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제6권, 「外衙門日記」, 1899, 10, 8, p.581 ; 동 10, 30, p.584,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어느 부서이건 외국의 압력 때문에 신문을 규제하는 일에 손을 대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외국공사들의 끈질긴 압력에 시달리고, 정부의 무능과 부패상이 폭로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외부가 신문 규제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었다.¹⁰⁾

그런데 때마침 고종이 신문지조례를 제정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고종은 만민공동회가 제출한 국정개선에 관한 6개 조항의 건의서를 윤희하면서 10월 30일 5개조의 조칙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각 나라의 예를 본떠 내부와 농상공부가 신문지조례를 제정하라고 하교한 것이다. 칙령 가운데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간관(諫官)을 폐지한 후 언로(言路)가 막혀 상하가 힘쓸 것을 권하고 기다들을 것을 깨우치는 뜻이 없게 된 만큼 중추원에서 빨리 규정을 정하여 실시할 것이다.

1. 각 항목의 규칙은 이미 한결같이 정한 것만큼 각 회와 신문 역시 규정이 없을 수 없다. 회의 규정은 의정부(議政府)와 중추원(中樞院)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시기에 알맞게 해아려 결정하며 신문에 대한 조목별 규례는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금 각국의 규례에 의거하여 해아려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다.

고종의 조칙에 따라 신문지조례를 제정하는 업무는 내부가 맡게 되었다. 신문지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있자 신문사들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독립신문은 1899년 1월 10일자 논설에서 언론자유[言權自由]는 하늘이 내려주신 천

생권리(天生權利)라고 전제하고 언론자유 중요성을 설명했다. 어느 정부나 그 인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직분이다. 또한 언론자유를 억압하면 공론이 없어지고, 공론이 없어지면 정부관리들이 인민을 압제하여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성하고 입을 틀어막아 시비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위태롭다. 언론자유는 나라 다스리는 큰 강령(綱領)이라고 설파하였다. 신문규칙은 너무 까다롭게 만들면 정부가 무슨 학정을 하거나 백성은 어떤 억울한 길이 있더라도 호소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규칙은 나라를 해롭게 하며 육보이는 결과가 된다. 또한 새로 제정하는 신문규칙이 한국인에게만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외국사람의 신문은 규제를 가할 수 없다면 한국에서는 신문은 외국인만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을 것인가. 신문지조례는 나라를 위하여 부디 좋은 방향으로 만들라고 당부했다.¹¹⁾

이 논설은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대단히 높은 식견과 철학을 지닌 내용이었다. 이 논설에서 주목할 점은 '언론자유'를 '언권자유'로 표현하면서 천부인권의 권리로 정확히 규정한 거의 첫 번째 논설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쓴 것인지는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윤치호(尹致昊)가 독립신문에서 손을 떼기 직전에 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윤치호는 1898년 5월 17일 서재필이 도미한 후에 독립신문의 주필을 맡았다가 독립협회가 혁파된 후 1899년 1월에 덕원감리로 떠났는데, 그가 평생 써온 일기를 보면 식견과 논리전개가 뛰어났는데 이 논설은 그가 쓴 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신문 단체 '신문사친목회'에서도 최초의 신

10) 태국신문, 1898. 10. 19. 잡보.

11) 독립신문, 1899. 1. 10. 「언권자유」

문지조례 제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1898년에는 새로운 신문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이 해 10월 말 신문사친목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친목과 언론에 관련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신문사친목회 또는 친목동맹회, 간친회 등으로 일정한 명칭을 갖지 않고 회장이나 간부진도 없이 매월 제 2 토요일에는 윤번으로 회원사에 모여 '평상회'를 열고, 연 2회의 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다. 초기의 이 자연발생적인 언론단체도 언론자유 문제, 신문사의 경영에 관한 공동 협의, 친목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내부에서 신문지조례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던 무렵인 1899년 1월 14일(토) 신문사친목회는 『그리스도신문』에서 모인 제3차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신문지조례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일본과 서양 여러 나라의 신문지조례를 널리 수집하여 가까운 시일에 특별회를 열고 내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¹²⁾

2. 일본의 신문지조례 모방

내부는 신문지조례의 제정을 서둘렀다. 내부에서 마련한 신문지조례가 의정부를 거쳐서 중추원으로 넘어간 것은 1월 20일 경이었다.¹³⁾

그런데 『황성신문』은 내부가 최초로 성안한 신문지조례는 일본에서 1891(明治 23)년 무렵에 시행되고 있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¹⁴⁾

明治 23년 무렵에 시행되었다는 일본의 신

문지조례(1879년 공포)는 '3대 악법'(신문지조례, 집회조례, 보안조례)의 하나로 지탄받던 조례였다. 이 조례는 보증금 제도를 두어 신문발행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으로 국안(國安)방해, 풍속괴란 등의 이유를 들어 신문의 발행을 금지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내무대신이 쥐고 있는 등 과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었다.¹⁵⁾

일본의 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는 1868년(明治 원년)에 공포된 '신문지사간금지포고(新聞紙私刊禁止布告)'가 시초였다. 이 포고에서 신문의 '허가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이 포고를 정리하여 '신문지인행조례(新聞紙印行條例)'(1869년 2월 8일)를 공포하여 언론단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873년 10월 19일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신문지조목(新聞紙條目)'을 제정하고 국체(國體), 국률(國律), 외법(外法) 등의 게재사항을 제한하였다. 1875년 6월 28일에는 '신문지조목'을 철폐하고 새로 '신문지조례'를 공포하여 내무성의 행정처분으로 발행금지 또는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같은 해에 공포된 '참방률(讒謗律)'과 함께 이후 언론을 탄압하는 엄격한 법령이 되었다. 1876년 7월에는 이 조례에 발행금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명시하고 '국안(國安)의 방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내무성이 신문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을 확대하였다. 1880년 10월에는 '국안방해'와 함께 '풍속괴란'도 발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⁶⁾

그 후 1883년 4월 16일 이 조례는 전면 개

12) 독립신문, 1899. 1. 17, 「신문도례의론」

13) 독립신문, 1899. 1. 21, 「신문도례」

14) 황성신문, 1899. 3. 3, 「改正條例」

15) 美上路昌・편, 『明治大正史一言論編』, 1930, 朝日新聞社, pp. 161-169.

16) 金子喜三, 『新聞法制研究』, 東京: 芦書房, 1966, pp.35-37.

정되어 발행보증금 제도, 기사의 출처에 대한 증명의무, 군부 외무대신의 금지권이 신설되었다. 신문지조례는 제1조에서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그 발행소의 관할청을 경유하여 내무경에 출원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신문박멸법”으로 불릴 정도로 신문을 제한하고 간섭하였다.¹⁷⁾

신문 발행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하여 재판비용, 벌금, 손해배상금에 충당하였다. 신문지조례는 신문의 폐간·정간을 비롯하여 언론인의 구속 등 가혹한 규제조항으로 ‘신문의 공포시대’를 초래케 한 악법이였다.¹⁸⁾

이 조례가 공포된 뒤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간된 신문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47개지에 달하였다.¹⁹⁾

일본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언론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1887년 12월 28일 신문지조례의 개정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점차로 완화되었다. ①종래의 발행면허 제도가 계출(届出) 제도로 바뀌고, ②비훼(誹毀) 사건에 관하여 사실증명권이 인정되었으며, ③부지사(府知事), 현령(縣令)의 발행정지권, ④신문사의 인쇄기 압수제, ⑤외무대신의 기사 금지권, ⑥원고의 3주간 보존의무 등이 폐지되었다.

1891년 11월에 개최한 일본의 제1회 제국의 회에는 신문지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예산관계 논쟁이 일어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나고 말았다.²⁰⁾

그 후 헌법이 공포되고 제국의회가 설립된 다음인 1897년에는 신문지조례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①내부대신의 발행금지권 및 정지권과 발매·반포의 금지 및 압수의 권한이 폐지되는 대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법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내부대신에게는 고발권만을 인정하여 위반한 신문의 발매·반포를 정지하거나 가압류하고 기타 고발사항의 기재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되었으며, ②황실의 존엄 모독 외에 정체변과(政體變壞), 조헌문란(朝憲紊亂)의 기사, ③풍속괴란 이외에 사회질서 문란의 기사가 금지되었다. 그 후 1909년 5월 6일에는 이 조례가 ‘신문지법’으로 개칭 개정되어 2차 대전 종전시까지 효력을 지속하였다.²¹⁾

일본의 신문관련 조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8년에서 시작하여 1869, 1873, 1875, 1876, 1879, 1880, 1883, 1897년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런데도 1899년 1월에 대한제국의 내부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었던 1897년에 개정되어 규제가 완화된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참고로 하지 않고, 1891년에 시행된(실은 1879년에 제정되었던)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고 번역하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문을 과도하게 속박하는 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이다.²²⁾

3. 신문의 비판과 중추원의 수정안 마련

독립신문은 1월 27일자 논설에서 제정 중인 신문지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새로 내

17) 双川喜文, 『言論の彈壓』, 法政大學出版局, 1959, p.137.

18) 小野秀雄, 『日本新聞發達史』, 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 1922, pp.69-98. 이 책은 일본의 五月書房에서 영인 간행하였다.

19) 双川喜文, p.137.

20) 双川喜文, p.148 ; 美土路昌 · 편, 『明治大正史一言論編』, pp.161-169.

21) 박용상, 「한국의 언론법사」, 『신문연구』, 1980, 겨울호, p.25 ; 金子喜三, 1969, p.31 이하.

22) 황성신문, 앞의 기사.

놓은 신문규칙의 초안은 압제가 너무나 심해서 재판, 배상, 벌금으로 말을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런 사정 아래 어찌 마음놓고 신문을 하겠는가 라고 개탄했다. 대한의 법률이 공평하며 법관들이 사정을 보지 않고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리곡직만으로 재판을 한다면 까다로운 규칙 아래서도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법률이 문란하여 죄가 있어도 세만 좋으면 석방이요 죄가 없어도 세력 있는 사람이 미워하면 재판도 없이 무한 곤욕을 당하는 판이니, 이같은 조례가 시행되면 신문은 세력 있는 사람에게 아침이나 하던지 글 자랑이나 할 뿐 인민의 억울한 일, 관리의 탐학 하는 정사,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할 터이니 신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신랄히 비판했다.²³⁾

독립신문은 2월 1일자에서도 신문지조례를 비판했다. 이제 일본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는데 “대한정부에서는 좋은 것은 본뜨지 않고 구태여 남의 나라에서 국민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내어버린 신문지조례라는 것을 어디 가서 궁수먹듯하여 본국 국민의 개명을 기어코 손해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²⁴⁾

장지연이 주필이었던 『시사총보』도 신문지조례를 비판했다. 신문지조례 36개 조항은 “관보의 공포한 사건과 각 부의 허가한 문첩(文牒) 외에는 기재함을 엄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배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런 조례를 지키다가는 신문은 단지 ‘조보(朝報)’의 초록이 될 수밖에 없으니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것이다.²⁵⁾

중추원에서든 내부에서 마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이 양분되었지만²⁶⁾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중론이었다. 중추원 의원들은 개명한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조례를 참고로 하여 수정안은 만들어 의정부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심의할 조항이 복잡하여 의원 가운데 수정위원 3명을 뽑아 심의를 맡도록 하였으나²⁷⁾ 10명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투표에 부친 결과 4명으로 압축되었다. 결국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궁억(南宮棼), 이시우(李時雨), 박승조(朴勝朝) 3명으로 확정되었다.²⁸⁾

이 가운데 남궁억은 중추원 의관이면서 황성신문의 사장을 겸하고 있었다.²⁹⁾

중추원의 수정위원들은 며칠 동안 토론하고 축조심의를 끝에 규제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줄이거나 수정하여³⁰⁾ 원안 36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을 삭제하고 33개조로 만들어 3월 4일 의정부로 보냈다.³¹⁾ 그러나 조례 가운데 속박이 가장 심한 부분만을 삭제하였을 뿐,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상태였다.³²⁾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는 신문조례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없었고, 조례도 시행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 고종의 조칙에 따라

23) 독립신문, 1899. 1. 27, 「신문규칙」

24) 독립신문, 1899. 2. 1, 「신문조례」

25) 시사총보, 1899. 2. 7, 논설.

26) 시사총보, 1899. 2. 7, 「條例更定」

27) 황성신문, 1899. 1. 27, 「條例更整」

28) 독립신문, 1899. 1. 27, 「슈팅위원」; 태국신문, 1. 27 「잡보」

29) 정진석, 『역사와 언론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78.

30) 태국신문, 1899. 2. 17, 「잡보」

31) 규장각문서, 『중추원거래문』, 광무 3년 3월 4일, 통첩 제9호.

32) 황성신문, 1899. 3. 3, 「改正條例」

성안된 신문지조례는 신문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중추원에서 수정한 조례를 의정부로 넘긴 것까지는 확실한 데도 그 후로는 신문이나 정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장지연의 유품 가운데 36개 조항의 완전한 신문지조례가 남아 있어서 이를 토대로 최초의 신문지조례는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IV. 신문지조례의 내용과 광무신문지법의 비교

‘신문지조례’는 8년 후인 1907년에 제정된 ‘광무신문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법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무신문지법의 조항은 (‘광무, 제○조’로 표시)

1. 허가제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하기 2주일 전에 소관관청(경성은 경무청)을 경유하여 내부에 청원해야 한다(제1조). 위반하는 경우에는 5원 이상 1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실(實)로써 아니하면 발행인은 1월 이상 6월 이하 구류(新聞지조례에는 ‘拘囚’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구류’로 표기한다.) 또는 5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27조)에 처한다. ‘실로써 아니하면’은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를 받은 신문이라도 제호나 발행인을 변경하려면 2주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때에도 위반하면 벌칙은 허가받지 않은 신

문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다. 발행인과 인쇄인은 본국인으로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라야 한다. 광무신문지법도 이와 같다(광무, 제6조). 이 조항은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의 취임이나 변경이 있을 때에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으로서는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신문에 종사하려 할 때에 심사의 권한이 인정된 것이다.

신문발행의 허가제는 근원적으로 신문발행을 봉쇄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광무신문지법은 신문지를 발행코자 하는 자는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광무, 제1조)로 되어 있어서 조례와 신문지법이 동일하지만 ‘조례’에는 ‘허가’를 얻어야한다는 말은 없다. 총독부는 무단정치 기간에는 한국인들에게는 단 1건의 신문조차 발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1920년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신문만 허가해 주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허가제’ 조항 때문이었다.

2. 보증금제

보증금제를 채택하였으나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 장지연이 필사한 자료에는 〇원이라고 쓰여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태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로 등록하는 신문은 보증금 600원을 납부하고, 이미 발행되고 있는 기존 신문은 300원으로 예정했던 것 같다.³³⁾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①서울, ②인천, 부산, 원산, ③기타 지방의 3개 지역으로 차별화 하였고, ④ 1개월에 3회 이하 발행하는 신문(旬刊)은 지역별로 반액만 내도록 했다(제8조).

33) 태국신문, 1899. 1. 24, 「잡보」

이 조항 역시 신문 발행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신문 발행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신문 발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였다. 또한 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으로 징수하도록 만들어두었던 것이다.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때에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판비용 및 벌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몰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발행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액(缺額)을 완납하되, 만약 완납하지 않으면 완납할 때까지 경무사 또는 지방장관이 그 발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제26조). *태국신문*은 기존 신문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판에 보증금 300원을 내야한다면 머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들의 신문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³⁴⁾

다만 학술, 기예(技藝), 통계, 관령(官令), 물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간행물— 시사적인 내용을 게재하지 않는 간행물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증금을 내지 않은 간행물이 일반 시사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편집인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구류 또는 5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제27조).

3. 사전검열

신문지는 그 발행할 시에 내부(內部)에 2장과 관할청 급 관할 재판소에 각 1장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조). 사전 검열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 관할청,

그리고 관할 재판소에까지 미리 납부토록 하였다는 사실은 사전검열을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광무신문지법에서도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예선(豫先) 내부 급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함이 가함”(광무, 제10조)이라 하였는데 사전검열을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5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였다(제27조). 광무신문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주한 일본 헌병사령부는 한국 언론을 검열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07년에 신문지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사전검열을 제도적으로 실시하여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하였다.

4. 정정보도 의무

오보가 났을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문 게재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제13조)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정정보도와 반론문 게재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정보도나 반론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정보도를 하거나 반론문[변박서:辯駁書]을 게재해야 한다.

② 정정 또는 반론문은 청구가 있는 다음에 나오는 신문, 또는 청구가 있는 후 3회째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문이 원래 기사와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한 글자 수 분량에 해당하는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신문사가 요구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 반론문은 원문과 같은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여 기사가 게재되었던 동일한

34) *태국신문*, 1899. 1. 24.

(同一欄)의 머리에 게재해야 한다.

⑤정정보도, 변박문이 법률에 저촉하거나 또는 청구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게재할 필요가 없다(제13조). 다만 사적(私的: 私事에 係한 자)인 기사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렸다가 그 죄를 논한다.(제34조)

이 조항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문을 실어할 기사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사의 오보 여부를 판가름할 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문을 요구하는 경우 신문이 무조건 실어주어야 한다면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더구나 정정보도 또는 반론문을 반드시 기사가 실렸던 지면의 머리에 실어야 한다는 점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신문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은 광무신문지법에서도 거의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제20조).

관보 또는 다른 신문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신문을 본 다음 또는 제 3회까지 발행하는 지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광고료를 요구할 수 없다(제14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인은 5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광무신문지법에서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제19조)

5. 재판기사의 게재의무

신문에 기재한 사항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발행하는 신문에 선고서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위반하면 편집인은 5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28조). 광무신문지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제18조)

6. 보도 금지조항

광범위한 여러 항목의 보도 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①예심에 관련된 기사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공판이 시작되었다라도 방청을 금하는 소송사건은 보도할 수 없다(제16조). 위반하면 편집인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구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제29조). 광무신문지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제14조).

②형사 피고인이나 법에 저촉되는 범죄인을 구호(救護)하거나 상휼(賞恤)하는 문서를 게재할 수 없다(제14조).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비호[曲庇]하는 논설을 기재할 수 없다(제17조). 위반하면 편집인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구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제29조)에 처한다. 광무신문지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제13조)

③공포 아닌 공문서 및 상서(上書), 건백서(建白書), 청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 또는 요약한 내용이라도 보도할 수 없다. 관청의 의사(議事) 및 법률에 의하여 방청을 금한 공회(公會)의 의사 역시 전문 또는 요약한 내용이라도 보도할 수 없다(제18조). 위반하면 편집인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구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제29조). 광무신문지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제12조).

④육군대신, 해군대신은 특히 명령을 발하여 군대, 군함의 진퇴 또는 군사기밀(軍機), 군사전략(軍略)에 관한 사항의 게재를 금할 수 있다(제22조).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1월 이상, 2년 이하의 구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1조). 이 조항은 특히 당시 한국에는 직제가 없는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군사 기밀 사항 등에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조항은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에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기사 게재 금지권이 들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광무신문지법에는 이 조항이 없다.

7. 행정처분

내부대신은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발행금지[폐간] 또는 발행정지[정간]를 명할 수 있다(제19조). 발행금지 또는 정지를 명한 신문은 발매, 반포를 금하고 신문지를 압수한다(제20조). 광무신문지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전수되었다(광무, 21조). 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내부대신은 그 신문 국내 발매, 반포를 금하고 압수할 수 있다(제21조).

재판관도 신문을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신문에 기재된 사항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는 때에는 사법관이 신문지를 가압(假押)할 수 있으며, 재판관은 범죄의 정상에 따라 압류한 신문지를 몰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8. 사법처분

사법처분은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에 해당한다.

①편집인과 필자의 공동 처벌: 신문에 기재한 사항으로 소송이 일어날 때에 원고가 그 신문에 이름에 등재된[署名한] 편집인은 실제 편집사무를 담당한 자가 아니고 다른 주임(主任) 편집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등재된 편집인과 실제 주임 편집인은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24조). 광무신문지법에서는 편

집인과 “그 기사에 서명하는 자”가 편집인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 편집인과 필자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광무, 제34조).

②명예훼손의 처벌: 신문에 기재한 사항으로 명예훼손[誹毀]의 소송이 있는 때에 피해자를 해치고자하는 악의가 없고, 공익을 위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고인에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를 면하도록 하였다(제25조). 그러나 광무신문지법에서는 이 같은 면죄 조항 없이 “인(人)을 비훼(誹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을 부득함”(광무, 제15조)이라고만 되어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나 관계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한다는 친고죄였다.(조례 제34조: 광무, 제33조).

③정체(政體)의 변괴(變壞): 정체를 변괴하고 조헌(朝憲)을 문란케 하려는 논설을 기재한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2월 이상 2년 이하 구류에 처하고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附加)한다. 또한 그 신문을 인쇄한 기계를 몰수한다(제32조). 광무신문지법에서는 이 조항이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혹 국제우의를 저해할 사항을 기재함을 부득함”(광무, 제11조)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역형(役刑)에 처하여 그 범죄에 공용(供用)한 기계(器械)를 몰수함”(광무, 제25조)으로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④외설한 신문지를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인 편집인을 1월 이상 6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광무신문지법은 “사회질서 또는 풍속을 괴란하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금고(禁獄) 또는 50환 이상 300환 이하에 벌금에 처함”(광무, 제26조)으로 벌칙이 약간 강화되었다.

V. 신문지조례의 언론법사적 위치

한말에 처음 제정되었던 신문지조례는 시행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조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한말에 신문이 처음 발행되던 때에는 농상공부에서 신문 발행을 '허가' 하였을 뿐 신문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은 없었다. 신문이 국민을 계몽하여 전국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이고, 이로 인해서 외교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문을 규제할 법이 없었다.

둘째, 신문지조례의 제정은 새로 창간된 일간지들이 열강국의 이권 침탈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은 신문이 외교문서를 폭로하여 열강국의 이권 침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외교문서가 폭로된 경위를 추궁하거나 신문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항의하면서 관련자의 처벌과 신문을 규제할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 공사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법의 제정문제가 논의되었다.

셋째, 그러나 구체적인 법 제정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종이 신문지조례를 제정하라는 조칙을 내리자 내부에서 36개조의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일본에서明治 23년 무렵에 시행하던 조례를 번역한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 조항이 너무 가혹했던 이 법은 일본에서도 훨씬 완화되어 있었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규제가 심한 구 조례를 모방하였던 것이다.

넷째, 언론계에서 신문지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가 심하다는 반발이 있자, 정부에서는 중추원에 수정을 의뢰하여 3명의 수정위

원이 내용을 완화하고 3개 조항을 삭제하여 의정부에 넘겼으나 이 조례는 시행되지 않은 채 폐기되었다. 결국 한국 최초의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에 공포된 광무신문지법이었다.

다섯째, 신문지조례는 폐기되고 말았으나 그 후에 공포된 광무신문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악법 광무신문지법의 제정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의 압력을 폭로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신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였던 것이며, 1907년에 제정된 광무신문지법은 일본의 강요로 일본 신문지법의 악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섯째, 신문지조례는 권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문을 규제하고 탄압할 수 있는 갖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신문발행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허가제, 보증금제를 비롯하여 금지조항, 의무적인 반론보도 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행정처분, 사법처분 등의 각종 처벌 규정도 있었다.

일곱째, 신문지조례와 광무신문지법의 골격은 거의 비슷했지만 표현이나 처벌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1899년의 신문지조례에는 없었던 조항이 1907년의 신문지법에 새롭게 나타난 것도 있었다. 광무신문지법 제 16조 “或 事項을 기재여부와 若 訂正 又 繳 消여부로 조건을 作하야 보수를 約하거나 또는 受領함을 부득함”이 그것이다. 신문에 기사를 내거나 정정 또는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문이 처음 나올 때에는 그러한 범죄를 예상하지 못했으나 기사의 게재 여부를 가지고 그 같은 부조리가 나오기 시작했기에 그런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지조례는 정체를 변경하고 조헌(朝憲)

을 문란케 하려는 논설을 기재한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무신문지법에서는 이 조항이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혹 국제우의를 저해할 사항을 기재함을 부득함”(11조)으로 대체되었다. “정체의 변괴”가 “황실의 존엄 모독”으로 바뀐 것이다.

1899년 초에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던 신문지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뒤에야 위암 장지연 선생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신문지조례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하기 2週間 이전에 該 所管 관청(경성은 경무청)을 경유하여 내부에 請願함이 可할 事.

제2조 신문지 발간하는 청원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함이 可할 事.

1. 제호,
2. 기재의 종류,
3. 발행하는 시기,
4. 발행소와 인쇄소,
5. 발행인과 인쇄인과 편집인 급 인쇄인의 氏名, 연령. 편집인이 2인 이상 되는 시에는 主하여 편집사무를 담당할 자로 하되 단, 지면에 부문을 分하여 其 各 부문에 主任 편집인을 設함을 得할 事.

제3조 청원한 후에 제호와 기재하는 종류와 혹 발행인을 변경하려 할 시는 2주일 이전에 제1 조를 依하여 청원함이 可할 事. 발행하는 시기와 발행소 인쇄소 편집인 인쇄인을 변경 할 시는 일주일 이내에 제1조를 依하여 청원함이 可할

事.

제4조 발행인이 身死하거나 혹 법률상에 그 자격을 失하는 시에는 일주일 이내에 발행인을 定하여 제1조를 依하여 청원하기까지는 假발행인의 명의로 발행함을 得할 事.

제5조 발행 청원일 급 발행 休息日부터 50일을 過하여 발행하지 않는 시에는 그 청원의 효를 失할 事.

제6조 본국인 20세 이상 남자가 아니면 발행인과 인쇄인 등을 得치 못할 事.

제7조 편집인과 인쇄인은 兼帶함을 得치 못할 事.

제8조 발행인은 보증을 하여 좌에 금액을 청원서와 같이 관할청에 納함이 可할 事.

1. 경성에서는 〇원

2. 인천, 부산, 원산에서는 〇원

3. 기타 지방에서는 〇원

4. 1개월에 3회 이하 발행하는 것은 各 右記 金의 반액

5. 학술, 기예, 통계, 官令, 물가보고 등에만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此項에 不在할 事.

제9조 보증금은 신문지의 발행을 폐지하고 그 발행을 금지한 시에는 還付할 事.

제10조 제1조, 제2조, 제4조의 청원을 아니하고 보증금을 納할만한 신문지를 보증금을 不納하고 발행한 시는 正當한 청원을 하고 보증금을 納하기까지 경무사 혹 지방 장관이 그 발행을 금지할 事.

제11조 신문지는 매 호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과 발행소를 기재함이 可할 事. 발행인, 인쇄인, 外에는 余하한 명의로 함을 不구하고 신문지 혹 기재한 조항에 署名한 자는 總히 편집인과 같이 그 責을 當할 事.

제12조 신문지는 그 발행할 시에 内部에 2장과

관할청 급 관할 재판소에 각 한 장을 納함이 可할 事.

제13조 신문지에 기재한 사항이 誤錯하여 그 사항에 관한 當人 혹은 관계가 有한 자가 正誤 혹은 誤書 辯駁書에 게재를 求할 시에는 그 求를 受한 후 그 次回 혹은 제3회까지 발행에 正誤를 하고 또 正誤書 辯駁書에 전문을 게재함이 가하되 若 정오서 변박서의 字數가 원문의 2배를 초과하는 시는 그 초과 자수로 그 신문사에 정한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대가를 요구함을 得할 事. 정오 변박은 원문과 同號의 활자를 用하여 同一欄 內 首部に 게재함이 可할 事. 정오 변박에 文意가 법률에 觸할시와 또 求하는 자 그 성명, 주소를 명기 아니한 시는 게재를 不要할 事.

제14조 관보나 若 신문지에서 正誤나 혹은 정오서 변박서를 게재할 시는 當人이나 혹은 관계 有한자 求함이 無하여도 그 신문을 得한 후 그 次回 혹은 제3회까지 발행에 정오함은 前條로 依하고 단 광고료를 요구함을 不得할 事.

제15조 신문지에 기재한 사항으로 재판을 受할 시는 그 신문지 次回 발행에 宣告에 전문을 게재함이 可할 事.

제16조 重罪 輕罪에 예심에 관한 사항은 공판에 附하기 전에는 게재함을 不得할 事. 방청을 금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은 게재함을 不得할 事.

제17조 刑律에 저촉한 범죄를 曲庇하는 논설을 게재함을 不得할 事. 형사에 피고인 혹은 형률에 저촉한 범죄인을 救護 혹은 賞恤함을 위하여 하는 문서를 게재를 不得할 事.

제18조 공포 아니한 공문서 급 上書, 建白書, 請願書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得치 못하면 不拘詳略하고 기재함을 不得할 事. 관청

에 議事 급 법률에 의하여 방청을 금한 公會의 議事는 不拘詳略하고 기재를 不得할 事.

제19조 치안을 방해하고 또는 풍속을 亂함으로 인한 신문지는 내부대신이 발행을 금지하고 혹은 정지함을 得할 事.

제20조 신문지에 발행을 금지하고 혹은 정지할 시는 내부대신이 該 신문지에 발매, 반포를 금하고 또 신문을 압수함을 得할 事.

제21조 외국에서 발행한 신문지의 치안을 방해하고 또는 풍속을 亂함으로 인하는 시는 내부 대신이 그 신문을 내국에서 발매, 반포를 금하고 또 신문을 압수함을 得할 事.

제22조 육군대신, 해군대신은 특히 명령을 발하여 군대, 군함에 진퇴와 혹은 軍機, 軍略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함을 得할 事.

제23조 신문에 기재할 사항으로 公訴를 起할 시는 司法官이 該 신문을 假押 함을 得할 事. 재판관은 범죄의 정상을 依하여 압류한 신문을 몰수함을 得할 事.

제24조 신문지에 기재한 사항으로 소송을 起할 시는 원고가 該 신문지에 서명한 편집인은 實際에 主하여 편집사무를 담당한 者 아니오 他에 主한 편집인이 有함을 證明한 때에는 재판관은 그 署名한 편집인 급 실제로 주임 편집인으로 같이 其 責에 當하게 함이 可할 事.

제25조 신문지에 기재한 사항으로 誹毀에 訴가 有한 시에는 其 私行에 涉할거 外에는 재판소에서 其人을 害할 惡意가 아니오 專히 公益을 爲함으로 認할 시에는 피고인에게 사실을 證明함을 허하고 證明에 확립을 得한 時는 誹毀에 罪를 免하고 其 손해배상의 訴를 受한 시에도 上同할 事.

제26조 재판 확정된 日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

판비용 급 벌금을 완납 아니하고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시에는 보증금으로 充하고 부족한 額은 依法 徵捧할 사. 보증금으로 재판비용 배상 급 벌금을 充한 시에는 발행인이 관할청에 통지를 得한 日로 일주일 이내에 그 缺額을 완납하고 若 완납 아니한 시에는 완납하기까지 경무사 혹은 지방장관이 그 발행을 금지함이 可할 事.

제27조 제1조 제3조 제4조에 청원을 아니하고 또는 제 6조 제 7조 제 11조 제 1항 제 12조를 범하고 또는 보증금을 納할만한 신문지가 보증금을 不納하고 발행하는 時에는 발행인을 5원 이상 100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또 詐稱의 죄를 범한 자는 벌이 발행인과 同할 사.

제1조, 제3조, 제4조의 청원을 實로써 아니한 시에는 발행인은 1월 이상 6월 이하에 拘囚 或 5원 이상 백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 제8조 末項에 속한 신문지가 보증금을 納할만한 신문지의 사항을 기재한 시에는 편집인의 벌이 전 항과 同할 사.

제2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違한 시에는 편집인을 5원 이상 1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

제29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違한 시에는 편집인으로 1월 이상 6월 이하의 拘囚 或 20원 이상 2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

제30조 제21조에 違하여 발매 반포한 자는 벌금이 前條와 同할 사.

제31조 제22조에 違할 시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1월 이상, 2년 이하에 구수 或 20원 이상 2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

제32조 政體를 變壞하고 朝憲을 문란케 하려는 논설을 기재한 시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2월 이상 2년 이하 拘囚에 처하고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을 附加할 사. 본 조를 범한 자는 그 범죄의 用에 供한 기계를 몰수할 사.

제33조 猥褻한 신문지를 발행한 시에는 그 발행인 편집인을 1월 이상 6월 이하의 拘囚, 或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

제34조 제13조의 경우에서 私事에 係한 자는 피해자의 고소를 待하여 其 죄를 논할 사.

제35조 此 조례 반포 전에 발행한 신문지와 잡지도 此 條例를 依할 사.

제36조 此 조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사.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주 동 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11월 23일 광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동황 위원(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와 장광환 위원(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987년 이른바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가 언론자유화 정책을 취함에 따라 기존 언론계에서 고착돼온 과점적인 경쟁제한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신문들이 창간 또는 복간되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방송의 경우에도 수많은 방송채널들이 등장하였고 지금은 곧 위성방송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언론계는 양적인 확대를 계속 보여 왔다.

이런 언론환경의 변화는 언론사간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이에 따른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유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등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언론에게 자유와 경쟁의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언론의 윤리수준은 그 만큼 향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만들고 있기도 있다. 이런 변화의 일면으로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반론권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헌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명예와 같은 개인 인격권의 보호를 강화하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이유가 있다. 언론사간의 경쟁 격화와 선정적 보도의 확대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요구도 크게 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는 매스미디어가 지니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인격권을 앞세우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그만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초래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서로 충돌하는 언론자유와 기타 법익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우선 누가 피해구제를 하느냐의 주체를 기준으로 언론계의 자율적인 피해구제와 법제도에 의한 타율적인 피해구제의 방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윤리강령과 개별 언론사의 보도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법제도는 구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구제제도와 사후 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 구제제도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허용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도 역시 사전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 구제제도는 민사상, 형법상, 그리고 언론법상의 구제제도로 나뉘볼 수 있다. 형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상으로는 언론보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그리고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구체적인 실무에서 '취소' 또는 '정정' 기타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가 그 특성상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곧 반론권 제도의 도입

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언론법상 특수한 피해구제제도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절차가 입법화돼 있다.

한편 반론권이 법제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편집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반론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론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하지만 언론계의 자율적 피해구제제도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며, 언론의 자율적 규제는 법과 제도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언론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스스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이다.

그 중 첫째로 각 언론사들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보도윤리강령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현재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론권 보장의 조항 역시 더욱 구체화시키고 매일매일의 지면에 반론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사전사후에 확인하는 메카니즘을 갖춰야 한다. 심의실이나 옴부즈맨 기구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이런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계 차원에서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기구 자체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언론사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제도상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은 현행 민형법상의 피해구제보다는 반론권 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피해구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현 언론중재절차와 기능을 강화하고 기구의 위상도

고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언론피해구제법'이란 이름으로 현 반론권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재결정의 효력 강화, 손해배상청구 등 조정 대상의 확대, 조정 전치주의의 획일적 확대, 직권조정예의 이의 신청시 소 제기 간주, 언론피해구제 관련법의 통합, 신문 및 방송 등 선거보도심의기능의 통합, 언론사의 옴부즈맨 제도 설치 의무화, 인터넷 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반론권 보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반론 주체와 반론 대상매체에 대하여 일정한 차별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직자나 공인들은 그들의 공적인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의하여 감시되고 비판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론 요구는 일반 개인의 그것보다 한층 엄격한 조건에서 수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반론 대상인 매체에게도 반론 청구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고 있다. 시장점유율, 전파력 등 여론시장의 지배력이 큰 매체는 그에 따른 피해의 범위도 넓고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론 요구를 강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언론사들이 '반론보도문'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신문을 읽으' 등 다양한 반론보도형식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도 설득시켜 활용하는 것도 언론중재의 합의를 높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앞으로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언론의 침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고 그런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원도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액을 과거보다 상향조정해

갈 것이고 언론사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은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보도내용과 방향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언론보도가 특종이나 속보 경쟁에 매달리기보다는 정확한 보도로써 한층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둘째, 언론보도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 기자들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언론관련 법규 등의 재교육을 통해 언론 피해 발생에 대한 주의 노력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보도 피해예방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볼 만하다.

셋째, 사내 심의부서의 기능을 언론피해의 사전 예방장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부서는 사전, 사후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적발하고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의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심의인력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에 언론사들이 직접 언론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인색했던 언론사들이 자사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언론은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반론요구를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설 경우 언론이 인권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피해자에게 주게 되고 자칫 감정에 휘말린 소모적인 소송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토론

사회장 광환

중재위원,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회자 : 요즘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의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는 과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신속해서 오보의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자께서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제가 광범위한 관계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리라 보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유롭게 허심탄회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복현 (광주 광산 문화원장) : 주제발표내용과 관계는 없지만 배포된 참

고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사이버기자 신고요령 가운데 신고자의 신변보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기자 신고를 할 때에 피해사실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변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한편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여 합의 또는 불성립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절차와 관계없

이 신청인이 언론사 사주를 상대로 또다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이중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언론사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주제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발표자 : 사이버기자 신고와 관련해서 신변보장은 당연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탓에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분쟁이 야기된

보도내용이 언론사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중재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중재절차와는 무관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현재 중재부장을 맡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주를 형사고소한

경우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문제가 되는데 취재기자나 데스크의 편집과정을 거쳐 보도된 사실적 주장인 경우 발행인 또는 방송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큼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김성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 : 언론사가 대부분 허위사실로 구성된 기사를 보도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보도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엉뚱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일반적 원칙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주변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부풀려서 보도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민·형사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중재위원회의 역할 미흡

노성렬 (시민의 소리 편집장) : 제가 근무하는 신문사는 현재 2건의 명예훼손소송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중재위원회 중재과정이 결렬되어, 이후 편집권 침해라는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결정에 따라 반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문제는 보도내용과 관련된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 지역 언론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현재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며, 공격적 성격이 강한 쟁점 보도에 대해서는 반

론보도가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 사장에 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주제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언론사 사장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공인에 대한 보도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중재위원회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언론사 사장에 대해 비평이나 의견 기사를 게재한 경우 언론사 사장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주제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사 사장 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면책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치판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공인의 범위를 엄밀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과 관련된 법리가 한때는 아주 확대되어 가다가 연방대법원의 법관구성에 따라 축소되기도 하는 등 공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지역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역신문사 사주의 경우 전국적 범위에서 전국지 성격의 언론기관이 보도한 경우라면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지역신문이 동일지역의 신문사 사장을 상대로 보도한 경우라면 충분히 공인으로서 관심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태열 (호남신문 주필) : 발표 내용 중 최근 반론보도청구가 증가했다는 지적은 마치 언론이 개인의 인격을 도외시하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습니다. 제 견해로는 80년대 후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물법이 생기면서 언론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사례도 자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을 마치 언론의 횡포가 증가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30여 년을 언론에 종사한 언론인으로서 언론사를 예전처럼 횡포를 부리는 기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도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나 사실확인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된 경우 효율적인 구제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내용은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는 언론사 수의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도 있겠으나 언론인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지 못하는데 기인한 바 커

발표자 : 언론사 수의 증가가 언론피해를 급증시킨 주요한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견해의 요지는 우리 나라 신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언론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언론의 횡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론의 횡포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언론개혁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보도의 부작용이나 현 언론사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순팔 (의사,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 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면 고귀한 생명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나 환자, 가족들의 불편, 불만 등의 경우만을 보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적인 권익이나 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균형

있는 보도와 사실보도를 언론계에 부탁드립니다.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시각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김상옥(변호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개인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매체의 거대화와 영향력 확대로 인해 국민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견지에서 관련 제도를 입법화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론권 보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 제도를 입법화시켜서 법제도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언론계의 자율수준의 강행규칙을 통하여 스스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식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의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해주신 각계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는 첫째, 중재절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과 둘째, 반론권과 관련해 반론의 주체와 객체에 따라 차별화를 두자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내용은 이번 토론회의 알찬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주제발표자와 어려운 토론을 진행하면서 각계의 견해를 잘 정리해 주신 사회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해외 시찰기

-호주 및 뉴질랜드의 언론피해구제기구 현황과 활동-

정 희 성
조사연구팀 차장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이병훈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호주신문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와 뉴질랜드 신문평의회(New Zealand Press Council)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기관을 시찰했다.

방문기간 동안 뉴질랜드 신문평의회(Sir John Jeffries 의장 및 Mary Major 사무총장, 호주 신문평의회(K.R. McKinnon 의장, Jack R. Herman 사무총장 등을 만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시찰에는 정희성 조사연구팀 차장이 수행했다.……………편집자 주

의 기능인 사회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언론개혁,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 공정거래여부 심사, 언론사주 구속 등 - 물론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만을 언급할 뿐이다 -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조용한 '제4부'로 기능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언론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호주, 뉴질랜드의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보다는 양국의 언론피해구제기관, 특히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를 중심으로 그 구성, 구제절차 및 근래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편집과 소유의 분리,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완전한 언론자유, 구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은, 흔히들 권력의 '제4부'라 칭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언론은 말 그대로 사회현상의 전달자로서, 여론형성의 도구로서만 역할하는 소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오세아니아 지역 언론에 대한 첫 소감이다. 물론 그것이 언론 본연

II. 호주의 언론 및 언론피해구제

1. 호주의 언론(인쇄매체) 현황 및 언론피해구제기구

호주¹⁾의 대부분 신문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전국적으로 7백여 종에 이르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행 부수도 미미

1) 호주는 New South Wales(sydney), Queensland(Brisbane), Victoria(Melbourne), Tasmania(Hobart), South Australia(Adelaide), Western Australia(Perth)등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구 Northern Territory(Darwin), Australian Capital Territory(Canberra)로 구성되어 있다. ()안은 주도(州都)



한 수준이다.

전국지로는 The Australian(132,145부), Financial Review(92,500부)지, The Daily Commercial News(80,000부) 등이 있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그 구제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율규제, 타율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호주도 물론 명예훼손법 등 일반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런 법적인 분쟁해결 절차 이외에 기타 법률이나 행정력에 기인한 타율적인 규제기구는 없다. 다만 매체사별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 회원사끼리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가 있을 뿐이다.

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는 지나치게 복잡하리만큼 그 구제절차나 피해구제기관이 세분화되어 있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에 따라 다르고 기사나 사실내용에 대한 불만이냐 광고에 대한 불만이냐에 따라 그 피해구제기관이다 제각각이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인위적인 규제에 의해 한 창구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피해구제기관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2. 호주신문평의회

호주신문평의회는 일반 시민 대표자, 언론 대표자, 의장을 그 구성의원으로 하며, 인쇄매체에 의해 설립되었고, 운영 재원도 전적으로 인쇄매체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으며 또한 정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어떠한 배타적인 간섭이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율적인 언론규제기관이다.

신문평의회는 주된 역할은 그 정관에도 나

타나듯 첫째, 호주에서 발간되는 인쇄매체(신문이나 잡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다. 단 그 불만사항은 기사나 사실내용에 국한된 것만을 다루고 보도내용 이외의 내용 즉, 광고 등에 대한 불만사항은 앞서 본 별도의 기구에서 처리한다. 또한 인쇄매체 이외의 보도매체에 대한 불만은 별도의 기구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언론자유에 위협적인 요소에 저항하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법적, 기타 인위적인 규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신문평의회는 불만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요 원칙을(Statements of Principles)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꼭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지 평의회가 평결이나 기타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연혁 및 구성²⁾

호주신문평의회는 인쇄매체 발행인들과 호주기자협회(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가 주축이 되어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견지에서 1976년에 발족되었다. 설립 초기의 주축이 된 회원사로는 호주 일간신문협회, 호주 비일간신문협회, 호주기자협회가 참여했다.

평의회의 정관은 평의회 의원(member)으로서 의장, 신문 발행인 대표, 현직 언론인 대표, 일반 시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장은 언론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 중에서 평의회에서 선출된다. 초대 의장으로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Sir Frank Kitto씨가 임명된 이래 의장은 법조인 출신이 독점해왔으나 학자 출

2) Australian Press council, 『Aims, Principles and Complaints Procedure』, 1999

신 Ken Mckinnon씨가 2000년 12월 1일 의장에 취임함으로써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 의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립 당시 평의회 의원으로는 의장, 일반 시민 대표 3인, 발행인 대표자 6인, 호주기자협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하여 총 13명이었다.

평의회의 역사는 회원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에 순탄하지는 않았다. 회원사들의 가입과 탈퇴의 부침이 심했으며 호주 최대의 언론 그룹인 John Fairfax Ltd는 1982년에야 회원사로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주요 언론그룹들도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설립 당시의 회원사였던 호주 일간신문협회 및 호주기자협회는 각각 1998년과 1987년에 탈퇴한 후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출범 당시와는 달리 현재 평의회 의원은 21명이다. 모두가 의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된다. 의장이외에 언론 출판계 대표 10인, 일반시민 대표 7인, 현직 언론인 대표 2인, 현직 편집인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할 것은 일반시민 대표 7인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언론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출된다는 것이고, 현직 언론인은 주로 어느 특정매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론 출판계 대표는 발행지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전국지, 지역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 분야별로 대표자를 추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의회 의원은 건축가, 은퇴한 교사에서부터 현직 언론사 간부에 이르고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서 활동하고 있다.

평의회는 그 산하에 불만처리소위원회, 언론자유수호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등 세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장, 부의장은 각 소위에 당연직으로 소속된다.

이 가운데 언론불만처리소위원회는 평의회

에 접수되는 불만사항이 평결단계에까지 이를 때 평결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평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기관이다. 위원은 평의회 의원 중에서 평의회 의장이 매달 개최되는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그때마다 임명하며, 위원 수에 관한 명시된 규정은 없고 단지 일반시민 대표가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2) 호주신문평의회의 불만처리 절차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때에는 인쇄매체에만 한한다. 또한 해당매체의 신문평의회 회원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호주 내에서 신문사, 잡지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불만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신문사, 잡지사가 발간하는 간행물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2000년 5월부터 불만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여 매체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사항이 접수된 건은 없다.

불만은 보도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도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자도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보도내용은 기사,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자투고, 사진, 만평 등을 포함한다.

평의회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다. 단 불만신청은 보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불만신청 처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해당매체에 먼저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의 속성상 당사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훨씬 효율적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경우 해당 매체의 충분한 설명 및 사과, 편집자への 편지, 정정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불만의 제기

양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한다. 이때는 매체명과 보도일자, 면수 등을 게재해야 하며 몇몇 대도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경우 판수까지도 기재하여 보도원문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만신청 사유를 게재해야하며 불만신청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신문평의회가 제시한 주요 원칙의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3) 불만제기 후의 절차

불만사항이 신문평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후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협상

대부분의 경우, 협상의 타결점이 보이면 이 단계에서 신문평의회 사무처에서 해당매체의 편집자에게 접촉하여 타결점을 모색한다. 실제 대부분의 불만신청이 이같은 예비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된다.

나. 다른 법적 권리의 포기 중용 및 자료보완 요구

사무처의 판단에 불만신청인이 법원에의 소송을 차후 염두에 두고 그 전 단계로 불만신청을 한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적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Mckinnon 의장의 말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불만신청인들은 법적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를 제출하고 평의회 절차에 따른다고 한다. 이는 평의회에 불만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 소송과는 무관한 선택사항이기에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둔 불만신청인은 굳이 평의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만신청건수의 20% 정도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불만신청으로서 부적절한 경우

불만신청사항이 주요원칙을 위반한 내용이 없어 불만사항으로 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무처가 판단할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른 기관 이첩

불만신청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처가 판단할 경우, 불만신청사항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고 이 사항을 불만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불만신청 내용으로 부적절하거나, 또는 타 기관에 이첩되는 건수는 약 20%에 달한다.

마. 해당매체 통보 및 대응

위 불만제기 후의 절차에서 불만내용이 타결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사무처는 이 단계에서 정식으로 해당매체에 불만신청 접수 사실 및 불만신청인이 제출한 기록 전부를 매체에 통보한다. 지금까지의 단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이 단계에서 서부터는 절차가 비공개로 보호되지 않는다. 통보받은 매체는 1주일 이내에 전화나 편지든 어떤 형태로도 최초의 응답을 해야 하며, 이후 사무처가 제시한 기한 내에 추가대응이나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처의 요구에 최대 2개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이한 것은 한

쪽 당사자의 의견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해 줄뿐이지 사건을 언제까지 종결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단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실제 불만사건의 40% 정도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바. 일반시민 대표의 조정

해당매체의 대응에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면 사건은 종결될 수도 있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평의회 의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대표를 사건의 조정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조정단계는 평의회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근자에도 도입한 절차이다. 이 조정과정에서는 양당사자의 직접 대면이나 전화, 서신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평의회 의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 단계 이전까지는 모두가 사무총장의 권한하에 사무처에서 모든 사건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제의 일차적인 해결은 사무처에 있다. 끊임없는 설득과 타협은 오로지 사무처의 몫이고, 해결분쟁의 극한 상황에 이르러 평의회 의원이 사건에 개입한다.

사. 불만처리소위원회의 심리

평의회 의원인 일반시민 의원이 조정을 해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지 못할 경우 불만처리소위원회의 심리단계로 넘어간다. 평의회는 앞서 본 것처럼 그 산하에 불만처리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평결은 평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그 결정이전에 불만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소위원회이다. 불만처리소위원회 위원은 매월 의장이 임명하는데 한가지 특징은 위원 구성은 반드시 일반시민 대표가 다수여야 한다는 점이다. 2001년 6월의 불만처리소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의장, 일반시민 대표 3인, 발행인 대표 1

인, 언론인 대표 1인, 편집인 대표 1인으로 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회는 매월 1번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때 불만처리소위원회도 개최된다. 불만처리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를 통보한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불만처리소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석여부는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단 사건이 불만처리소위원회의 단계에 이르면 사건의 양당사자는 더 이상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는 사건 진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언론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불만처리소위원회는 평결 초안을 작성하여 통상 뒷날 개최되는 평의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아. 평의회 평결

불만처리소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평의회 전체회의에서 평결한다. 평의회는 불만사항에 대해 일부 인정, 부분 인정 등의 평결을 내릴 수 있고, 불만사항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다. 또한 평결 내용에 덧붙여 평의회 의원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평의회로서는 평결내용을 해당매체가 반드시 게재하도록 할 권한이 없으며, 다른 무엇을 지시할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평결내용 게재를 요구하는 차원이고, 해당매체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그 평결내용을 자기 매체에 게재해오고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평의회는 평결내용의 공표를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평결에 대한 이의신청

양당사자는 평의회 평결내용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장은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여 평결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평결을 한다.

차. 평결내용의 공포

평결내용은 해당매체뿐 아니라 타매체에서도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해당매체에 먼저 보도할 권한을 주고 있다. 단지 평결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결내용에 해당매체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을 허용해오고 있다. 또한 평의회는 평결내용 전문을 평의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나 연간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3) 불만접수처리 현황

2000/2001년에³⁾ 접수된 불만건수는 총 413건에 달한다. 전년 회계연도에는 403건을 접수했고, 1988년부터 총 4572건의 불만을 접수 처리했다. 회계연도마다 보통 4백건 내외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했다.

2000/2001년에 접수된 413건의 불만사항 중 평결이 내려진 건은 6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평결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결되었다. Ken Mckinnon 의장도 “매년 4백건 내외의 불만신청을 접수하지만, 거의 80%가 평결단계 이전에 해결된다”고 자부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약 64.2%가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고 다음으로 전문직종사자 9.3%, 단체 8.5%의 순이다. 불만신청인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매년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불만신청사항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보면 기사의 부정확성(Inaccuracy)을 지적

하는 부분이 69건(1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불균형 43건(10.4%), 부당한 취재 38건(9.2%)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순위는 1988년 이래 접수된 전체 불만신청사항에 대한 순위 분류와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불만신청 사건 중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 건을 제외한 399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96건(24.1%)이 불만신청 후 해당매체의 적절한 대응으로 철회되었고, 일반시민 대표 의원의 조정으로 81건(20.3%)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77건(19.3%)은 불만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65건(16.2%)은 평결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평결에 이른 내용은 총 65건이지만, 한 매체의 여러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나 한 신청인이 여러 매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등이 있어 실제 평결이 내려진 건수는 42건이다. 그중 16건은 전부이든, 부분적이든 불만내용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26건은 평결에서 기각되었다.

III. 뉴질랜드 언론 및 신문평의회

뉴질랜드에는 각 지역별로 28개 일간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전국지는 없다. 대표적인 주요 일간지로는 New Zealand Herald(오클랜드, 21만 4천부), Auckland Star(오클랜드, 12만부), Dominion(웰링턴, 7만3천부)등이 있다. TV방송은 4개 채널(TV 1, 2 국영, TV 3, 4 민영)이 운영중이며 라디오 방송은 국영 Radio NZ 와 민영 RNZ 등 33개가 있다.⁴⁾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1972년 언론에 대한 불만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신문발행인들과 언론인들에 의해 설

3) 호주 신문평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다.

4) <http://www.mofat.go.kr/missions/Newzealand.nsf?opendatabase>

립되었다. 언론에 대한 불만 해결이 설립취지의 근본이 되었지만 또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인으로서의 고도의 직업적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언론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평의회 설립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몇가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호주신문평의회와 매우 흡사하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 의원은 의장을 포함한 6인의 일반 시민 대표와 5인의 언론산업계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의장은 전직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Sir John Jeffries씨가 맡고 있으며, 언론산업계 대표 5인은 뉴질랜드 신문발행인을 대표한 2인, 잡지 발행인을 대표한 1인, 뉴질랜드 기술인쇄제조노동조합(미디어 분야)을 대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전적으로 언론계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나 관여는 일절 배제하고 있다.

평의회는 호주신문평의회와 마찬가지로 불만신청인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있어서 불만의 근거가 되고, 또한 평의회는 판단기준이 되는 주요원칙을 천명하고 있다(Statements of Principles). 이 주요원칙이 언론사의 보도기준이 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평의회는 평결기준이 되는 만큼 언론사로서는 이 주요원칙이 기사 작성에 있어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원칙은 모든 기사는 정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정정에 관한 사항, 사생활보호, 인종·종교·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마지막 장에서는 평의회는 평결을 받은 매체는 반드시 평결내용을 보도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복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다.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는 호주신문평의회와 비슷하다. 개략적인 내용은 호주

에서의 절차와 비슷하므로 세별하기보다는 차이점을 위주로 하여 설명한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도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인쇄매체에 대한 불만사항만을 접수 처리한다. 그러나 호주보다 빨리 1999년부터 신문·잡지사 간행물의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도 불만사항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호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사항이 제기된 것은 없다.

불만신청인이 신문평의회를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다른 법적 소송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과, 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매체사에 먼저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어느 기한이내에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평의회는 통보를 받은 해당 매체는 14일 이내에 최초의 응답을 보내와야 한다. 또한 그 응답에 대해 불만신청인도 14일 이내에 대응을 해야 한다.

호주 신문평의회에서처럼 일반시민 대표를 조정자로 이용하는 절차가 없다. 신문평의회를 통한 언론사와의 접촉 후에도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문평의회는 평결단계로 바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2000년 한해동안 모두 75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1999년에는 75건, 1998년에는 85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불만신청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0년의 불만건수 중 평결단계에 이른 것은 총 45건으로 그 중 18건만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평의회 의장 Sir John Jeffries씨는 불만신청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평의회는 평결내용이 언론사에 보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평의회 역할에 대해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다.



IV. 맺는말

양국 신문평의회는 정부나 언론계 외부의 어떠한 배타적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가장 큰 금지로 여기고 있다. 이에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재정지원이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양국 공히 신문평의회 설립의 주된 목적을 언론 보도에 대한 독자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한다는 데 두고 있으면서도, 언론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정관에 명시하고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을 보호하는데 평의회의 주된 목적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하지만 평의회 내부적으로도 자성과 반성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신문평의회가 지난 1996년 그간의 불만신청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⁵⁾ 응답자의 59%가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신문사의 공개사과, 벌금부과 등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만신청에 임하는 언론사의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겨우 1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만약 평의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면 75%가 두 번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문평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해당매체에 강제할 권한이 없고, 설령 해당매체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할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 불

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문평의회는 호주의 자율규제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실패작'⁶⁾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문평의회는 평의회의 존치가 재원이나 기타 협력면에서 전적으로 언론사에 의존하는 만큼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자조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다.⁷⁾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다면 결국 국민은 그 언론의 자유를 의심하게 될 것이므로 신문평의회는 언론에 대한 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자율이냐 타율이냐 어느 것이 타당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없을 것이다. 신문평의회가 국민의 이익 기구로써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 타율에 의한 간섭이 개입되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타율이라는 그 의미는 시작만 타율이 지 그 속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해도 그 태생적 딜레마가 있는 만큼, 호불호(好不好)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그 시대적, 국가적, 문화적 상황에 걸맞은 언론의 규제기구만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다.

언론에 대한 자율 규제를 자부심으로 여긴다는 호주신문평의회 관계자의 "지금의 규제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다소 냉소적인 대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5) Australian Press Council, Australian Press Council Survey of Complainants, 1996.

6) The Sydney Star Observer, 17 June 1994.

7) Australian Press Council, Wither the Australian Press Council?, 1996.

의혹 · 폭로 중계보도의 문제점

류 한 호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지난 9월과 10월에 한국언론은 게이트천국이었다. 이용호 게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 정치권에서 어떤 비리의혹이 제기되면 언론은 그것을 게이트라고 이름붙이기 바빴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낙선 대통령의 하야까지 몰고 간 워터게이트를 연상케 하는 작명이다.

10·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비리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매체들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충실히 인용보도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정적으로 키워 주었다. 비리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은 꿈에도 그리던 신문 1면 톱을 장식하는 스타가 되었으며, 언론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선

정적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한편 그러한 폭로와 중계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 관련자로 실명 거론됨으로써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보도행태를 두고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폭로저널리즘이라고도 하고, 일각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거나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들은 혼돈상태에 빠지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뒤 10월 26일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출입기자들은 '한 식구'로 지칭되었으며, 선거승리의 공신으로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의혹 부풀리기가 한창일 때 한나라당과 세무조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언론매체가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공조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 일이다.

일련의 정치적 의혹제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언론의 객관보도의 논리에 함정은 없는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언론인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는가,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면책특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디까지 용납되는가 등이다.

객관보도와 미확인보도의 문제

언론보도에서 진실성이란 무엇인가. 존재하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이 진실 보도인가.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의 발표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진실보도인가. 아니면 사실의 본질과 이면을 충실히 탐색하여 사안의 전체상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것이 진실보도인가. 전자의 경우는 통상 객관보도나 사실보도는 될지언정 진실보도는 아니며, 후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진실보도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언론사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언론인은 수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의 주장은 있고, 다른 당사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진실확인이 어렵다. 특히 언론에서 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취재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낙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은 일부 수긍할만하다. 심지어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매체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중계보도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논리가 판치는 선거정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언론인들로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러한 제기된 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실확인 없이 중계보도하고 객관보도의 논리로 채색, 변명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위에 의지한 비겁한 책임회피

혹에 대하여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과연 충분히 기울였느냐 하는 점이다. 몇 개 되지 않는 사실들을 논리적 비약을 거쳐 엉성하게 꿰어 맞추거나, 일부 인사의 주장이나 설, 소문을 사실처럼 각색하는 식의 기사작성은 정당한 언론행위라 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진실확인절차를 게을리하고 그것을 객관보도의 논리로 채색하고 변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위에 의지한 비

겁한 책임회피다.

의혹과 문제의 제기는 언론의 중요한 임무다. 언론매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환경감시기능이란 사회 구석구석에서 존재하는 갖가지 사안들을 비판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의혹과 문제의 제기는 바로 환경감시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그 사회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은 언론매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환경감시기능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취재기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많은 증거와 사실들을 취재하여 뒤집힐 수 없는 사실로 확신한 뒤 의혹을 제기했다. 수많은 증거와 사실이 언론매체의 의혹제기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2001년 9월과 10월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의혹들 중 대부분은 진실확인 노력 없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중계하는 데 그치고 말았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일부 언론사가 정치인의 발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취재를 통해 발굴한 부분이 없지 않

았으나, 언론계 전반을 관통한 중계보도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안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확인보도는 언론매체의 무책임성과 관계가 깊다. 언론보도의 가장 핵심적 기준이 구체적 사실(fact)일진대,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특정인의 주장, 소문이나 설과 의혹을 진지한 취재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실은 언론매체들이 발언 당사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따옴표를 써서 제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눈에 두드러지게 잦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런 제목과 기사가 1면 머릿기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제목달기와 편집방법은 한편으로는 매우 생동감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언론매체의 선정성과 무책임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제목 달기는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이란 형사상의 소추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이 원내의 입법활동이나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발언이나 토론에 제약을 받게 되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해 이른바 절대적 면책특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국회란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나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에서의 공개적 토론행위와 관련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논리상 또는 면책특권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면책특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직무상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한 직무상 발언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직무상 발언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특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 직무인가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이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일련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공세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발언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도 면책특권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로 옳다. 그러나 법적으로 면책이 된다 해서 발언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국회 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도 면책특권에 대한 검토 후에 발언을 했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에 대

하여 정당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주문까지 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정당의 발언이고, 발언 이후의 사태 전개방향에 대해서도 정당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공세용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할 경우 그것도 보장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언론인의 면책특권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공식적 발언을 언론이 보도했을 경우 언론사나 언론인도 제한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 면책특권은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공직자의 활동에 관한 정보유통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해준다.

미국에서는 언론인은 국회의원과 같은 절대적 수준을 아니지만 제한적인 면책특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면책특권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 각 기관의 회의나 재판, 청문회 등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한 회

의에서의 발언이나 그밖의 활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그 요약인 경우에도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보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기자의 현실적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기자

의혹을 제기한 발언 당사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따옴표를 써서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편집은 언론매체의 선정성과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

가 보도과정에서 극도의 부주의를 범한 사실이 없어야만 면책특권이 보장된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언론사나 언론인의 제한적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 나라의 행정부는 국회의 공개적 회의에서 행해진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언론매체가 보도했을 경우는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자가 보도해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는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보호된다. 한편 이처럼 공공적 성격을 갖는 표현이라도 면책이 성립되려면 '진실한 사실' 이어야만 한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해에 관해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이라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형법은 언론에 대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혀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의혹제기 중계보도의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언

론인에게 적용되는 면책의 범위는 훨씬 좁아진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세간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사들은 국회의원의 발언 그대로를 보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우리 나라도 언론에게 미국과 같은 제한적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아직 법으로는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패를 예상하기 어렵다. 아마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이라는 면책사유를 문제된 기사들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행한 발언이 진실일 경우에 언론매체가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

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발언내용 그대로를 보도했을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이 다르게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언론인이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도있는 노력을 전개한 뒤에 보도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 악의가 없다면 면책이 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거기까지 면책의 범위가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진실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처럼 공식적 회의석상이 아닌 곳에서 행해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기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사 안에 국회의원 아닌 다른 사람의 위법적 발언내용이 첨가되었을 경우 기자의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자의 면책특권은 가급적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면책특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자는 모든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그 진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정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기자의 면책특권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공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언론매체가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대립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전개한 일련의 의혹 제기와 그에 관한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상당수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었다.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된 당사자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언론매체가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조용히 넘어갔다. 여기서 공

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한다.

공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좁게는 국회의원이나 고급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주는 급료를 받으면서 정치적·행정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넓게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든 공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는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당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반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에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매체는 주로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 당사자로서는 결코 원치 않는 일이지만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대가라 하겠다.

하지만 이번의 폭로정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안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언급되고 그것

이 확인절차 없이 언론매체의 의해 보도됨으로써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언론은 어느 경우에라도 프라이버시나 명예같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일련의 의혹폭로사태에서
언론인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아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았는지
치열하게 반성해야**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공인이 언론에 의해 한번 범법자나 부패혐의자로 낙인찍히면 제아무리 무혐의나 무죄로 규명된다 하더라도 그 낙인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비록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다 해도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으며, 공개된 프라이버시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언론보도의 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언론인들의 윤리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번의

의혹폭로사태에서 언론인들은 혹시나 국회의원이라는 권위에 의지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비록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윤리적·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뉴스보도에 서 진실추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고민이 사라지고 경박함, 센세이셔널리즘이 우세해지고 있다. 가십거리가 버젓이 기사가 되고, 별 것 아닌 것이 1면 머릿기사로 등장하는 반면, 중요한 것은 뉴스로 등장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언론매체의 상업성 추구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실종되어가고 있으며, 언론이라는 공공 영역이 언론자본과 언론인들이 지면과 시간을 자의적으로 농단하고 지배하는 사적 공간으로 탈바꿈해버린 탓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언론계의 화급한 과제이다. □

나의 소중한 공동체 경험

신 환 철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전북대 교수

필자가 전임강사 임명을 받고 교단에 섰던 80년대 초는 군사독재정권의 암울한 시기였다. 그렇지만 캠퍼스에서는 동료 교수들간의 열린 마음과 대화로 그 답답한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지금처럼 교수연구실은 칸막이 방으로 되어있었지만, 항상 연구실 문은 열려 있었고, 같이 점심 들면서 그리고 퇴근하여 소주잔을 돌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가족사의 이야기까지 속내를 드러냈었다. 서로의 정이 통하는 공동체의 생활 그 자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불기 시작했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서명작업으로 교수사회의 편가르기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본래 마음을 열기가 힘든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는 대학공동체는 교수업적 평가제,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 등으로 철저히 붕괴되어버렸다. 이제 교수는 같은 학과 · 전공 동료들간의 대화도 중단한 채, 그렇게 혼자 연구하고 살아가는 캠퍼스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장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촌락 공동체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으며,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조직성원간의 우리 관계는 이미 그들 관계로 변질되었다. 최근 성과급 반납소동을 겪었던 교직사회의 공동체 붕괴는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공동체는 가족성원간의 역할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성마저 훼손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인정과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도래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기능인이 지배하는 일차원적 사회를 비판하는 인본주의적 입장 이외에 최근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도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나 지역, 그리고 직장 어느 곳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식 없이는 더 이상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귀중한 공동체의 경험이 있다. 계나 두레, 품앗이, 그리고 조선시대의 향약과 해방이후 전개되었던 각종 운동, 특히 4-H와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근대화과정과 IMF이후 신경제의 도입으로 공동체 문화의 내부는 붕괴되고, 그 겉모습만 무슨 무슨 전통 살리기 운동이나 이벤트성 지역축제로 변질되어 대중 앞에 소개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인간적 조직 구상의 첫 출발은 작은 공동체의 훈련에서 시작

공동체의 전통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서도 안되겠지만, 그것을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취급하여 말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도 한 때는 사람들이 살아숨쉬는, 그리고 서로간의 감정이 이입되는 인간적 조직의 구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조직성원 서로간에 마음을 열어 자유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조직, 그리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를 추구하는 인간적 조직을 꿈꾸었던 것이다.

인간적 조직에서는 개개인은 잃어버린 주체의식을 되찾고, 닫힌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타주의가 싹트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감정의 고리로 연계되는 공동체의식을 드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동체 사회에서는 구성원 서로간에 신뢰하고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시민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치졸한 경쟁으로 공동체의 붕괴는 물론 이렇게 귀중한 사회적 자본이 사라져 간다면 인간중심의 시민사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정신 없이 돌아가는 소용돌이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다.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져볼 여유도 없이 몇 해를 보내다가 금년 2월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잊혀진 공동체의 의식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중재위원 다섯 분을 포함한 일곱 명의 가족성원은 연령도 다르고, 성장 배경은 물론 현재 종사하는 업무도 서로 다르다. 위원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 중재신청 사건을 심의하지만, 모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거의 대부분을 합의로 이끌어낸다.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위원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가고 모르는 사이에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있었다. 중재회의를 끝내고 나서 거의 모든 식구가 참석하는 저녁식사와 함께 나누는 정담은 위원들간의 신뢰를 깊게 해주면서 우리는 한 식구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인간적 조직구상의 첫 출발도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공동체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열린 구조를 통해 더 큰 공동체로 연결되면서 시민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붕괴된 사회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든든한 기반을 이루게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공동체의 훈련은 나에게서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으며, 이 경험과 함께 인간적 조직 구상에 또다시 남은 정열을 불태울까 한다. □

방송국 아나운서의 학생시절 아르바이트 경력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아사히 TV의 한 여성 아나운서가 자신이 학생시절에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어 초상권까지 침해되었다며 講談社를 상대로 총 2,63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제13부는 2001년 9월 5일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 770만엔의 지불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다. 그러나 방송국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나운서가 학생시절에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했는가의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의하면 講談社가 발행하는 ‘週刊現代’는 1997년 9월 25일호에서 이 아나운서가 고급 술집의 종업원이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동사 발행 ‘프라이데이’(99년 10월 15일호, 99년 10월 22일호)와 ‘週刊現代’(99년 10월 16일호)는 원고가 학생시절에 다른 잡지 게재용으로 촬영한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게재했다.

‘週刊現代’의 기사에 대해 공익성을 부정한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講談社측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인물이 진술한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고급술집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그 시기에 원고는 매일 극단에 나가고 있었으므로 술집

에 근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확인 취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사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른 잡지 게재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1. 9. 11.)



영국 PCC, 프라이버시는 거래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른 신문사와 사진 촬영에 대해 상업적 거래를 한 신청인의 불만 신청 기각

영국 PCC(The 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신체 일부가 연결된 일란성 쌍둥이의 신체분리 수술 후 살아남은 Gracie Attard의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게재한 Manchester Evening News(이하 ‘MEN’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모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하여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MEN의 자문 변호사는 신문사가 사진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PCC의 결정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하기로 한 이 지역신문의 결정은 아이의 사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350,000파운드에 거래하기로 한 News of the World, The Mail on Sunday, Now magazine지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PCC는 평결에서 “보도실천요강에 명시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조항은 불만 신청인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는 또한 PCC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정보나 사진을 제공하거나 상업적 거래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있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도실천요강의 보호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상식선에서 항상 판단하려 한다고 강조한다. PCC는 이번 평결을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프라이버시는 어느 한 사람의 계약이나 협정으로 매매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평결을 통해 강조했다.

PCC는 쌍둥이 자녀의 부모 등이 신청한 세 건의 불만신청을 기각했고, 별도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신청은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다는 이유로 평결하지 않았다.

MEN의 편집장인 Paul Horrocks씨는 “이것은 상식의 승리로 정당하고 전형적인 특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원이 배타적인 상업적 거래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PCC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Gracie는 서로 신체가 연결된 쌍둥이 형제로부터 분리되는 수술을 받은 후 Manchester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법원 명령에 따라 신원을 보호받았다. 이 아이의 쌍둥이 형제 Rosie는 사망했다. 이후 쌍둥이의 부모인 Attard씨 부부는 신원보호 해지를 법원에 요청함과 동시에 광고 영업인 Max Clifford씨를 통해 특종사진을 거래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한 것이다.

MEN 취재기자는 생존한 Gracie가 퇴원하는 날, 의료진 취재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Gracie가 부모들과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로변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아이의 부모인 Attard씨 부부의 변호사는

사진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청구를 제기했고 판사는 문제의 사진은 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모들은 MEN의 사진은 병원에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Press Gazette, 2001. 10. 12.) □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내용 이상의 사항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한 입증취재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사린의 제조에 관한 연구를 조직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종교단체 ‘아레후(구 움진리교)’가 NTV를 상대로 1,000만엔의 손해배상과 정정방송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제48부는 2001년 9월 4일 “경시청公安부의 발표내용을 넘어선 보도로, 충분한 입증취재도 되어있지 않았다”고 지적, NTV에 대해 1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한편 정정방송 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정방송의 방법을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 의하면 NTV는 2000년 5월 25일, 뉴스프로인 ‘뉴스플러스 1’에서 “여기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움’이 아직도 ‘사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캐스터의 발언으로 시작되는 보도를 했다. 보도내용은 경시청公安부의 기자회견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발표내용은 ‘사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서는 캐

스터의 발언이나 영상, 자막 등에 의해 기자회견 발표내용을 넘어서는 과장·가공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NTV는 ‘아레후’에 대해서도 취재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당국의 공식발표 내용 이상의 것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기관의 충분한 입증취재가 필요하다. NTV의 취재는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1. 9. 11.) □

일본 최초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관련 항소심에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뒤집혀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컴퓨터 통신네트워크 ‘니프티 서브’의 여성 회원이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메시지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게재한 남성회원과 운영회사 ‘니프티’, 전자게시판 운영책임자(시삽) 등을 상대로 총 1,0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남성회원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 97년 5월의 도쿄지법의 1심 판결을 지지하여 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전자게시판 운영회사와 게시판의 운영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의 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이 소송은 PC통신 네트워크상의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이 될 발언에 대한 게시판 운영책임자의 삭제의무, PC통신의 주재자의 법적 책임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일본 최초의 재판이다.

판결에 의하면 남성회원은 93년부터 94년에 걸쳐 ‘니프티’ 내 포럼의 회원이었던 여성에 대해 완전한 범죄자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여성회원은 이 남성회원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으며 전자게시판 운영책임자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문제발언을 삭제할 의무를 태만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판결은 여성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세피코에게 총 50만엔의 손해배상 지불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전자게시판 운영책임자의 책임에 대해 “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비방, 중상 등의 문제발언을 삭제할 권한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 ①문제발언에 대해 즉각 삭제하지 않고 논의를 거듭하여 발언의 질을 높인다는 운영책임자의 포럼운영방법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②운영책임자는 문제발언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남성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성회원의 변호사의 삭제요구에도 응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삭제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책임자에 대한 삭제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新聞協會報』, 2001. 9. 18.) □

일본, 명예훼손소송 위자료 고액화 추세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배상판결이 점차 고액화 경향을 보여 올해 들어 500만엔 이상의 배상판결이 8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높아가고 있는 인권의식을 배경으로 “고액화는 당연하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정치인 등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의학적 해명과 함께 재판관의 이해가 깊어진 것이 고액화의 한 요인이다.”(田中早苗 변호사)

▲“배상액이 높은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일본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훨씬 넓게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가 등 공인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가 언론사측에 있다는 것을 공인측이 입증해야하는 법리가 확립되어있다. 일본에서는 공인에 대해서도 언론사측이 입증책임을 진다”(上智대학 田島泰彦 교수)

▲“지금까지 배상액이 너무 적었다는 것은

틀림없다.”(朝日신문 田中 徹 법무부장)

▲“인권존중이라는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당연하다.”(산케이신문 遠山 叡 법무실장)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법원이 정치가 등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액화의 배경을 국민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日經신문 秋吉穂 법무실 차장)

▲“잡지에 대한 규제강화를 노리는 정치가와 관료의 의도가 엿보인다.”(小學館 山了吉 총무국 총지배인)

▲“관례가 축적되면서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최근의 고액화는 지나치게 성급하다. 재판관의 재량의 폭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도쿄대학 浜田純一 교수)

▲“지금까지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았으므로 지금과 같은 정도의 고액화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山川 변호사)

(『新聞協會報』, 2001. 9. 25.)



명예훼손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2001년 1월 이후 보도관련)

판 결 일	원 고	피 고	배 상 액	대 상 매 체
2월 26일 도쿄지방법원	大原麗子씨 (여자배우)	光文社	500만엔	「女性自身」 (2000년 3월 7·14일 합병호)
3월 27일 도쿄지방법원	清原和博씨 (프로야구선수)	小學館	1,000만엔과 사죄광고	「週刊ポスト」 (2000년 2월 4일호)
7월 5일 도쿄지방법원	大原麗子씨 (여자배우)	光文社 (항소인)	500만엔	*上記, 2월 26일자 참조
7월 16일 오사카지방법원	학교법인 오사카 경제법률학원과 동대학 부학장	문예춘추와 집필기자	학원에 200만엔, 부학장에 300만엔	「週刊文春」(1999년 9월 30일호 이후 합계 6회의 기사)
7월 18일 도쿄지방법원	野中廣務씨 (정치인)	日刊現代	500만엔과 사죄광고	「日刊現代」 (2000년 9월 6일, 8일호)
8월 28일 도쿄지방법원	高尾嶮 豊씨 (가수)의 처 (피항소인)	프리랜서 (항소인)	500만엔과 사죄광고	「夕刊후지」(1994년 4월 5일~ 6월 26일의 연재)외
9월 5일 도쿄지방법원	龍岡愛梨씨 (아사히 TV 아나운서)	講談社	770만엔(초상권 침해 포함)과 사죄광고	「週刊現代」 (1999년 9월 25일호)외
9월 21일 도쿄지방법원	桑田真澄씨 (프로야구선수)	講談社	600만엔과 사죄광고	「週刊現代」 (1999년 9월 18일, 25일호)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람직.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교감의 전출 내신평가를 거부해 전주시 교원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전북중재27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문 철 웅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1. 9.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북일보 : 『징계받아 감정상한 교장, '교감 전출 내신 거부' 물의』 제하의 기사
(2001년 8월 29일자 18면)

내 용 : 전주교육청의 9월 정기 교원 인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한 교장의 '오기'에 발목이 잡혔다. 학교 운영에 물의를 빚어 최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주 모 초등학교 문모 교장이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 교감의 전출 내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개학을 3일 앞둔 28일 현재까지 전주시 교원인사가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전주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2년 이하 교원 전보 인사는 학교장 내신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 내신 없이는 인사권자인 교육장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전주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다.

전주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비 문제 등 학교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문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문교장은 최근 도교육청 징계위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년을 앞두고 견책이라는 징계로 불명예를 안은 문교장이 이에 감정이 상해 현 교감의 타학교 전출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청은 문교장과 일부 교사 및 학부모들간에 오랜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 교감까지 관련됨으로써 학교 분위기의 쇠신을 위해 교감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사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식 시교육장도 이 학교 학부모 등에게 9월 정기인사에서 교감 교체를 약속했다.

50명선에 이르는 전주교육청 인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물의'를 일으킨 한 교장의 비협조로 미루어지는 데 대해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은 당사자 개인의 '아름답지 못한' 문제와 함께 2년 이하 교사 전보의 교장 내신권을 규정

한 전주교육청의 인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주우전초등학교 교장으로 전북일보 8월 29일자 사회면 『징계받아 감정 상한 교장, '교감 전출 내신 거부' 물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전주우전초등학교사태’는 학교경영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무처리에 있어서 착오나 방법의 미숙에서 기인된 것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으며, 그로 인해 3명의 전교조 교사와 일부 그들이 담임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들이 교감을 전보조치토록 불법적·집단적으로 8월 1일과 3일 전주교육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교육청 교육장이 인사원칙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교감전보조치)를 수용한데서 문제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사내신은 이미 8월 11일 끝났으며, 신청인의 징계결정은 8월 27일이었다. 그리고 교감전보는 전주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이루어지는 것이며 감정이나 인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인사관리 기준에는 교감의 전보 기본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본교 교감은 본교 근무경력이 1년이므로 만일 교감을 내신한다면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교감은 ‘우전초등학교 사태’의 한 축에 있는 사람으로 3명의 교사를 제외한 전 교직원이 전보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집단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고, 신청인도 교감이 남아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전초등학교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보내신

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 내용을 단 한번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도하여 우전초등학교는 물론 학교장까지 명예를 훼손시켜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전북일보가 지난 8월 29일자 사회면에 『징계받아 감정 상한 교장, '교감 전출 내신 거부' 물의』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교육청의 9월 경기 교원 인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한 교장의 ‘오기’에 발목이 잡혔다 ~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 교감의 전출 내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둔 ‘물의’를 일으킨 한 교장의 비협조로 미루어지는데”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전 교직원과 협의(집단서명)된 바에 따랐고,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무시하고 전보조치하려 했던 전주교육청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철웅 씨는 ‘징계받아 감정이 상하여 교감 전출 내신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전주교육청 관계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2001. 8. 29일자 위 제목의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문 철 웅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전북일보는 지난 8월 29일 18일자 『징계 받아 감정 상한 교장 '교감 전출 내신 거부' 물의』제하의 기사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감정이 상한 전주 모초등학교 문모 교장의 오기로 말미암아 전주교육청의 9월 정기 교원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문모 교장이 해당 학교의 교감에 대한 전출 내신을 거부한

것은 전교조 교사 3명을 제외한 전 교직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교감을 전보 조치하러 한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교감에 대한 전출내신을 거절한 것이지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감정이 상하여 전출내신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반론보도 신청인 문 철 웅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1년 9월 12일자 18면에 상가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전주시 9월 정기교원인사 지연)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1년 9월 12일자 1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학교측이 급수를 폭행한
가해학생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시의원이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30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동구중학교 (교장 임 병 춘)

피신청인 : 신한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1. 9.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신한일보 : 『여중생들 동료 3시간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 (2001년 8월 31일자 10면)

내 용 : 경기도 구리시 안창동 동구중학교 (교장 임병춘)에서 여중생들이 같은 반 급우 여학생을 집으로 유인, 무려 3시간 동안 감금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내폭력이 위험수위에 처해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폭행사건에 가담한 여학생 중 한 명인 C모 양의 부모가 구리시의회 모의원으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차원에서 겨우 노력 봉사 5일의 근신조치에 그쳐 폭력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폭력가해자 학생들의 학부모는 사건발생 50여 일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치료보상에 대한 합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피해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평소 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자처하는 이 학교 2학년 한모 양 등 4명의 여중생과 남중생 2명 등 모두 6명은 같은 반 친구인 차모 양을 평소 어울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모 양의 집으로 유인, 감금하고 김모 군 등 동료 남중생 2명이 지켜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무려 3시간동안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따귀를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한양대병원에서 1주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방의 한 요양원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가해학생들은 지난 7월 25일 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호관찰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동구중학교 임모 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학교 고유 권한이라며 학교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언론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교권침해다”라며 교장실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주거침입이니, 교권침해니 하며 횡설수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동구중학교 교장으로서 신한일보 2001년 8월 31일자 『여중생들 동료 3시간 집단 폭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이 학생폭행사건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고, 모 지방일간지에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으며 가해학생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거주지역 상담자원봉사자에게 가서 상담 지도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상담지도를 받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지금은 모두 등교하여 종전의 친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뒤늦게 피신청인측 기자가 본교 교장실에 와서 취재를 해 갔다.

학교에서는 기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학교선도위원회의록까지도 보여주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학교선도규정에 따랐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했던 교육적 조치와의 형평을 유지하며 학생의 처벌 수준을 조절하여 지도한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사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임도를 떨어뜨리고,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장을 모독, 교육자로서의 입지를 훼손하는 등 학교교육을 붕괴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기사이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8월 31일자에 『여중생들 동료 3시간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더구나 이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C모 양의 부모가 구리시의회 모의원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대한 선도차원에서 겨우 노력봉사 5일의 근신조치에 그쳐 폭력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와 “교장실에서 취재기자에게 주거침입이니, 교권침해니 하며 횡설수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동구중학교 및 학교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학교선도규정에 따라 가해학생 모두에게 교내 노력봉사 7일을 명하였으며, 동구중학교장은 본지 취재 기자 앞에서 횡설수설했다고 과장, 허위 보도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8월 31일자 10면 ‘여중생들 동료 3시간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구리시 동구중학교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가해학생들에게 겨우 노력봉사 5일의 미약한 근신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구중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는 학교선도규정에 따라 교내봉사 7일의 근신조치를 내린 것이며, 이러한 징계는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사건에 관해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임모 교장이 교권침해를 내세우며 횡설수설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교장은 기자에게 학교측이 선도적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점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한일보’ 사회2면에 게재하되, 2001년 9월 20일 이내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한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1년 9월 18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급조되었으며, 문중의 족보도 조작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31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온양정씨 정량공파 종중
(대표 정 화 영)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1. 9.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2001년

8월 19일 22:00)

내 용 : >나레이터 : 혹시 집안의 족보가 위조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자식의 성화에 못이겨 뿌리 찾기에 나선 한 아주머니는 자기 문중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를 자꾸 없애는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중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텐데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 한 아주머니의 족보전쟁.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법원에 오가기까지 10여 년 세월동안 거대 문중과 홀로 맞서 싸워온 온양 정씨 종가집 맞먹느리 장금자 씨의 족보전쟁을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흔한살 김재동 할아버지, 서있가조차 힘들어보는 할아버지가 마을 뒷산에 애국지사의 묘가 있다며 취재진을 이끽니다. (중략)

>나레이터 : 자녀들의 뿌리 찾기에 나선 장금자 씨는 마침내 자신이 정술교의 3대 종부이며 아들은 4대 종손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상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들 묘자의 뿌리 찾기는 그러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굴절되고 있었습니다. 온양정씨 선조 묘소 수습기가 있던 천안시 백석동 일대입니다.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면서 온양정씨 몇몇 사람들이 서둘러 문중을 구성해 토지보상금 수습역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머지 열아홉기에 대해서는 자기 조상묘가 아니라며 무연고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조상의 뿌리를 찾던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장금자 씨는 더 이상 조상묘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했고 천안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결국 종합운동장은 부지 한복판에 묘지와 자연녹지를 갖춘 이색적인 운동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150억원대의 온양정씨 땅이 수용된 천안시 쌍용동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도 토지보상금을 받고 마구 조상묘들이 파헤쳐

졌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사라진 무덤들을 확인하던 장금자 씨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남의 무덤이라며 없앤 산소는 하나같이 종가집인 장금자 씨와 그 인근 후손들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것인 반면 현재 문중을 이끌고 있는 쪽의 선조들의 묘소는 모두 보존돼 있었습니다. 장씨는 그들이 온양정씨 후손이 아닌 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씨가 찾아간 곳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측은 현존하는 온양정씨의 6가지 족보를 구해서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23년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사라져가는 조상의 묘를 지켜야 겠다며 장씨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문제가 된 문중 사람들의 호적을 일일이 족보와 대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5년 여에 걸친 자료수집 결과 장금자 씨는 그들이 호적을 변조해 끼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씨는 호적정정 신청을 냈고 천안지원은 8개월만인 지난달 직권으로 이들의 호적말소를 결정했습니다. 종중을 주도한 사람들이 호적을 옳긴 과정이 명백하게 잘못 끼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나레이터 :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문중대표들은 단체로 2580을 찾아와서 장금자 씨를 성토했습니다.

▷문중종원 : 남의 호적을 가지고 자꾸 그거를 하다보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적은 어디까지나 법원측에서 거론해야지 개인의 호적을 장금자 씨가 누구네 호적이 나쁘다 잘됐다 거론하고 덤비는 것은, 침범하는 것은 솔직하게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문중종원 : 해방되던 해부터 제가 이장을 보고 그 동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이란 것이 중간에서 생겼기 때문에 막 만들어

도 넣고 이렇게 꿰맞추고 그냥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로 되고 이랬었습니다.

▷나레이터 : 그러나 법원의 호적정정 결정이 내려진 만큼 10년을 끌어온 온양정씨 족보분쟁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2001. 8. 19. 방영된 MBC-TV의 '시사매거진 2580'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자에게 신청인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정영훈, 장금자)의 주장과 신청인측의 반박이 기사에 반영되어 기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도내용은 거의 대부분 상대방측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지난 8. 19자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족보뿌리찾기」 제하의 보도내용 중 다음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온양정씨 정랑공파 종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1. “천안시 백성동 일대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면서 온양정씨 몇몇 사람들이 서둘러 문중을 구성하여 토지보상금 수십억원을 타갔습니다.” 라는 보도에 대한 반론 : 온양정씨 정랑공파종중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서둘러 구성된 것이 아니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종중으로 성립되어 활동하면서 천안시 백성동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부지로 편입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온양정씨 정랑공파 종중은 자손이 번성하여 하위시파인 진사공파 종중이 조직됨에 따라 백성동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진

사공과 종중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는 진사공과 종중에서 수령하였습니다.

2. “천안시가 상대방(정영훈, 장금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합운동장 부지 한복판에 묘지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 정영훈, 장금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영훈, 장금자가 관할 쌍용2동사무소에 자신이 직계장손이라고 주장하고 분묘이장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였는 바, 이 사실을 안 온양정씨 정랑공과 종중에서 항의를 하자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류되었으며, 그후 관련 민사사건이 종중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당장 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

3. “천안시 쌍용동 일대의 조상묘들이 토지보상금을 받고 마구 파헤쳐졌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 천안시 쌍용동 소재 종중소재 임야에 있던 묘지는 종중에서 천안시의 정식 이장허가를 얻고 대체임야로 구입한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 산 33의 1 임야로 이장하였으며 (45기), 이때 4~5기의 묘소는 무연고 분묘로 처리하였습니다.

4. “1923년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이 내려진 만큼 10년을 끌어온 온양정씨 족보분쟁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 첫째, 상대방은 정신문화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1923년도의 족보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위 족보는 일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둘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호적정정결정은 1923년의 족보가 위조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

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단지 정의호의 본적지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호적의 기재 중 종전 호적의 기재에 배치되는 부분은 법원의 직권정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호적에 새로 등재된 정의호의 아들 정한영, 정선영의 기재사항을 말소하라는 결정내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호적정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족보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 8월 19일에 방송한 ‘족보 뿌리찾기’ 보도와 관련하여 온양정씨 정랑공과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온양정씨 정랑공과 종중은 천안시 백석동 일대의 토지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서둘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종중을 형성해 선조들의 시제와 분묘 등을 관리하는 등 종중으로서 활동하던 중에 천안시 백석동 일대의 종중 소유의 토지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위치한 묘소의 위치도 한복판이 아닌 상단부에 위치해 분묘의 관리나 종합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1년 10월 30일 이전에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보도내용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본 건 중재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더 이상 본 건 중재대상보도와 관련된 화면과 주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2001년
10월 28일 22:00)

내 용 : 8월 19일에 방송한 '죽보 뿌리찾기' 보도와 관련하여 온양정씨 정랑공파 종중은 천안시 백석동 일대의 토지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서둘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종중을 형성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묘소의 위치도 종합운동장 한복판이 아닌 상단부에 위치해 분묘의 관리나 종합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이 선거 등 주요정치 일정에 대비해 당과는 별도의 비선조직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32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정 군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1. 9.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1) 『민주 '선거 비선조직' 논란』 제하의 기사 (2001년 8월 27일자 1면)

내 용 : 민주당내에 10·25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 등 주요 정

치일정에 대비한 비선(秘線)조직이 구성돼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비선 조직은 당과는 별개로 극비리에 작업을 진행, 청와대에 직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여당 공조직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균환 총재특보단장이 주도하는 이 비(秘)조직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서울시장 및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국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민심동향·여론조사 등을 지난 달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조직에는 현재 김민석 의원과 연청회장 출신의 김덕배 의원 등이 참여해 각각 기획과 조직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예정된 서울 구로울·동대문을 지역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분석결과도 논의,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새로운 비조직의 구성은 지난 5월 정풍과 의원들이 내세운 비선그룹 퇴진과 공조직 중심의 당 운영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비조직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선후보 경선 중립과 탈계파를 표방하며 내달 1일 발족할 예정인 '중도개혁포럼'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포럼의 구축 배경을 놓고 대선 주자간 갈등도 예상된다. 사무총장은 "선거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총장이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당의 공식기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비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3주전 모임을 갖고 몇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당내 인사라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뿐”이라며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여 갈등 '불똥'튀긴 '선거 별동대』 제하의 기사 (2001년 8월 27일자 3면)

민주당 정균환 총재특보단장이 주도하는 여권 내 비선조직의 탄생은 다가오는 정치세대·소사를 앞두고 폭발력이 적지 않다. 가깝게는 10·25 재·보선부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당경선, 지방단체장 후보 선정까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장(場)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단장과 함께 후보 인선 작업에 관여, 이 방면에 '노하우'가 있는 인사 중 정풍운동에 가담한 정동영·정동채 의원이 배제된 점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들은 우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서울시장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장 후보에 누구를 낼 것인가를 정밀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졌다. 비조직에 참여한 한 의원은 “서울시장에는 당선이 순탄한 유력 후보를 내고,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원원전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이 김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활동반경을 넓히게 될 경우 내년 대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 자체로도 폭발성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정권의 핵심세력인 동교동계가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동교동계를 업고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눈앞에 닥친 10·25 재·보선 후보

에 대한 정밀분석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인지도가 높은 사회 각계인사들을 여러 명 대입시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강자(서울지방경찰청 방법과장) 전 중앙경찰서장이 구로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2배 가까이 앞지르는 사실을 확인,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김중권 대표의 출마 결정을 망설이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3)『'비선' 돌출에 여 술령』제하의 기사 (2001년 8월 28일자 5면)

10·25 재·보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민심동향을 전하는 민주당내 일부 '비선활동'이 알려진 데 대해 27일 대선주자들과 소장파들은 여러 갈래의 반응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선활동은 안된다”는 우려의 시각과 “대통령 보좌범위는 광범위한 것”이란 수군의 목소리가 교차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정균환 특보단장과 김민석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지역구 고창, 부안군)으로서 같은 당의 총재특보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총재특보단장이란, 새천년민주당의 당헌 제30조 및 당의 중앙조직규정(2000. 1. 26.제정, 당규 제3호)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기구로서 당의 다른 조직과는 별개로 총재에게 비공개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헌 당규상 충분히 공식

적으로 보장된 적법한 통로가 있고 활동영역이 있는데 별도의 비조직이란 있을 수 없고 있을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 기사의 보도 이후 당내의 건전한 양심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신청인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비조직이나 조직·운영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고 또 신청인의 지역구 주민들이나 일반국민 대다수들도 이러한 기사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어 유권자 및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한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명예훼손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나아가 새천년민주당을 당의 공식조직의 활용과는 별도로 사조직처럼 은밀하게 비선 라인이나 가동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오해하게 하여 당의 명예훼손의 정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은 모름지기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단지 몇몇 사람을 인터뷰하여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외에 객관적인 검토작업도 병행하여 신중히 결론을 내린 후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측 소속기자는 정작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직접 문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허위보도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보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 반론보도를 청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대제목 : 반론보도문
- 중제목 : 민주당, 선거비선조직 없는 것으로 밝혀져
- 소제목 : 정균환 의원은 총재특보단장으로서 대통령에 직보는 공적 업무의 일환, 구로을 재선거 후보 여론분석과 정균환 의원은 무관

· 내 용 : 경향신문은 2001. 8. 27. 『만주 선거비선조직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여갈등 '불똥'튀긴 '선거별동대』라는 제목으로 3면에, 2001. 8. 28. 『'비선' 돌출에 여 술령』이라는 제목으로 5면에 걸쳐, 마치 정균환 의원이 민주당 내에 비선조직을 만들어 별도로 청와대에 직보하고 있으며, 김민석 의원, 김덕배 의원이 그 멤버이고, 정풍운동에 가담한 정동영, 정동채 의원은 배제하였으며, 그 핵심멤버가 중도개혁포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동교동계를 업고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선조직의 퇴진과 공조직 중심의 당 운영이 어느 때보다 강조,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하는 "제2의 비조직"의 탄생은 당내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 비조직이 앞으로 내년 대선후보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은 물론 10·25 재선후보에 대한 정밀분석도 병행하고 있고, 전 중앙경찰서장 김강자와 김중권 대표를 저울질하는 등 이 비조직이 선거와 관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한 정풍운동이 이 비선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중도개혁포럼과 연계되어 결국 대선후보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대선주자들 사이와 의원들 사이에 이 두 조직이 예민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총재특보단은 새천년민주당의 당헌 제3조,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23조에 규정된 공식기구로서 정책 및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의견 등을 총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공식적으로 보장된 통로가 있고 활동영

역이 있으므로 별도의 비조직은 필요하지 않다.

특히 무엇보다도 당운영이 공조직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거스리면서 까지 필요성이 없는 비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균환 의원은 비조직을 구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비조직은 절대 존재하지 아니하며 비조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모든 내용은 당연한 결과로 허위보도이다. 이러한 보도로 정균환 의원은 그 명예가 훼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우선 당의 특보로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 25-30명이 정식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고, 따라서 김민석 의원의 활동은 특보로서의 활동이지 비선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다.

김덕배 의원은 당의 특보가 아니고 그의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새천년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역할에 의한 것이며, 정동영 의원과 정동채 의원은 특보로 임명된 일이 없다. 또한 동교동계를 엮고 활동할 것이라는 보도내용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풍운동참여자와 동교동과 연계된 비조직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중도개혁포럼은 당의 장래를 걱정하는 당 중진인사들의 순수 친목모임인 바, 이러한 비선 조직의 핵심멤버와 관련 운운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선거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총장이 알아야 될텐데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라는 박상규 총장의 발언도 그러한 비조직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인데도 이를 총장도 모르는 비선조직이 존재한다는 뉘앙스로 인용하

였고, "사실이라면 당의 공식기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정균환 단장은 7월 18일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재선거 등 선거관련 활동은 당 조직강화 특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언명한 바 있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로월에 어떤 인사가 당선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론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공적인 업무로서 당내의 조직기획국에서 수행한 업무이고, 정균환 의원이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김강자 전 중앙경찰서장, 김중권 대표의 저울질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또한 서울시장에는 당선이 순탄한 유력후보를 내고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지사선거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특보단이 당내의견을 절차에 따라 수렴한 후 취합하여 공식 건의한 내용으로 당에서는 공개된 의견이다.

지난 번 이와 다른 내용의 보도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사로서 이와 같이 바로 잡으며 지난 번의 기사내용은 정균환 의원의 개인 및 중도개혁포럼, 나아가서는 당을 은밀하게 사적인 통제조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 새천년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보도의 행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청구인 국회의원 정균환

합의사항

· 주제목 : 반론보도문

· 부제목 : “민주당, 선거관련 비선조직 없다”
 · 내 용 : 경향신문 2001년 8월 27일자 1면 『민주당 선거비선조직 논란』 및 2001년 8월 28일자 5면 등 민주당 내 비선조직 관련 기사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는 정책 및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의견 등을 총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공식기구인 총재특보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비선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균환 의원이 정풍운동에 가담한 의원들을 배제한 채 김민석 의원 등을 포함한 중도개혁포럼의 멤버들을 주축으로 민주당 내 별도의 비선조직을 만들어 동교동계를 업고 활동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보선후보에 대한 정밀분석까지 병행하고 있어 당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

하는 경향신문 9월 27일자 4면(정치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인 2001년 8월 27일자 1면 『민주당 선거비선조직 논란』 제목 기사의 소제목(김민석·김덕배 의원 등 참여 당조직과 별도로 10월 재보선·대선경선 등 대비…과장 커질듯)과 같게 하고 부제목(“민주당, 선거관련 비선조직 없다”)의 활자크기는 중재대상인 2001년 8월 27일자 3면 『여갈등 ‘불똥’튀긴 ‘선거별동대’』 제목 기사의 리더부분(민주당 정균환 총재 특보단이 주도하는 여권 내 새로운 비선조직의 탄생은 다가오는 정치적 대·소사를 앞두고 폭발력이 적지않다…)과 같게 하며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1년 9월 27일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7.자 판결(2000가합68769)

사실관계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7일 통조림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서기복 씨 외 2인이 대한민국과 경향신문사를 비롯 8개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 언론사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것으로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언론사

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가 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피고 언론사들을 포함한 각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유해식품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화학적 합성품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여 이득을 취하고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각 언론사들은 원고들이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을 제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대한민국과 각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68769 손해배상(기)
원 고 : 1. 서기복

2. 한샘식품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40
대표이사 김진홍
3. 효성농산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7
삼대양빌딩 6층
대표이사 김상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경원
소송수행사
송길룡, 조성래, 안경희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장준봉
3.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차일석
4.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오명
5.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송병준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7.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금창태
8.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학래
9.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국, 장명수,
문현석, 김영열
피고 7 내지 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 론 종 결 : 2001. 10. 10.
주 문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기복에게 5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에게 1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001. 11. 7.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원고 서기복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9.부터,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기복에게 8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 효성농산주식회사에게 각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8.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 갑 제11호증의 6~10, 49, 88, 89, 갑 제12호증의 98, 갑 제13, 26호증, 갑 제66호증의 32, 33, 갑 제6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종순, 양순자, 신정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서기복은 1997. 8. 경부터 통조림 임가공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우리농산(대표 이종순, 이하 우리농산이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한샘식품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샘식품이라 한다)는 우리농산과 사이에 골뱅이, 번대기, 마늘장아찌통조림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를 주식회사 품림무역을 통하여 구매하여 우리농산에 공급하고 우리농산으로부터 제품화된 통조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농산이라 한다)는 남일종합식품산업사(대표 이길성, 이하 남일식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번대기, 골뱅이 등 통조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원료를 구매하여 남일식품에 공급하고 남일식품으로부터 제품화된 효성번대기 통조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 '경향신문', 피고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이하 피고 대한매일신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대한매일신문(서울신문은 대한매일신문의 전신이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세계일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중앙일보’,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한겨레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 ‘한겨레신문’,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각 발행하는 언론사들이다.

나.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 전의 검찰수사

(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998. 5. 26. 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식용변데기가 국내에서 제조, 판매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에서 판매중인 8종의 변데기 통조림을 제조사별로 임의 수거하여 그 성분분석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 위 연구원은 검사결과, 우리농산에서 제조하여 원고 한샘식품에서 판매하는 한샘변데기가미통조림에서 0.19mg/kg, 남일식품에서 제조하여 원고 효성농산에서 판매하는 효성변데기가미통조림에서 0.02mg/kg, 대진산업사에서 제조한 물개표변데기가미 통조림에서 0.05mg/kg의 포르말린(Formalin)이 각 검출(나머지 5개 제조사의 통조림에서는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아니함)되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신하였다.

(3)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이 사건 담당검사는 1998. 6. 18.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우리농산 사무실에서 통조림과 장부일체를 압수하였다.

(4) 이 사건 담당검사는 원고 서기복이 우리농산에서 제조한 변데기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온 것은 수입 원료에 포르말린이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우리농산에서 압수한 한샘배꼽골뱅이가미통조림(140g×9, 1998. 5. 23. 제조), 한샘마늘장아찌통조림(140g×9, 1998. 6. 8. 제조), 단팔죽통조

림(230g×6, 1998. 6. 11. 제조), 호박죽통조림(230g×6, 1998. 6. 11. 제조), 변데기(3.1kg, 통조림 원료로서 주식회사 풍림무역이 1998. 1. 21. 수입한 태국산)와 남일식품에서 수거한 변데기(1kg, 통조림 원료로서 1998. 5. 9. 경 수입한 중국산), 대진산업사에서 수거한 변데기(3kg, 통조림 원료로서 1998. 3. 10. 경 수입한 중국산)에 대하여 다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

(5) 위 연구원은 1998. 6. 29. 각 검사결과 한샘배꼽골뱅이가미통조림에서 0.03mg/kg, 한샘마늘장아찌통조림에서 0.15mg/kg, 단팔죽통조림에서 0.05mg/kg, 호박죽통조림에서 0.14mg/kg, 주식회사 풍림무역이 수입한 태국산 변데기에서 0.01mg/kg, 남일식품의 중국산 변데기에서 0.02mg/kg, 대진산업사의 중국산 변데기에서 0.03mg/kg의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신하였다.

(6) 검찰 조사시 우리농산의 대표 이종순, 원고 서기복, 원고 한샘식품의 대표이사 김진홍, 남일식품의 이길성, 원고 효성농산의 대표이사 김상천은 위 각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고의로 포르말린을 첨가한 사실은 없으며 포르말린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이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의 부장검사는 1998. 7. 7. 위 검찰청의 기자실에서 직접 피고 언론사들을 포함한 각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유해식품사범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

(2) 위 검사는 이 사건 발표를 통하여, 피의 자별 범죄사실에 대하여, 우리농산의 대표 이종순과 공장장인 원고 서기복은 공모하여 1997. 8. 초순경부터 1998. 6. 말까지 사이에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41만캔(제품 1kg당 0.19mg), 골뱅이통조림 74만캔(제품 1kg당 0.03mg), 마늘장아찌 15만캔(제품 1kg당 0.15mg), 호박죽통조림 1만6천캔(제품 1kg당 0.14mg), 단팔죽통조림 3만캔(제품 1kg당 0.05mg), 시가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대진산업사 대표 노권호는 포르말린(제품 1kg당 0.05mg)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41만캔 시가 14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일식품 대표인 이길성은 포르말린(제품 1kg당 0.02mg)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 약 37만캔 시가 150,000,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포르말린의 성질과 유해성, 식품 제조업체의 안전불감증, 제조식품검사제도의 미비, 수입원료에 대한 실질적 검역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3) 다만, 위 검사는 위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종순, 원고 서기복, 노권호, 이길성을 1998. 7. 8. 기소할 예정이니 기소 이후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998. 7. 8.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시가 1,002,007,420원 상당의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여 이득을 취하고(이후 1998. 11. 11. 시가 36,567,440원 상당의 통조림을 제조·공급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종순과 원

고 서기복을 구속기소하고, 노권호, 이길성을 각 이 사건 발표와 같은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도

피고 언론사들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소 이후인 1998. 7. 9. 각 일간지에 별지 보도내용과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 이후의 정황

(1) 서울지방법원은 1999. 1. 22. 이종순과 원고 서기복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2000. 5. 18. 항소기각, 2001. 3. 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우리농산에서 생산된 번데기가미, 골뱅이가미, 마늘장아찌, 호박죽, 단팔죽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것은 포르말린이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이다(포르말린은 포름알데하이드를 물과 메탄올에 혼합한 수용액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그 원료인 번데기, 골뱅이, 마늘, 팔, 호박 또는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물, 양념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종순, 원고 서기복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보존료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1999. 4. 1. 이길성에 대하여서도 그가 통조림을 제조하면서 번데기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통조림을 제조하였다거나 또는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2000. 5. 18. 항소기각, 2000. 9.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경향신문사, 대한매일신보사, 동아일보사,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사는 이종순, 원고 서기복과 이길성의 무죄 선고 이후 각 발행하는 일간지에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당검사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헌법 제27조 제4항)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서기복과 이종순, 이길성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들의 피의사실을 피고 언론사들 기자들에게 발표하여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서기복을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만드는 사람으로,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을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임을 알면서

도 이를 판매한 회사들로 알려지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검사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 이후의 보도를 전제로 기자회견을 하여 이 사건 각 기소 이후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표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제목을 '통조림에 발암물질'(피고 경향신문사), '통조림에 포르말린'(피고 대한매일신보사), '포르말린 통조림'(피고 동아일보사), '발암 통조림'(피고 세계일보), '골뱅이-번데기에 포르말린 섞어'(피고 조선일보사), '식탁에 독극물?'(피고 조선일보사 사설), '번데기 통조림에 포르말린'(피고 중앙일보사), '통조림에 포르말린 '범벅''(피고 한겨레신문), '포르말린 통조림'(피고 한국일보사)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목과 각 보도의 본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 서기복이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위 원고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언론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피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 보도

중 사실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서기복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 등 2명'이라는 표현으로 나머지 한 명이 원고 서기복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의 상품명을 기재한 이상 위 보도에서 원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며, 위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으로서 원고들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익성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진실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표 및 각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피고 언론사들은 담당검사의 이 사건 발표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서기복이 그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가 전체적으로 위 원고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 할 것이다).

(4) 상당성

(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 당시까지 작성된 수사기록인 갑 제13호증의 1~59와 갑 제66호증의 32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이종순, 원고 서기복, 이길성은 검찰에서의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각 제조 통조림에 포르말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랐으며 이를 첨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원고 한샘식품의 대표 김진홍과 원고 효성농산의 대표 김상천, 우리농산의 직원들 또한 통조림에 그러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종순, 원고 서기복, 이길성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실제로는 포름알데하이드)이 검출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할 것인데, 그 검출량 또한 극히 소량인데다 우리농산에서 제조된 통조림도 종류에 따라 그 검출량이 일정치 못하였으며, 변대기통조림 이외에는 우리농산에서 제조한 통조림에 대해서만 성분분석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검사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발표될 경우 원고들이 음식물에 포르말린이라는 유해한 물질을 넣은 극악한 사람, 회사라고 판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발표내용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이 사건 발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원고 서기복은 구속되어 있어 위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점, 검사로부터 취제한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경우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이종순, 원고 서기복과 이길성 등에 대한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검찰의 보도자료와 이 사건 각 보도를 비교해 보면 위 각 보도가 보도자료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윤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

민국만이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에 의하여 우리농산이 부도에 이르러 원고 서기복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은 판매부진과 통조림 폐기 등으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 서기복에게 1998. 7. 8.부터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시인 2001. 3. 9.까지의 임금 상당인 80,000,000원, 원고 한샘식품과 효성농산에게는 위 같은 기간 동안의 영업상 순손실과 통조림 완제품 폐기, 덤핑처분 등에 따른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각 3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4, 15, 20, 24, 27, 32, 41, 42, 62, 65, 6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순, 양순자, 신정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표와 이에 따른 보도를 전후하여 우리농산과 원고 한샘식품, 효성농산의 통조림 판매가 부진하였고, 일부 통조림을 폐기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농산은 대표인 이종순과 공장장인 원고 서기복이 구속기소되어 그 무렵부터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 한샘식품은 1998. 8. 경, 원고 효성농산은 2000. 3. 경에 이르러 거의 도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표 및 이에 따른 보도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과 원고 서기복의 구속, 이 사건 각 기소 및 당시의 경제상황 등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발표 및 이에 따른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라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가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된 점, 이 사건보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로서 원고 서기복에게 50,000,000원, 원고 한샘식

품에게 150,000,000원, 원고 효성농산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8. 7.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언론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2001. 11. 7.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김경환
판사 오석훈



미국판결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상품비교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게 현실적 악의가 없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Caveman Adventures UN Ltd. v. Press-Citizen Co. Inc.
(아이오와주 대법원 2001년 9월 6일 선고)

판시 요지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명예훼손적인 상품 비교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하급심 판결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 게재하는 광고에 담긴 기업의 주장 내용을 신문사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비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Press-Citizen지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Iowa City에서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인 Electronics Cave사였다. Electronics Cave측 주장의 요점은, 경쟁사인 Woodburn Electronics사가 Press-Citizen지에 게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내용과 오인시킬 내용을 담고 있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다. Electronics Cave는 Press-Citizen이 명예훼손행위에 가담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자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Press-Citizen은 (1) 자신들이 그 광고를 게재하면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배심원들의 사실 인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2) Schlegel v. Ottumwa Courier(585 N.W.2d 217)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할 때, 그러한 배상을 받을 만큼 Electronics Cave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3)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Electronics Cave사가 Press-Citizen지에 게재한 비디오 플레이어(VCR)와 캠코더 소개광고이었다. Electronics Cave사가 광고한 캠코더는 8mm 계통이었다. 그 광고의 의도는, 경쟁 상대인 VHS 기술을 사용한 캠코더 제품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광고에서는, VHS 기술을 사용한 캠코더들의 화질이 좋지 않고, 복사가 잘 되지 않으며, 음질이 좋지 않고, 분당 녹화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무겁다. 또한 가정용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사용하려면 비싼 어댑터

가 필요하고, 어린이로부터 기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광고는 8mm 캠코더가 VHS 기종보다 더 오랜 시간 녹화할 수 있고, 더 나은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며, 더 저렴하다고 자랑하였다. 균형을 갖추고자, 그 광고는 8mm 테이프는 가정용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Woodburn Electronics사는 VHS 캠코더를 주로 판매하였다. Woodburn Electronics사는 Electronics Cave사에 대응하고자 Press-Citizen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광고가 Electronics Cave사의 실명을 언급하고, 또한 Electronics Cave사의 광고가 사실을 오인시킨다고 은근히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 주문을 받은 Press-Citizen지의 담당자는 상급자로부터 허락을 받고자 하였다. 그 광고 내용은 처음에 소매 광고 담당자의 검토를 거쳤고, 그 다음에는 광고 담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 발행인의 검토를 받았다. 그 광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실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Woodburn Electronics의 광고는 Electronics Cave의 광고에 나오는 VHS 캠코더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이 Electronics Cave라고 실명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게재된 문제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 Woodburn Electronics사는 1946년 이래로 Iowa City 지역의 전자제품 소매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 왔고, 여러분에게 '사실'을 빙자한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진실은,

1. VHS 캠코더는 그 무게가 8mm 캠코더의 2배 내지 3배 (약 4 파운드)에 불과하고, 어깨에 메고 다녀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모든 파나소닉 VHS 또는 VHS-C 캠코더의 최저 해상도

는 330 라인이고, 어느 8mm 캠코더의 최고 해상도는 270 라인입니다. 모든 파나소닉 S-VHS (Super VHS) 기종의 최저 해상도는 425 라인이고, 어느 Hi-8mm 캠코더의 최고 해상도는 410 라인입니다.

또한, VHS와 VHS-C 캠코더는 대체로 8mm 캠코더의 두 배 정도 되는 셔터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느린 동작이나 정지 화면에서 좋은 화질과 비교할 수 없는 비디오 성능을 보여줍니다.

3. VHS 또는 VHS-C 캠코더로부터 제작된 복사본은, VHS와 VHS-C 캠코더가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8mm 캠코더로부터 제작된 복사본보다 우수합니다. VHS 또는 VHS-C 캠코더로부터는 복사본을 제작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VHS이기 때문에, 어느 VHS 비디오 플레이어에서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모든 VHS-C 캠코더에는 플레이팩 어댑터(PlayPak Adapter) 한 개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것은 8mm 비디오 테이프 3개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VHS 또는 VHS-C 캠코더는 탁월한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모델들은 홈 씨어터 시스템의 돌비 프로로직용 비디오 테이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하이파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의 사운드는 80 데시벨을 넘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컴팩트 디스크가 92 데시벨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6. 8mm 테이프는 최초로 컴퓨터 백업용으로 고안된 것인데, 나중에 비디오용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7. 어떠한 어린 아이도,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비디오 테이프라도 파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8. 흔히 VHS-C 테이프의 촬영 시간이 1시간 30분임에 반하여 8mm 캠코더의 촬영 시간은 3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테이프 자체는 그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둘러 앉아 3시간이나 되는 긴 홈 비디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9. VHS 또는 VHS-C 캠코더도 마찬가지로 재생을 위하여 텔레비전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복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비디오 플레이어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VHS 또는 VHS-C 캠코더를 이용할 경우, 여러분이 재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텔레비전에 캠코더를 연결하거나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연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VHS 또는 VHS-C 테이프의 재생을 VHS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캠코더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캠코더를 보호함으로써, 여러분은 캠코더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것을 읽은 보다 더 많은 진실은,

1. VHS는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비디오 플레이어용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 VHS, S-VHS 그리고 VHS-C 캠코더는 현재 사용되는 모든 캠코더의 54%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 방식은 모든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입니다.

3. 지난 번의 '유익한' 광고에서 소개된 8mm 캠코더들의 표준적인 성능에 덧붙여, VHS, S-VHS 그리고 VHS-C 캠코더는 컬러 뷰 파인더, 디지털 20배 줌, 스트로브, 정지 동작 등과 같은 보다 많은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4. VHS-C 캠코더의 가격과 8mm 캠코더의 가격은 그 모델에 따라 다르고,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5. 8mm 캠코더의 충전지 사용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전기 콘센트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하나의 테이프를 다 녹화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충전지를 추가로 더 산 후 (각 40 내지 60 달러) 이를 모두 충전하여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반면 VHS, VHS-C 또는 S-VHS 캠코더의 충전지 사용시간은 그 캠코더의 테이프 녹화시간과 같거나 더 길입니다. 즉 한 개의 VHS 테이프는 한 개의 충전지 용량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참신한 생각입니까?)

6. 어떠한 방법으로도, 8mm 또는 Hi-8 방식은 VHS 방식과 호환이 되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7. 8mm 방식의 비디오 해상도는 VHS 방식, 또는 VHS-C 방식의 비디오 해상도와 같을 수 없고, Hi-8 방식의 비디

오 해상도는 S-VHS 방식의 비디오 해상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8. 8mm 또는 Hi-8mm 테이프는 VHS 또는 S-VHS 기계에서 결코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9. 8mm 또는 Hi-8 캠코더의 유일한 사실인 장점은, 특정 제작사의 특정한 모델들이 무게에서 VHS-C 캠코더보다 몇 온스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10.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더 많이 받고 혼란에 빠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양을 팝니다.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 줄 가게로 오십시오!

자신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의 광고를 철회하라는 Electronics Cave의 요구를, Press-Citizen지는 거절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Woodburn Electronics을 상대로 한 앞서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Electronics Cave는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의 배상금으로 30,000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었다. Press-Citizen을 상대로 한 이 사건에서 Electronics Cave는 추가적인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에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판결 이유

Press-Citizen지는, 자신들이 문제된 광고물을 게재함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한, 자신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Jones v. Palmer Communications, Inc. (440 N.W.2d 884) 사건에서 검토해 본 바 있고, 그 사건에서 우리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자면, 언론 출판사 또는 방송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위 Jones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94 S. Ct. 2997, 41 L. Ed. 2d 789)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명예 훼손에 관한 주법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와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명예 훼손에 관한 법(libel law)의 상당 부분을 연방법화하였다. 위 Gertz 사건의 판결 이후, 언론 출판사 또는 방송사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종래의 보통법(common law rules)이 대부분 변경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적어도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부모하게 무시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없는 한 각 주(州)는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수정 헌법 제1조에 충실하게 판시하였다. 언론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제한을 가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광고와 일반 기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벗어나고자 광고를 일반 기사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원고측에서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허위성의 인식 또는 진실성 여부에 대한 부모한 무시(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980, 84 S. Ct. 710, 726, 11 L. Ed. 2d 686, 706) 사건에서 제시된 현실적 악의의 구성요소이다. 위 New York Times 사건에서의 판단 내용은, 언론 기관의 어떠한 행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재에 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특권을 깨뜨리는지를 심리하면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Gertz 사건은, 언론 기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와 동일한 책임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관한 우리 보통법상의 개념 정의는 위 New York Times 사건에서 확립된 개념 정의와 차이가 있다. 우리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의미로서 현실적 악의를 Vojak v. Jensen (161 N.W.2d 100, 107) 사건에서 처럼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악의, 원한 또는 욕구 (ill-will, hatred or desire to do another harm)'라는 표현으로 정의해 왔다. 우리는 Vinson v. Linn-Mar Community School District (360 N.W.2d 108) 사건에서 그러한 보통법상의 개념 정의를 재확인한 바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사건에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의 Gertz 사건 판례에 의거하여 '허위성의 인식 또는 진실성 여부에 대한 무모한 무시(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라는 위 New York Times 사건에서 정의된 개념을 적용하였다. 사실심에서는 배심원단에게 위 New York Times 사건의 기준에 따라 현실적 악의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사실심은, 현실적 악의는 명백하고, 확실하며, 만족적인 증거의 우위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아이오와 주법 668A의 1항에 따라 배심원단에게 지시하였다. 양측 당사자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배심 지도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Electronics Cave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Press-Citizen측의 현실적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문제된 광고는 Electronics Cave가 일반 소비자들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Press-Citizen의 소매광고 책임자가 증언하였다.

2. 허위광고의 진정성

2) 그 광고는, 남을 공격하는 광고(attack advertisements)를 실지 않는다는 Press-Citizen의 확립된 정책에 반하여 받아들여졌다.

3) 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Electronics Cave로 하여금 다시 대응광고를 게재하게끔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Press-Citizen이 기대하였다.

우리는, Press-Citizen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된 내용이 인쇄되어 나온 바로 그 문맥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분명 열린 자세를 보이고 또한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담고 있지 않는 한, 법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한 애매한 칭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러한 칭찬에 의존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이 법원은 *Hogan v. McCombs Bros.* (190 Iowa 650, 656, 180 N.W. 770, 773) 사건에서 판단한 바 있다. *Barr v. Butler* 사건(197 Iowa 575, 577, 195 N.W. 980, 981)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선전하고 칭찬할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는, 경쟁 상대방의 과장된 칭찬(puffery)을 깎아 내리려는 시도와 관련하여서, 그보다는 허용범위가 다소 좁기는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점에 만족한다. 상품 비교광고를 이용하여 그러한 과장된 칭찬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 그러한 유형의 광고를 실는 신문사가 만약 두 가지 주장들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신문사에게 무모한 행동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Press-Citizen이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한, Electronics

Cave측이 허위 광고를 한다는 Woodburn Electronics의 공격이 그 자체로서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위 New York Times 사건의 판정 기준은 아주 주관적인 것이다. *St. Amant v. Thompson* 사건(390 U.S. 727, 88 S. Ct. 1323, 20 L. Ed. 2d 262)의 판결 이유에 따르자면, 무모한 행동(reckless conduct)이라는 것은 과연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공표를 했겠는지, 혹은 공표하기 이전에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해 사건의 피고가 실제로 자신이 공표하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결론이 용인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Garrison v. Louisiana* 사건(379 U.S. 64, 74, 85 S. Ct. 209, 216)에서 연방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라는 판단 기준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인식(high degree of awareness of ... probable falsity)'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때, 현실적 악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Electronics Cave측이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Press-Citizen이 Woodburn Electronics의 광고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 또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채 행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우리는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하여 고려하였고, 지방법원의 재판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29권 pp. 2297-230*

번역 : 장상균 판사 (수원지방법원)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사례

공공 관심사에 관계된 신청인의 답변을 구하고자 접근한 행위는 보도실천강령의 위배에 당당하지 않아

불만내용

Syrita Collins-Plante씨는 Sunday People지가 2001년 4월 1일자에 보도한 “유명 권투선수 Lennox Lewis의 여자친구, 매니저에 의해 폭행당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3조(프라이버시)를 어겼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아울러 Sunday People지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4조(괴롭힘:harassment)를 위배했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기각됐다.

문제의 기사는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권투선수인 Lennox Lewis 씨의 매니저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신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과 Lewis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Sunday People지 기자로부터 사건 발생전인 지난 2월 말 두세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자신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월 중순,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며칠동안 신청인은 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다른 기자는 그녀의 집 앞에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들의 접촉에 대해 모두 거절의사를 표명했고, 다음날 신청인은 자신의 집을 나설 때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경찰에 연락했지만 여전히 사진기자는 신청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사는 기사의 핵심은 식당에서 사고가 난 후에 왜 폭력행위가 썩어졌고 24세의 청년이 체포되어 보석으로 풀려났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신문이 이미 보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사측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으

며, 공공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2월에 신청인이 다시 전화해달라고 말하고 난 후 기자가 다시 전화연락을 취했을 때는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로, 신청인은 기자의 제안을 재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신청인을 대신해서 그녀가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는 다시 접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평 결

보도실천강령 제4조(괴롭힘)는 기자들이 취재 대상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PCC는 기자가 신청인에게 정확하게 몇 번이나 접근했는가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며, 신청인이 다시는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여할 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문사가 기사에 언급했던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응답을 구하려고 했었던 점은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터 사건 발생 이후 6주동안 전화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이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PCC는 신문사가 그 사건을 먼저 다룬 다른 신문(Scotland Yard) 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신청인의 사진

또한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실을 주목했다. 따라서 유명 권투선수인 Lewis씨와 신청인과의 친분관계를 보도한 점이 라든지, 공공 식당에서 폭력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행위가 보도실천강령 제3조인 사생활 조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호주사례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의 기사를 비중있게 다룬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불만신청대상이 아니다

Queensland 주의회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브리즈번의 Courier-Mail 신문사의 기사내용의 편견과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신청이 호주신문평의회에 의해 기각됐다.

불만신청은 군소정당인 Queensland Legal Reform Group의 선거 책임자인 Robert S. Bond씨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월, 신문평의회에 제출한 불만신청서에서 Bond씨는 “이 신문사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동당 정부에 유리하도록 선거를 이끌고 있다. 신문기사는 지속적으로 노동당 후보인 Peter Beatti의 얼굴을 게재하고 관련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다른 군소정당과 단독후보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Courier-Mail지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신문의 특정지면(Perspectives)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어떤 정당도 선거기간동안 지원유세 차원에서 Perspective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Bond씨는 “The Courier-Mail지가 수년동안 우리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이번 신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선거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신문평의

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신문기사가 편향적으로 보도됐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신문평의회는 처리해왔다. 신문평의회는 보도를 하는 신문사는 공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균형감있는 보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문사는 사설이나 독자의견란에 특정한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불만신청 사건에서 신문평의회는 Courier-Mail지가 이번 선거에 관해 여러 정당을 폭넓게 취재했고, 주요정당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지만 소수정당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소정당들 중에서도 소수정당인 Queensland Legal Reform Group에 특별할 비중을 두어야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모든 보도내용은 일정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즉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며, 선택된 기사는 항상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배타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견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이는 신문평의회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동아일보, 한겨레 상대 10억 소송

동아일보사와 인촌기념회 등은 26일 <한겨레>가 올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시리즈 기사가

제기한 시민광장 계획 무산과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관련 성금 유용 의혹 등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일제시대 및 유신시대 동아일보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동아일보사와 창업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측은 "시리즈 기사 내용은 모두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인 등 충분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 10. 25.

국가-한나라당-연훈사 상대 여순환 씨, 74억 손해소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여순환 씨가 30일 16개 언론사와 국가 및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2억~7억원씩 총 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등에 냈다.

여씨는 언론사에 대해 "원고가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서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으며 이씨를 속여 로비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과장 왜

곡 추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또 "원고를 조폭두목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 달간 신문구독을 금지시켜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으며 "부풀리기식 의혹제기를 통해 원고를 음해했다"며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도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씨는 지난 해 5월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32억원을 받는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주간사 알선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42억4000만원을 받아 이 중 17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화일보, 2001. 10. 31(30면)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연훈면책

수사기관이 내놓은 잘못된 보도자료에 근거했다라도 왜곡, 과장하지 않은 언론보도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게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불 부장판사)는 7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을 발표, 보도하는 바람에 화사가 부도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서가복 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서씨 등에 게 3억원을 지급하되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이

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서씨 등이 검찰 조사에서 포르말린 함유 여부를 몰랐고 이를 첨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점, 검출량이 적은 점 등으로 미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조사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들은 당시 보도의 신속성을 요했고 검찰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서씨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다"며 "보도 내용이 발표자료를 과장, 윤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98년 7월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

리를 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사들은 '통조림에 발암물질' 등의 기사를 보도, 서씨 등은 지난 해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3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이모 씨 등이 제기한 290억원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서씨 등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아니라 이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며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속속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1. 11. 7.

"조선일보서 명예훼손"검사 11명, 11억 손해배상 소송

전·현직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1명은 30일 '무영장 계좌추적'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1억원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

다.
이들 검사는 소장에서 "검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

식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1. 10. 31(25면)

연예인 낙태설 보도 기자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1일 유명 여성 댄스그룹 멤버의 낙태설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전문지 기자 최아무개(30)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혼의 여성 연예인이 낙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거짓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연예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로 신문 판매부수

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인기 연예인의 낙태설 관련 자료를 편집해 거짓 기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 2001. 8. 22 (15면)

부장급 검사들, 시사저널에 손해소

박철준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 광주지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급 검사 11명은 13일 호남지역 검찰과 폭력조직이 뿌리깊게 유착해 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폭 출신이 검사 방에 종종 출입하고 적지 않게 술자리도 함께 하며 호남 검사들 대부분이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 기소된 여운환 씨에게 신세를 졌다는 보도 요지는 모두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포함한 검찰 전체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측은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힘있는 검사들이 언론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낸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 11. 13.

김은성 씨, "허위사실 보도"한국일보에 10억 손해소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15일 "김차장이 부하 직원을 동원해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의 로비 창구로 알려진 김재환 전 MCI회장을 폭행하고 3대 게이트는 김차장 작품'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사측은 "취재를

통해 사실로 확인한 내용만을 보도했을 뿐"이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11. 16

'통일연대', 조선일보 상대 반론청구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5일 "통일연대 등 일부 방북단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보도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서울지법에 냈다.

통일연대측은 청구서에서 "조선일보는 평양측전 기간 방북단 일부가 김일

성 밀랍상에 큰절을 하면서 울먹이고 찬양노래를 부르는 등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통일연대가 방북 추진본부 내 남남갈등을 야기했다는 추측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 23일자 "백두산가서 훌륭한 장군님 김일성 밀랍상에 큰절"과 같은 달 25일자 '통일연대

방북 후유증' 등 제하의 기사에서 방북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 "범민련이나 한총련 소속 회원들이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통일연대가 추진본부 내 갈등을 크게 비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1. 10. 25.

성남시 한국일보 상대 16억 손해소

경기도 성남시는 29일 '분당구 백공·정자동 일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한국일보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도시설계변경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가 '백공·정자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용도변경 위해 성남시 여론 조작 의혹' 등의 허위보도를 연일 게재했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관계자는 "사실만을 보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매일, 2001. 10. 30

이귀남 검사, 동아일보 상대로 손해소 제기

이귀남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2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지난 99년 당시 내가 대검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고 허위 보도했다"면서 "근

거없는 보도로 이씨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처럼 비쳐져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매일, 2001. 10. 30

수보라도 손해 책임은 제한

언론기관이 상장기업과 관련한 오보를 내고 주가가 하락했다라도 주식투자자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최모 씨 등 대진증권 주식투자자 2명이 "오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며 로이테크리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테크이 '대진증권 관련 S사가 화의를 신청했다'는 오

보를 냈지만 기사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회사 등이었다"며 "기사 내용도 대진증권과 S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것으로 오보일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보를 낸 뒤 정정보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진증권 주가가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점을 보면 대진증권의 주가 등락이 이번 보도 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투자 손

실과 보도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로이테크리아가 99년 10월 25일 "대진증권 양모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S건설회사가 화의신청을 했고 대진증권은 1천6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에 걸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내보냈지만 이 때문에 대진증권 등의 주가가 하락,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9천 200여 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1. 10. 25.

'공개수배 프로그램' 손해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4일 범죄 용의자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과 실명 등이 공개된 조모 씨와 그 가족들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

실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먼저 협조를 요청,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상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공개방송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해서는 "범죄자 수배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도 조씨가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씨에 대한 적

극적 소재 탐지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도주한 주도 씨와 함께 여권사기단 공범으로 부산경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자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경찰이 "주씨의 진술없이 범행 가담정도를 알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1. 7. 20

"허위사실 예술비평 손해책임없다"

예술비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김민희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가 자신의 공연을 비판한 글을 잡지에 기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용평론가 송종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평론에

서 김교수가 사실상 같은 작품인 세 가지 작품을 마치 제목과 안무의도가 다른 작품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평론은 결국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평을 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송씨가 무용전문지 '댄스포럼'에 쓴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 비양심' 평론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송씨는 이 평론에서 김교수가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내용의 안무작을 3차례에 걸쳐 공연하면서 제목을 '허행', '점박이눈', '비창'으로 바꾸고 안무의도를 각기 달리해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1. 10. 24.

국방부 장관, '여순사건 영화' 기사관련 월간조선에 손해소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12일 월간조선 10월호에 게재된 국방부가 여순사건을 미화한 영화 '애기섬'을 지원한다는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주)월간조선사와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과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장관은 소장에서 "영화지원은 여순사건을 군경의 양민화살로 묘사하는 영화 '애기섬'을 제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조성태 전 장관 재직시절 추진된 일"이라며 "당시 영화사와 접촉해 영화 내용을 순화시키는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월간조선 10월호는 법원에서 판매금

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월간조선은 "진실에 부합된 사실보도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2001. 10. 13.

검사들, 이재소 의원에 6억 손해소

G&G그룹 이용호 회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김준호 중수3과장 등 수사검사 3명은 16일 '이용호 비망록'의 존재를 주장한 한나라당 이재소 의원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과장 등은 소장에서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검찰과 정치권, 금감원 등에 대한 로비내역을 기록한 비망록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밝혀 검찰이 마치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말한 '비망록'을 입수한 일이 없고 다른 수사관계자들로부터도 그와 유사한 문건을 입수했다는 말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1. 10. 16

대검 부장검사 20명, 조선일보 보도 16억 손해소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보관 등 과장급 부장검사 20명은 24일 "승진 앞둔 검사들 연출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20일치 기사와 관련해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검 과장들은 임용 절차에 따라 현재 직책에 발령받았을 뿐 정치권 인사의 힘을 빌려 승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댄다는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 국민에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6월 "대검 과장으로 발령받은 검사들 중에도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을 통한 인사로비로 승진한 이른바 '꼬리표'가 달린 검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01. 10. 25(18면)

이미연, '열애설' 보도 손해소

인기 탤런트 이미연 씨는 4일 "스포츠신문 <굿데이>가 유명 시에프 감독과 열애중이란 거짓 기사를 실어 대중적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경향미디어그룹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굿데이>가 지난달 29일자 1면 머릿기사로 '이미연, 새 남자 생겼다'는 제목 아래 열애설 등을 보도해 이혼 뒤 사생활 관리에 애쓴 노력을 무산시켰다"며 "문제의 시에프 감독과는 업무상 만난 적이 있을 뿐 기

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굿데이>쪽은 "이씨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회사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1. 10. 5(15면)

월간조선 판금 가처분 인용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제작지원방침이 내려졌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남신 국방부장관이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기사를 10월호에 게재한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측의 기사

작성 경위와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와 김장관의 공인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김장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애기섬'은 지난 48년 여순사건을 두

고 한 가정이 이념대립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초로 여순사건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반란군을 미화한 영화를 국방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대한매일, 2001. 10. 4.

조선일보, '신군부 건물 맞교환' 한겨레에 1억 손해소

조선일보는 22일 <한겨레>가 지난 9월 11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신군부의 건물 맞교환 특혜 의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당시 부동산 거래는 안가를 이전할 필요를 느낀 보

안사가 조선일보사쪽에 정동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조선일보사가 특혜를 보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한겨레가 조선일보사가 시가 2억원짜리 연희동 주택과 5억원짜리 정동 보안사 안가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는 "해당 기사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조선일보사 사장의 교환승락서 등을 토대로 현장 확인취재를 거쳐 보안사와 조선일보사의 부동산 거래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5공화국과 조선일보사의 권언유착 의혹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1. 10. 23(19면)

세무조사 보도판권 국정홍보처 반론보도청구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하는 국

정홍보처에 정부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동아일보의 보도내용과 국정홍보처 업무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통상 이 판결처럼 국정홍보처에 정부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리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이를

인정한 뒤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7월 동아일보가 '1970년 동아 광고사태-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2001. 9. 29(2면)

이장희 교수, 조선일보에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법학)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통일 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교수가 지은 〈나는야 통

일1세대〉 책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적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교수가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등 문제된 기사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이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

등 고통을 당한 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지난 1997년 9월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2월과 6월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매일, 2001. 9. 12(23면)

서울지검 검사, 문화일보에 3억 손해소

지난 해 G&G그룹 회장 이용호(구속) 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불입건 처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김인원 검사는 25일 “검찰이 지난해 이씨 수사 당시 정치인과 검찰 간부 등 명단이 담긴 비밀기록을 입수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

다”며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검사는 소장에서 “사건 당시 주임 검사로서 비밀기록을 본 적도 없고 이와 유사한 것을 압수했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면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검사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검찰이 지난 해 이씨에 대해 수사하면서 정·관계 인사의 이름이 담긴 비밀기록을 입수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었다.

대한매일, 2001. 9. 26(23면)

김태정 전 법무장관, 조선일보에 10억 손해소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24일 거짓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디지털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전 장관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치 ‘김태정 씨, 신총장에 청

탁’의 기사에서, 내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호 씨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나는 제3자를 통해 신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운환 씨를 알지도 못하므로

여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제소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검찰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1. 9. 25(19면)

광림교회, MBC에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광림교회가 김선도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로 아들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데도 문화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 〈피디수첩〉이 대형 교회의 세습 대물림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 광림교회가 문화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공 이해 사안에 대해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고 공정한

논평을 한 만큼 언론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한 내용을 보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후임 목사로 김선도 목사의 아들이 정해진 것에 반발하는 신도들이 있고, 선임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부목사가 사퇴권유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등의 방송 내용에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림교회측은 문화방송이 지난해 12월 〈한국의 대형 교회〉편에서 교회측의 재정과 담임목사 세습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일부 신도들의 일방적 발언을 교회신도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한겨레, 2001. 9. 27(17면)

위원장, 오세아니아 지역 신문평의회 방문



시찰단 일행과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Sir John Jeffries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Mary Major 사무총장(맨 왼쪽)

박영식 위원장, 이병훈 사무총장은 뉴질랜드, 호주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언론피해구제기관들을 순방하고 지난 11월 7일 귀국했다. 10월 26일 출국한 일행은 뉴질랜드 신문평의회(New Zealand Press Council), 호주 신문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를 차례로 방문해 양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를 방문한 시찰단 일행은 Sir John Jeffries 의장 및 Mary Major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어 호주 신문평의회를 방문하여 K. R. McKinnon 의장

및 Jack R. Herman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뉴질랜드 및 호주신문평의회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언론사의 자본출자로 운영되는 신문평의회 특성상 야기되는 조직의 영세화, 자원 및 홍보 부족, 국민의 인지도 저조 등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언론피해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간에 긴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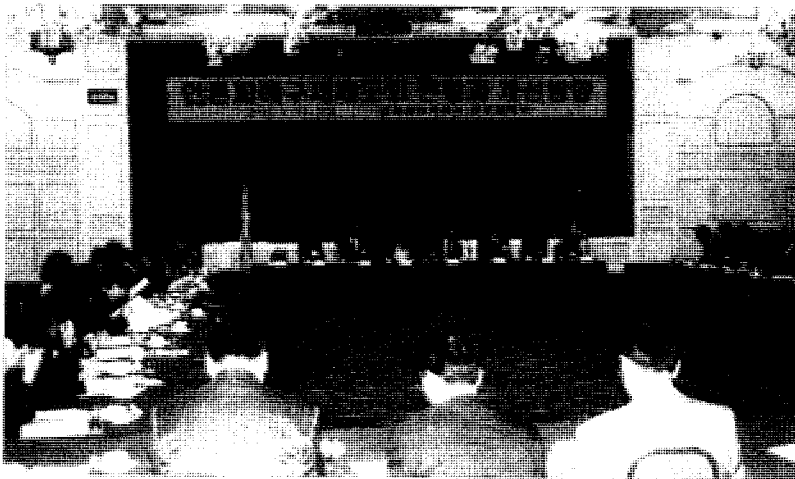
한편 이번 시찰에는 조사연구팀 정희성 차장이 수행했다.

200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200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규칙, 보수규칙, 여비규칙개정안, 직

원근무평정규칙 개정안 및 전문위원운용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광주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홍보와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인사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언론파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논문을 발표한 주동향 위원(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마감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사실 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특종 의식과 속보 등 무리한 취재경쟁, 상업주의적 경쟁에 따른 선정적 보도, 출입처취재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

른 발표자널리즘 등 우리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보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수용자의 반론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광한 위원(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중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충북 및 전북,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은 10월 16일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22일과 12월 14일에는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각각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언론 파해구제를 위한 언론의 역할 및 지역언론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강명구 외, 『한국언론의 신뢰도』, 한국언론재단, 2001.
 고해련, 『신문취재와 기사작성』, 중앙M&B, 2001. 8.
 김옥조, 『미디어 윤리』, 중앙M&B, 2001. 8.
 남시욱,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나남, 2001.
 백선거, 『사이버세계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아서 아사 버거, 류준렬 외 역, 『커뮤니케이션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유선영 외,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 한국언론재단, 2001.
 장호순 외,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한국언론재단, 2001.
 한국언론재단, 『한국과 세계의 언론인 교육』, 한국언론재단, 2001.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편집자율권과 언론평의회』, 한국언론재단, 2001.
 강기식, “2001 언론 리뷰 / 정치보도와 폭로저널리즘”,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강명구, “한국언론의 신뢰도 위기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재단 주최 ‘대토론회’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2001. 9. 13.
 김장환, “언론의 의식조사 - 기자들이 보는 언론의 신뢰도”, 『신문과방송』, 2001년 9월호.
 김대호, “디지털방송의 법제도”,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김경식, “독일의 방송반론제도”, 『해외언론동향』, 2001년 8월호.
 김서중,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쟁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1. 10. 12.
 김성규,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인용과 인격권 침해”, 『언론중재』, 2001년 가을호.
 김승수, “외국의 언론법제와 개혁기구 운영 사례”, 『언론개혁』, 2001년 가을.

김승수, “방송규제 기구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2001. 10. 26.
 김용호, “방송환경 변화와 정책연구의 당면과제”,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김재경, “보도자료 받아쓰기 벗어나자”,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김재협, “방송에서 조각작품 인용의 허용 범위”, 『신문과방송』, 2001년 9월호.
 김재협, “선거운동에 관한 보도태도”, 『신문과방송』, 2001년 10월호.
 김재협, “바람직한 반론보도의 방법”, 『신문과방송』, 2001년 11월호.
 김재협, “언론자유와 광고”,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김진원,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범죄형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1년 가을호.
 김진웅,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4호, 2001. 가을.
 김창룡, “영국·법과 자율규제의 조화”, 『언론개혁』, 2001년 가을.
 도준호,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문종대, “1990년대 이후 저널리즘 연구 - 수요 전환의 위기”, 『한국언론학보』 특별호, 2001.
 박동숙,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특별호, 2001.
 박선영, “방송정책기구의 위상과 역할”,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박선영, “프랑스- 언론의 공적 책임 철저하게 묻는다”, 『언론개혁』, 2001년 가을.
 박성희, “온라인 신문의 기사 게재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 미국 〈chicagotribune.com〉과 한국의 〈디지털 조선일보〉 사례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특별호, 2001.

- 박영상, "언론자유 의의",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배병일,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 그 요건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 백선거, "선거방송 보도시의 쟁점과 과제 및 해결방안 : 새 선거방송 보도준칙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 선거방송 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2001. 10. 6.
- 송종길, "후보자 토론 어떻게 방송·보호할 것인가",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 선거방송 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2001. 10. 6.
- 심영섭, "독일의 국익보호와 언론자유",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안상운, "방송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언론개혁』, 2001년 가을.
- 양삼승, "언론자유 의 법적 한계",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유익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 방송법 제70조 3항 및 제78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4호, 2001. 가을.
- 유일상, "신문윤리위원회 40주년",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윤성욱, "방송금지가처분제도", 『방송문화』, 2001년 10월호.
- 윤영철,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 윤재운, "중재시례로 본 언론보도", 『언론중재』, 2001년 가을호.
- 이우승, "독일의 방송규제기구", 『방송21』, 2001년 10월호.
- 이재경, "선정주의 개선방안",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이재진, "저널리즘 구성요소로서의 카툰의 정치적 기능과 표현의 한계 : 한 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4호, 2001. 가을.
- 이재진,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문제", 『신문과방송』, 2001년 9월호.
- 이재진, "미국-언론자유 천국도 책임의무 다해야", 『언론개혁』, 2001년 가을.
- 이진규, "의사공시권에 대한 규범주의적 관점", 『언론중재』, 2001년 가을호.
- 이희용, "송년예세이·2001 언론 리뷰 / 언론시간 소용 증가",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임영호, "언론자유와 편집권",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전범수, "미국의 테러전쟁 보도와 언론자유",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정진석, "신문윤리 40년 -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1. 9. 7.
- 조준원, "90년대 이후 방송사 소송관련 경향과 특징", 『방송21』, 2001년 9월호.
- 주동환,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방안", 한국언론재단 주최 '대토론회'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2001. 9. 13.
- 채 백, "20세기초 미국의 언론개혁과 신문공개법", 『한국언론학보』 제45-3호, 한국언론학회, 2001.
- 최용익, "2001 언론 리뷰 / 방송의 신문비평",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최홍윤, "2001 언론 리뷰 / 편집권 독립",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한영학, "일본의 국익과 표현의 자유 상충", 『신문과방송』, 2001년 12월호.
- 한용걸, "신문 신뢰도의 창구 '뉴스 옴부즈맨'", 『신문과방송』, 2001년 11월호.
- 황경식, "언론자유와 책임",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황 근, "방송의 선거 이슈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 제16대 국회의원선거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 선거방송 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2001. 10. 6. □

On-Line 중재 상담실

① 일산 신생아 감염 및 사망사고에 대하여

저는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01년 10월 3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일산지역 신생아 감염 및 사망사고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대부분 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11월 11일 모 방송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의 편파적 보도는 산후조리원 업종의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산후조리원을 특정하여 방송한 것은 아니지만 업종자체의 불신이 온 국민에게 보도되면서 몇몇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문을 닫으려고 준비 중인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협회가 조직된 상태도 아니고 몇몇 체인본사들이 있고 대부분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만일 누군가가 일부 산후조리원을 규합하여 산후조리원 협회를 어느 정도 조직하고(법인체가 아닌 민간 자생단체) 이 단체의 이름으로 여러 오보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한다면 중재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금번 신생아 감염 및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아직 공식적으로 원인규명이 없어 일방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관련 보도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을 하시려면 보도에 직접 언급된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보도에 직접 언급된 당사자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산후조리원 한 곳을 취재하면서 그 업종의 상황을 보도한 구체적인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취재의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이 상당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산후조리원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국회 일부의 산후조리원은 그렇지 몰라도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산후조리원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협회)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도가 된 시점에서 그러한 공식 대표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구성된 임의단체의 경우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만일 귀하께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보도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산후조리원 관련 보도에 의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뉴스취재, 방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문구동동호회의 한 사람입니다. 모 방송 아침뉴스에 현장포커스라는 코너 담당자가 저희 동호회를 취재하였습니다. 신중 레포트를 소개하는 내용이라 하여 동호회원들이 촬영에 협조를 하였으나 이게 웬일입니까? 촬영에 협조

한 회원들이 범죄자로 나오더군요.

신중 레포트 소개가 아닌 고발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사 동호회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단속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취재를 해야만 하는지요?

해당 방송사 뉴스게시판에 동호인들이 항의에 글을 올려도 바로 삭제를 합니다. 이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요? 어찌해야할지...

R 문의하신 보도 내용이 특정 동호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동호회장의 명의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정구를 저희 중재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보도내용의 전반적인 주제는 특정 동호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의 불법개조 현상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모든 사륜구동 차량이 그런 불법개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특정 동호회가 아닌 사륜구동 차량 운전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도의 취재 과정에서 특정 동호회가 보도취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취재에 응했고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는您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이나 동호회의 명의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저희 중재위원회에 “인터뷰 내용과 동호회 모임 장면 등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음”을 밝히는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정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Q 모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

그 날 방송 내용은 일본의 치바현에 소재한 어학교와 그 지역을 취재하면서, 5만 정도나 되는 일본 유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일본 유학생의 80%가 빠짱꼬나 술집에 나가서 돈을 벌며, 일본 대졸자의 초임이 16~18만엔인데도 불구하고, 20만엔이나 되는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공부 안하고, 돈벌기 바빠서 학교에도 안가고 가더라도 잠자기 바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소속과 상황 설명없이 몇몇 여자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전체인 양 왜곡 보도했습니다. 몇몇 사람만의 인터뷰로 인해, 유학생의 대부분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유학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 날 방송에 대해 일본 현지의 유학생협회와 한국 내 유학생협회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R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을 무각화하여 전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신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유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준비생들에 대한 보도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유학준비생들의 명의로는 중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재일 유학생들의 협회가 정식 단체로서의 자격을 갖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일본 현지의 유학생협회가 정관과 회칙을 갖춘 정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재일 유학생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중재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범죄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를 범인이라고 보도해 억울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고 중기계를 사고파시는 일을 하는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을 통해 중기계를 사셨는데 알고 보니, 장물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서류를 보지 않고 사버린 실수로 인해 알면서 장물을 샀다는 혐의를 쓰시고는 구치소에 갇혀셨습니다. 벌써 한달이나 갇혀 계시는데 모르고 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여전히 구치소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장물을 판 상습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모 방송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상습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상습 절도범 6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물을 사고파는 상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언론의 무서움과 힘없는 소시민으로의 억울함이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한 사람을 완전 상습범으로 몰아세운 언론을 고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건가요?

R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명의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범죄형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후보도는 무죄,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을 하시려면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중재신청과는 별도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 방송의 간염에 대한 보도에 대해 정정요구

간염 바이러스는 경구나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 방송 9시 뉴스에 “간염 바이러스는 성접촉이나 식사 과정에서 전염되는데 여럿이 함께 먹는 우리의 식사문화도 간질환 확산의 한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의 지나친 음주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에서 같은 또래 여성보다 세 배나 간질환이 많은 이유입니다.”

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 문제에서 위와 같은 보도에 영향 받은 사회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70년대 술잔을 돌리지 말라는 공익광고의 영향을 받은 일반인의 인식에 저희는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면 맹신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오보가 나가면 저희는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정정 및 사과 보도를 요구해 주십시오.

R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지만, 문의자의 보도내용이 귀하를 직접 지칭한 바

없고, 문의하신 본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보도라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곤란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재신청 역시 피해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하셔야 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한다면 단체 명의의 중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런 일 처음이라서요

한 회사의 주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일간지에서 몇개월간 주식 시세표에 저희회사를 관리대상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고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해당 지역 주주의 전화를 받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광역시 석간신문) 신문에 사실확인을 해보니 더 황당하게 잘못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네요.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하라, 1면에 사과문 내리며 난리고...

R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식시세란에 귀사의 주식이 관리대상으로 잘못 게재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시더라도 최장 4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후 정정보도가 게재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실익이 있을것인가의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아닌 사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귀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부적절성에 대해**

신문에 기재된 기사성 광고가 허위 내지 과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취급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이며, 광고는 중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요?**

현재 회사 관련 기사내용이 오도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정의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중재 후 정정이나 시정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건지요?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직권 중재결정이 아의신청 없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는 언론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거나 직권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의 아의신청이 있어 신청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지 않고 법원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반론보도 청구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모 일간지의 <교원성과급 모두 받는다>의 오보**

본인은 모 고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9월 22일자 모 일간지의 31면 교원 성과급 관련 기사는 용어의 선정 및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만 가까운 교원이 성과급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반납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판할 수 있도록 교원성과급을 교사들이 받는다는 식으로의 보도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많은 교원들의 반납에도 교육부에서 지급을 결정키로 했다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교원들의 명예를 실추한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교원 성과급 모두 받는다"라는 제목이 사실과 달리 전체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체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보도 내용이 귀하 개인이나 개별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선생님 개인의 명의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를 고발합니다**

제가 한 방송사의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송 화제가 여성이라면 매우 민감할 사안이었지만, 또 다른 제2의 피해자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에 출연했지요. 물론 촬영 전에는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음성변조도 약속받고 출연에 응했습니다.

촬영을 하다보니 분위기가 바뀌어 얼굴을 공개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당황한 저는 얼굴을 공개해 버렸고, 음성변조는 당연히 안해 주었습니다. 방송하는 동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희 중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하신 프로그램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으신 부분(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실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북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북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밝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필요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불론사는 불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불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불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배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 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계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계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4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본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빛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뵈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보통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삶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되나하다.

② 방송사 또는 붓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필요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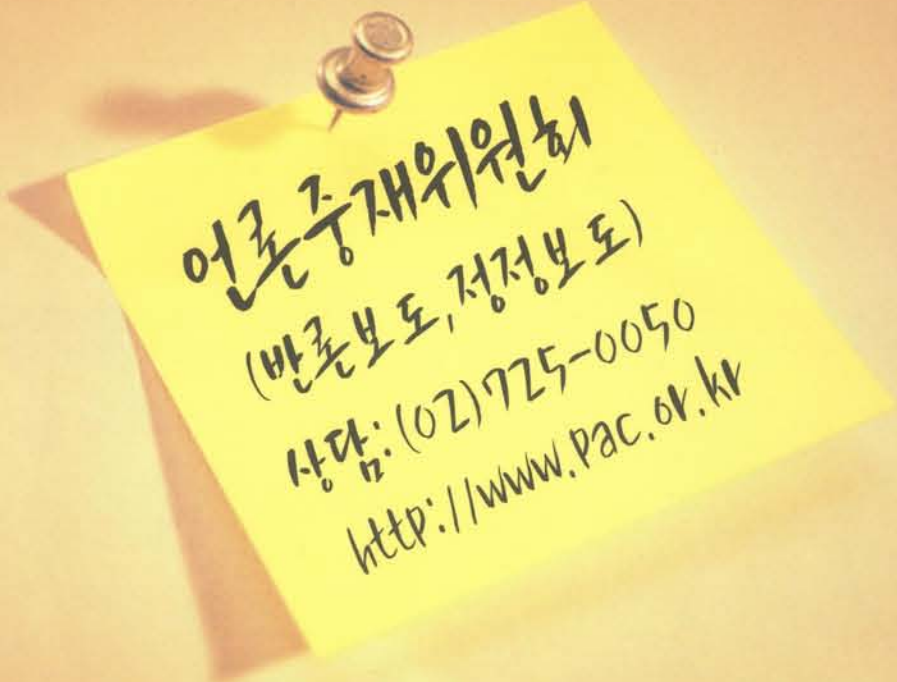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Netscape: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로 앞으로 다시 읽기 홈 검색 안내 이미지 인쇄 보안 중지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